

2016~2020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16. 3.



농림축산식품자료실



0023082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016~2020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16. 3.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목 차



I . 육성계획의 개요	1
1. 수립배경	2
2. 계획의 성격	3
3. 수립경과	4
II . 친환경농업 현황 및 과제	5
1. 기본현황	6
2.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산업 현황 및 과제	10
3. 농업환경 보전정책 현황 및 과제	18
4. 해외사례	21
III . 친환경농업 발전 기본방향	26
1. 국내외 여건 및 전망	27
2. 그간 5개년 계획(1~3차)의 성과 및 반성	29
3. 제4차 5개년 계획 추진방향	34
4. 비전 및 목표	37
IV . 세부 추진방안	38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산업 육성>	
1. 인증제도 개선	39
가.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39
나. 민간 인증체계 확립	50
다. 비식용 유기가공품 관리제도 마련	39

2.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 확대	60
가.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 계열화	60
나. 소비층 대상 판매채널 내실화	63
다.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67
라.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70
마. 유통정보 제공 강화	72
3. 생산기반 확충	73
가. 생산단지·지구 조성 내실화	73
나.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79
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84
라. 농가교육 및 기술지원	89
4.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94
가.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정비	94
나. 자재지원사업 개선	101
다.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103
<농업환경 보전 강화>	
5. 농림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	107
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및 확산	107
나. 적정 시비 시스템 구축	118
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121
라.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123
6.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126
V. 실천계획	129
1. 계획의 추진체계	130
2. 법령·통계 정비 및 R&D 추진계획	133
3. 투융자계획	142
4.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143

1. 육성계획의 개요

1. 수립배경
2. 계획의 성격
3. 수립경과

1. 수립배경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제7조)

* 제1차 : '01년~'05년, 제2차 : '06년~'10년, 제3차 : '11년~'15년

- 환경보전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 화학자재 감축, 공익적 기능 증대 등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방안
-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 기술개발 및 보급·교육, 시범단지 육성 등 친환경 인증 농식품 확산 방안

□ 농업의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이 긴급요

-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이 많고, 농경지 양분수지 과잉* 등 고려시 농업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부하 절감노력 필요

* 유효인산 함유량은 적정수준의 1.1~2배 수준('11~'14, 농업환경변동조사)

-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유기농, 로컬푸드, 공정무역 등)가 확산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는 지속 증가

* 유기농업 비중('13) : 독일 6.4%, 스위스 12.2, 호주 4.2, 우리나라 1.1, 미국 0.6 등

- FTA·TPP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친환경 인증 농식품을 고품질·안전 프리미엄 상품(premium commodity)으로 외국산과 차별화 필요

□ 그간 농업인의 참여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소비자 수요가 뒷받침되어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은 '01년 0.2%에서 '14년 4.9%로 확대

- 다만, 인증농산물 공급 확대에 집중하다보니 전반적인 농업환경 관리는 부족하고, 부실인증 등으로 신뢰 저하 및 인증면적 감소 추세

* 인증면적(유기·무농약) 비율 : ('09) 4.9% → ('12) 7.2 → ('13) 7.0 → ('14) 4.9

◆ 그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여건 및 전망분석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육성체계를 재정립할 필요

2. 계획의 성격

□ 계획의 주요내용(친환경농어업법(약칭) 제7조)

- ◇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 ◇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 화학자재 사용 감축방안
-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 ◇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
- ◇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소비촉진 방안
- ◇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 재원 조달방안
- ◇ 인증기관 육성방안

□ 계획의 성격

-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한 법정계획
-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육성 및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시·도 단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
- 매년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실행계획
 - 매년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되, 투융자 평가 및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조정

□ 계획의 범위

- 공간·시간적 범위 : 전국, 2016~2020년
- 적용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농협,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등

3. 수립경과

- 대책 수립방식 및 일정 논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15.7.17)
 - 우리부, 농진청, 농관원 업무 담당자 및 KREI·친환경단체 등 관계자 30명 내외 참석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15.7.23)
 - 5개반(총괄·농업환경, 인증관리·자재, 생산, 유통·소비, 축산)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관계 공무원·단체 등 5~7명으로 운영
-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 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친환경농업 추진 목표 및 세부 추진방안 수립 지원
 - * 5개년 계획 전반(KREI), 생산기반 구축(탄국대), 인증기관 관리·육성(이시도르연구소)
- 분야별 검토회의 개최 및 초안 마련('15.7~10)
- 친환경농업 관계자 제1차 워크숍 개최('15.10.27~28)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초안 설명 및 관계자 의견수렴
 - *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200명 내외 참석
- 해외 선진사례(독일·스위스) 조사('15.11.1~8, 독일·스위스)
 - 농식품부(독일, 스위스), 생산농장, 가공업체, 국제기구(IFOAM), 연구소 등
- 워크숍 및 해외 선진사례 반영, 대책 초안 보완('15.11~12)
- 전문가, 이해관계자, 생산자단체 참석 검토회의('15.12, 30명 내외)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최종 확정('16.2)

II. 친환경농업 현황 및 과제

1. 기본현황
2. 친환경인증 농식품 산업 현황 및 과제
3. 농업환경 보전정책 현황 및 과제
4. 해외사례

1. 기본현황

- (친환경농업 개념)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유기농업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영농형태도 포괄

※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친환경농업이란 화학자재를 미사용 또는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어업 부산물 재활용 등을 통해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 국제적(EU 등)으로는 유기농업으로 통용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농업환경 프로그램 시행
-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차별화된 유통·판매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은 인증품(유기·무농약·무항생제)으로 한정
 - 국내는 서구와 달리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기 외에 무농약·무항생제 인증제도 운영

* 유사사례 : 일본(특별재배농산물), 중국(무공해, 녹색식품 인증제도) 등

- (인증 농식품) 재배·양축방식*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임산물), 유기·무항생제(축산물)와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구분

* 유기 농산물(농약·화학비료 미 사용), 무농약 농산물(농약 미 사용,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이하 사용), 유기 축산물(유기사료 급여), 무항생제 축산물(휴약기간 2배이상 준수)

- ① (농·임산물) 허용물질(88종) 및 유기 농자재(1,237개)를 사용하여 83천ha의 면적(유기 18천, 무농약 65)에서 생산·공급되는 구조('14)

- 유기·무농약 인증면적과 농가수는 소비자 신뢰문제, 농가 판로 문제 등으로 '1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 인증면적 : ('09) 84천ha → ('11) 115 → ('12) 127 → ('13) 119 → ('14) 83

* 농가수 : ('09) 73,056호 → ('12) 107,058 → ('13) 103,949 → ('14) 68,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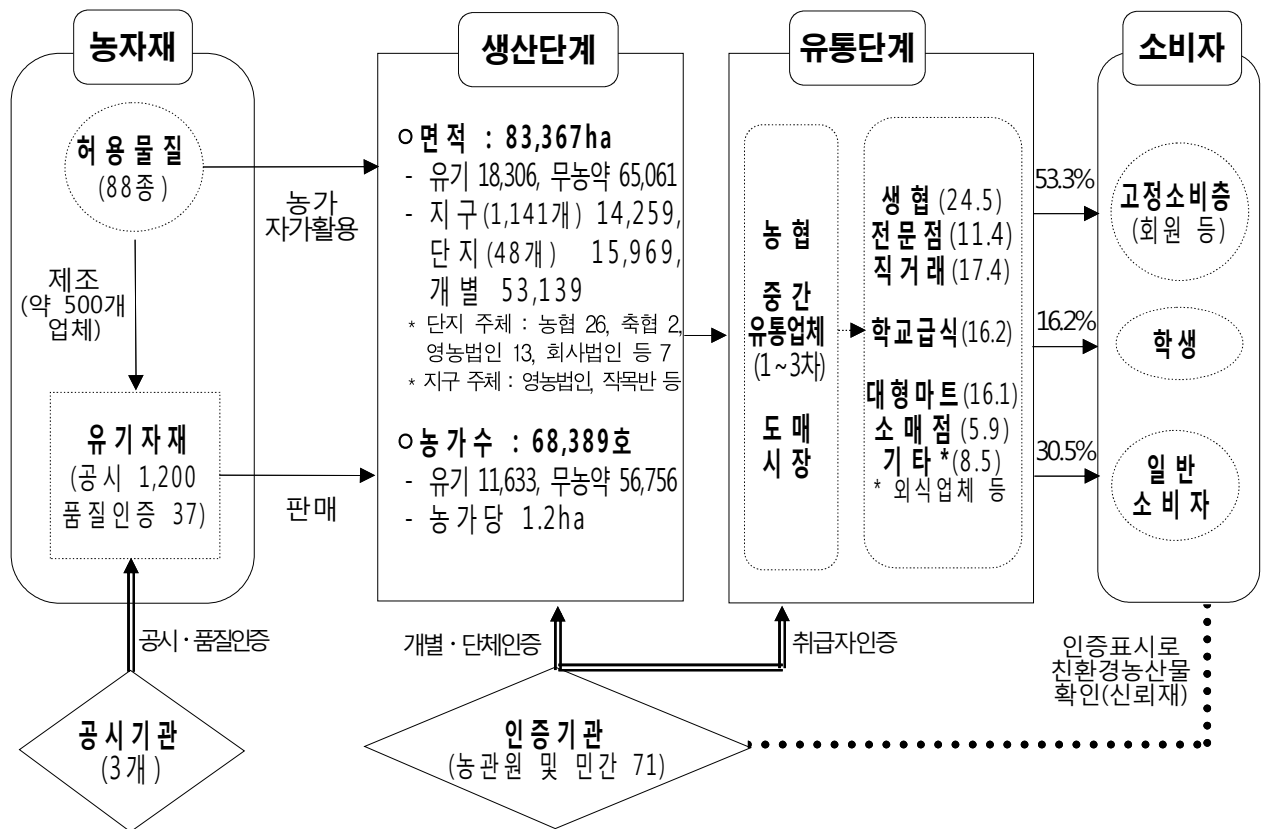
* 임산물('14) : 1,248농가, 376ha(아로니아 141, 엄나무 49, 구지뽕 41 등)

-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1.2ha 수준('09 : 1.15ha → '14 : 1.22)

- 자재 관리를 위해서는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지 여부만 확인해 주는 공시제도와 효능까지 검증해주는 품질인증제도 운영

* 유기자재(공시/품질인증) : ('09) 955개/- → ('12) 1,212/21 → ('14) 1,200/37

<유기·무농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본구조('14)>



② (축산물) 유기사료(유기)와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은 사료(무항생제)를 급여하여 생산·공급하는 구조('14 : 8,275농가)

- 사육규모(유기·무항생제)는 규모화·전업화로 매년 증가하여 '14년 기준 158백만마리

* 사육규모 : ('09) 60백만마리 → ('11) 94 → ('12) 117 → ('13) 136 → ('14) 158

- 친환경축산 농가는 '13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일시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가당 평균 사육규모는 19천마리 수준

* 농가수 : ('09) 4,441호 → ('12) 9,351 → ('13) 10,845 → ('14) 8,275

** 농가당 평균 사육규모 : ('09) 14천마리 → ('11) 14 → ('13) 13 → ('14) 19

③ (가공식품) 유기원료 사용비율에 따라 인증 및 표시제로 관리

- 유기원료 95% 이상 함유하고 허용물질(70종)을 사용한 경우 인증이 가능하고, 70% 이상 사용 또는 특정 원재료 사용시 제한적 유기표시 가능
- 국내외 인증업체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인증제 전면 시행이후 해외기업의 국내인증 취득이 급증

* 인증현황(제품/업체) : ('10) 1,197개/282개소 → ('12) 1,676/355 → ('14) 4,033/736

- 다수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류(茶)·음료류·유제품 등이 주로 생산되며, 수입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상황(85%, 충남대)

* 181개 업체 대상 조사결과 10억원 미만 매출업체가 전체 응답업체의 81.4%를 차지하고, 100억원 이상 매출업체는 5.3%('13)

- 유기원료 사용 가공식품의 인증·관리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무농약·무항생제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기준은 부재

④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원료를 사용한 사료·섬유·세제 등 비식용 유기가공품*은 양축용 사료에 대한 인증기준만 마련되어 운용 중

* 사료, 섬유 등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생산·제조·가공하는 가공품(화장품, 의약외품, 기구 등은 제외)

- 양축용 사료 인증업체는 4개소(43개 제품)이고, 애완동물 사료·섬유·세제 등에 대한 별도 인증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독일·스위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애완동물용 사료·섬유·화장품 등은 민간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증·표시기준 운영 중

- 소비자는 애완동물 사료·세제 등의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유기식품에 준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인식하나, 일부 제품은 유기원료를 일부 사용하고 '유기' 표시하여 판매 중

-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관리강화 필요

* 비식용 유기시장(미국) : ('03) 4.4억 달러 → ('05) 7.5 → ('08) 16.5 → ('10) 19.7 (동 기간 유기식품은 연평균 15.3% 성장한 반면, 비식용 유기가공품은 23.9% 성장)

□ (농업환경 관리) 농업환경 변화상 확인 등을 위해 토양·수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화학자재 사용 절감 등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정책 추진

○ 화학농약·비료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천연 농자재 개발·지원 등으로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출하량)은 감소하다 최근 정체 추세

* 합성농약 출하량 : ('09) 22,790톤 → ('11) 19,131 → ('13) 18,708 → ('14) 19,788

** 화학비료 출하량 : ('09) 1,293천톤 → ('11) 1,110 → ('13) 1,143 → ('14) 1,132

○ 고투입 농법 지속 등으로 양분수지는 적정수준보다 높고*, 농업여건이 비슷한 일본 및 OECD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것으로 조사

* 유효인산 함유량(mg/kg)은 논 131('11), 밭 627('13), 과수원 636('10), 시설 1,049('12)으로 적정수준의 1.1~2배인 것으로 조사(농진청 농업환경변동조사)

<OECD 주요국 질소잉여 집약도>

구 분	OECD	한국	네덜란드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90~'92(kg/ha)	76.9	215.2	328.7	165.3	93.6	15	24.7
'07~'10	61.5	226.4	193.3	180.2	67.4	23	49
증감률(%)	-20	5.0	-41.0	9.0	-28.0	107.0	98

○ 인증 농산물 중심 정책으로 일반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노력은 부족

□ (친환경농산물 시장) 시장규모(소매업체 매출액)는 2~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소비지와 산지간 왜곡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인증면적과 농가 출하 계획량 분석**을 통한 시장규모 추정액은 2.4조원 수준이며, 감소 추세('15, KREI)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 ('13) 27,056억원 → ('14) 24,221 → ('15) 23,664

** 출하계획량 중심 분석이므로 보조금 수급 등의 목적으로 인증 받은 후 관행 출하, 공공비축, 자가소비 등(약 30% 추정)이 누락되어 실제와 차이 발생 가능성

○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및 매출액 조사결과 시장규모는 1.9조원 수준으로('12, 신유통연구원) 판매장 매출액은 증가추세('14)

* 친환경농식품 판매장/매출액 : ('10) 4,102개소/7,795억원 → ('15) 5,228/14,367 (인증식품만 포함되며, 학교급식, 식당, 직거래 등은 제외)

□ (추진기반)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확한 통계 기반* 및 체계적인 연구개발(R&D)이 미흡

* 인증면적 외에 출하량, 생산비, 유통경로, 시장규모 등 관련 통계 부재

2.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산업 현황 및 과제

가 인증제도 및 관리현황

- ① (인증기준) CODEX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제기준 및 미국·EU 기준 등에 부합*되지만, 국내 농업여건에 대한 고려는 부족
- * 미국('14.7), EU('15.2)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 체결
- 가축분뇨 사용조건 등 일부기준은 국내여건상 이행하기 어려움에도 국제기준보다 높게 설정
- 다만, 단체인증, 인증기관 이원화(공공·민간), 처리종자사용 등은 기준에는 문제가 없으나,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인증*의 주된 목적이 환경보전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달리 농가·소비자 모두 농약 미 투입에 따른 식품안전** 측면으로 접근
- * 국내 인증기준도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제한, 윤작, 지역내 자원순환 등 생태계 보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이 대부분
 - ** 안전 농산물 생산은 화학비료·농약 미투입 또는 최소투입에 따른 결과물
- 환경보전형 영농과정에 대한 평가보다는 농약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과도한 검사는 농가·소비자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
- * 농가는 인증 수수료 25~37만원(지자체 일부 지원) 외에, 검사횟수에 따라 검사·시험비용 발생(평균 잔류농약검사비 : 220천원, 토양중금속 : 114, 수질검사 : 279)
- 소비자는 친환경 인증 농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나, 미생물 등 생물학적 위해성에 대한 관리는 부족
- * EU는 농산물(유기식품 포함)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GAP 취득 의무화
- 다양한 가공제품*이 제조·판매되고 있으나, 유기가공식품 이외에는 관리기준이 부재하여 인증 농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 증가 우려
- *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무항생제 사용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등
- 생산계획서 등 현실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요건이 과다

② (인증관리) 친환경 인증 농식품은 외관 등으로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신뢰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철저한 인증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산업 발전의 핵심요소

○ 그동안* 부실인증('13~'14, 12,603건) 방지를 위하여 농업인 및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중점 추진

* 제도개선 : ('13.6)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단체 인증요건 강화(표본조사 → 전수), ('14.10) 인증기관 요건 강화(심사원 2명 → 5),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신설 등

- 부실인증 방지대책 추진으로 최근에는 부실인증 건수 급감 추세 ('14.12 : 6,411건 취소 → '15.12 : 3,126, △51.2%)

○ 이원화된 인증체계, 영세한 민간인증기관 등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담당하는 농관원이 인증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

* 미국·EU 등 동등성협정 체결국은 농관원이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공정성(ISO 17011)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농관원 인증비율(건수 기준) : ('11) 37.8% → ('12) 32.3 → ('14) 23.2 → ('15) 17.7

- 철저한 인증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인증기관 역량강화가 중요하나,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자발적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

* 71개 인증기관 중 매출액 1억 미만의 인증기관이 39개(54.9%)

③ (인증실적) 농산물은 부실인증 방지대책 추진, 저농약 인증 폐지 등으로 감소 추세이나, 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은 증가하는 추세

○ (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등으로 인증면적 및 농가수는 최근 감소 추세

		'09	'11	'12	'13	'14
인증 면적 (ha)	유 기	13,343(0.8)	19,311(1.1)	25,467(1.5)	21,206(1.3)	18,306(1.1)
	무농약	71,039(4.2)	95,253(5.6)	101,657(6.0)	98,237(5.8)	65,061(3.8)
	합 계	84,382(5.0)	114,564(6.7)	127,124(7.5)	119,443(7.1)	83,367(4.9)
농가 (호)	유 기	9,403(0.8)	13,376(1.2)	16,733(1.5)	13,957(1.2)	11,633(1.0)
	무농약	63,653(5.7)	89,765(8.0)	90,325(8.1)	89,992(8.0)	56,756(5.1)
	합 계	73,056(6.5)	103,141(9.2)	107,058(9.6)	103,949(9.3)	68,389(6.1)

< 유기·무농약 농산물 재배면적 추이 >



○ (축산물) 사육규모는 158백만 마리, 농가는 8,275호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인증단계가 낮은 무항생제가 대부분을 차지

		'10	'11	'12	'13	'14
사육 규모 (천마리)	유 기	125	139	139	64	86
	무항생제	86,223	93,718	116,912	135,596	157,525
	합 계	86,348	93,857	117,051	135,660	157,611
농가 (호)	유 기	99	98	97	96	97
	무항생제	6,166	6,599	9,254	10,749	8,178
	합 계	6,265	6,697	9,351	10,845	8,275

○ (유기가공식품) 국내 인증업체는 573개소, 제품은 3,030개로 소비자 관심증대 및 인증제 전면시행('14.1)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인증제 전면시행에 따라 그간 표시제로 수입되던 해외 유기식품 업체의 국내인증 취득이 급증

		'10	'11	'12	'13	'14
제품 (개)	국 내	1,017	1,146	1,374	1,880	3,030
	해 외	180	170	302	458	1,003
	합 계	1,197	1,316	1,676	2,338	4,033
업체 (개소)	국 내	222	261	300	419	573
	해 외	60	49	55	72	163
	합 계	282	310	355	491	736

- ① (생산체계) 타 농산물과 달리 생산방법에 대한 인증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어 판로확보(계약재배) 없이는 생산 확대가 어려운 구조
- '14년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은 83천ha(전체 농산물 대비 4.9%)이며, 부실인증 방지대책 추진 등으로 최근 감소추세
 - *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비율 : ('09) 4.9% → ('12) 7.2 → ('13) 7.0 → ('14) 4.9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통해 협업방식의 단지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영세·소농의 지역별 분산 생산방식은 여전
 - * 전체 호당 경지면적('14) : 1.5ha, 친환경농가 호당 경지면적 : '98: 0.8 → '14: 1.2
 - ** 친환경 면적 : 단지 20.8%(총 76,889ha 중 15,969), 지구 60.5%(총 23,577ha 중 14,259)
 - 소규모·분산 생산구조로는 안정적인 상품 공급 및 산지의 교섭력 확보가 어렵고, 철저한 인증관리에도 한계
 - 유기종자의 생산·공급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친환경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처리종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 소독종자 사용 비율('14, 유기) : 곡류(1.8%), 서류(10.8), 채소류(58.1), 사료(53.5) 등
 - ** 종자 사용기준은 국제기준에 부합(① 유기종자 → ② 비소독 일반종자 → ③ 소독종자)
- ② (재배기술) 재배 매뉴얼 및 사례집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 어려움을 지속 호소
- * 저농약 농가의 관행농 전환이유(%) : 친환경 농법의 어려움(70.3), 판매 효과 미미(21.6), 소득 감소(5.4) 등(KREI, '13)
 - 농약 및 화학비료*의 기능을 보완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품목별 특성에 맞는 농법으로 정립·활용하는 것이 기본요소
 - * 외부환경 및 지역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효과를 발휘하는 특성
 - ** 기술 분야 : 토양·양분관리, 잡초관리, 병해충관리, 기타(유기종자 등)
 - 방법 예시 : 환경의 자원순환기능 극대화, 작부체계(윤작 등), 허용물질 활용 등

- 국내 유기농업은 유럽에서 정립된 농법을 도입한 상황*이므로 이를 우리 실정에 맞는 생산모델로 정립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
 - * (유럽) 전작 중심의 경축 복합영농, (우리나라) 건기·우기가 있는 벼농사지역
 - 친환경농업이 제도화 된지('97년 법 제정) 20년이 채 안되어 그간 미세적인 재배기술 개발에 치중(유럽도 장기간에 걸쳐 농법으로 정립)
 -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이 중요하나, 기술개발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
 - 벼의 경우는 생산모델(우렁이 농법* 등)이 있지만 종합적인 생산모델 이라기 보다는 우렁이를 활용한 잡초제거 기술임

* 충북지역 선진농가의 활용기술을 전남도기술원에서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보급한 것임

- 우리 실정에 맞는 생산모델이 확립되지 않아 일부 선진농가를 제외한 대다수 농가는 시판자재에 의존하여 생태순환농법 정착이 어렵고, 선진국과 달리 생산비용이 많이 소요

* 유기 생산비는 독일의 경우 관행과 비슷(관행대비 1.4%)하나(튀넨연구소), 우리나라는 31.4(벼)~42.5%(사과) 높은 것으로 조사(KREI, '13)

**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자재 의존도로 중간재비가 관행대비 25(사과)~47%(벼) 높으나, 독일 유기농가의 자재비는 관행보다 적게 소요(관행의 80% 수준)

③ (자재) 토양관리, 병해충·잡초관리를 위해 허용물질(88종)을 지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자재는 공시·품질인증으로 관리

- 허용물질 재평가 시스템이 부재(미국: 5년 주기 재평가)하고, 제도 체계* 등의 한계로 허용물질 지정·삭제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

*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신규지정에 상당기간 필요한 반면 사전평가는 느슨한 체계

- 공시·품질인증 제도의 한계*, 자재정보 제공 미흡 및 농가 직접 구매 방식 등으로 효능 좋은 제품이 적정가격에 공급되기 어려움

* 현실적으로 품질인증이 어려워 대다수 자재는 허용물질 사용여부만 확인된 공시 제품(97%)

- 농관원·농진청으로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농가에 대한 불량제품의 정보 제공 및 불량제품('13: 14.8% → '14: 10.1) 근절에 한계

다 유통 · 소비 단계

① (유통경로) 중소규모 주체가 난립되어 있는 다단계의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 (산지) 전문화 · 규모화된 산지유통 조직이 육성되지 못하고, 농협(10억이상 취급 308개소)의 비중은 38.8%이나 대부분 단순 계통거래

○ (도매) 다단계의 중간유통업체(1~3차)*를 통해 소비자에 공급되고 친환경의 특성상(품위 · 당도가 아닌 가치소비) 도매시장 역할은 제한적**

* 특정품목 중심의 1차 벤더, 1차벤더를 관리하는 2차, 2차를 관리하는 3차벤더 등 활동

** 친환경이 주류인 품목(버섯 등), 저농약(사과, 배 등), 과잉물량(학생 방학기간, 성수기 등)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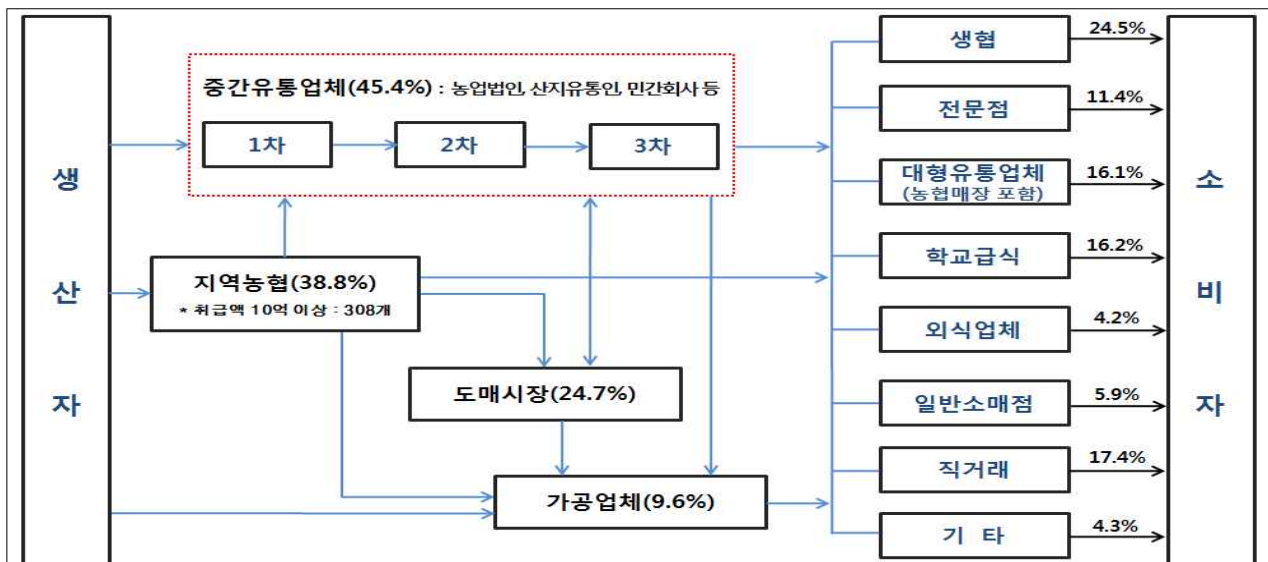
○ (소매) 유기식품 선진국*과 달리 고정소비층 대상 판매형태가 주류(69.5%), 일반소비자 대상 판매는 미미(30.5%)**

* 해외의 일반소매점 판매비중(%) : 독일 59.6, 스위스 78.3, 영국 72 등

** (고정) 생협 24.5%, 전문점 11.4, 직거래 17.4, 학교급식 16.2, (일반) 대형마트 16.1, 외식 4.2, 소매점 5.9

- 전체 일반소매점(13 : 651천개) 중 일부만 친환경 취급(5천개 0.7%)하여 일반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이 취약

<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14 신유통연구원) >



○ (학교급식) 전체 학교(초·중·고·특수학교 11,619개)에서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16.2%** 차지

- 서울·경기는 별도 유통센터*에서 조달, 그 외 지역은 지역 내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농업인 등)가 공급

* (서울) 강서도매시장내 친환경유통센터, (경기) 광주 친환경종합물류센터

- 대부분 학교장 및 영양사 자율의 직영급식(98%) 체계로 운영

- 주요품목은 쌀, 채소, 잡곡 등이며, 친환경 공급비중은 지역별로 상이

*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중 : 서울 50%, 경기 29, 세종 9.3~14, 전남 39, 제주 61~71 등

② (산지유통) 친환경 시장은 그동안 소비지가 산지를 견인하는 구조(생협, 학교급식 등)로 확대되어 전문화된 산지유통 주체가 육성되지 못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농법인 형태, 일반농산물 판매주체가 부수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

* RPC 사례(226개) : 개소당 취급실적 10,703톤 중 친환경은 7.6%인 817톤('13)

○ 지역농협의 경우도 출하(38.8%)에 큰 비중을 차지하나 단순 계통 거래에 머무르고, 구조적 특성상*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기는 한계

* 소수 조합원만 참여하고 있고, 읍·면 단위로는 친환경 생산량이 적음

- 중앙회도 산지유통에 직접 참여하여 책임판매하려는 노력보다는 구색 차원에서 접근(아침마루 매출액 : 574억원, 친환경 : 269, 그 중 저농약 : 197)

○ 산지주체가 미약하여 소비지 주류시장(대형유통업체, 일반 소매점 등)과 교섭 및 안정적 물량 공급에 한계

- 틈새시장을 벗어나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생산자는 안정적 판로 제공,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항상 구매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 분산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특성 고려시 규모화된 산지조직 육성이 절실

- 규모화된 산지주체 육성시 소비지와 교섭가격이 기준가격 역할 가능

* 친환경농산물은 특성상(당도·품위가 아닌 가치소비) 도매시장 거래에는 한계

③ (유통비용) 산지 규모화·전문화 미흡, 다단계 유통, 일반농산물과의 구분관리 비용 등으로 인해 관행농산물 대비 3.6~4.1배(쌀) 높은 실정

○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생산자는 제값 받지 못하는 구조

< 쌀 농가 수취가격-소비자가격 비교('13) >

구 분	농가 수취가격(A, KREI)	소비자가격(B, aT)	유통비용((B-A)/B×100)
유 기	2,621원/kg	4,402원/kg	40.5%
무농약	2,370원/kg	3,718원/kg	36.3%
일 반	2,091원/kg	2,335원/kg	10.4%

④ (가공·수출) 낮은 유기원료 자급률(15%), 기술부족 등으로 친환경 인증 농식품 가공산업은 초기단계

○ (가공) 유기 재배면적이 적고 산지 규모화 미흡에 따른 물량 확보 곤란, 높은 가격 등으로 시장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입조달(85%)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첨가제·보존제 등을 활용하지 못하므로 유기식품에 특화된 첨가제·포장재 개발 등이 필요

○ (수출) 가공식품에 한정된 동등성 협정 체결 등으로 일부 가공품(녹차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

⑤ (소비촉진)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특성상 체계적인 소비촉진 및 교육·홍보가 중요한 요소

* 소비층 확대 없이 공급만 확대할 경우 가격하락 불가피(일반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15)

○ 임의자조금('15년 15억원)을 운영 중이나 농업인 미참여, 조성규모 한계,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 등으로 실질적인 소비촉진 효과 미흡

○ 소비확대보다 생산을 더 늘려옴에 따라 일반농산물로 판매하거나 공공비축미로 출하되는 사례 발생

* 친환경농가의 37%가 인증 농산물을 관행으로 출하 경험('15, KREI)

○ 유통·소비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도 신규수요 창출의 장애요인

3. 농업환경 보전정책 현황 및 과제

가 농업환경 보전정책 현황

-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직불금(친환경, 경관, 조건불리, 쌀변동), 자재 지원, 분뇨자원화, 수질개선 등 사업 시행
 - 친환경·경관·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통해 투입재 사용억제(친환경) 및 농촌경관개선(경관) 등을 추진
 - 쌀 변동직불 등 일부 직불제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낮은 수준의 교차준수의무(cross-compliance) 부여
 - 유기·무농약 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자재 및 단지·지구조성 지원 추진
 - 유기질비료 및 유기농업자재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 절감 유도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수질개선 등을 통해 농업활동에 의한 환경부하 절감 추진

< 주요 사업현황 >

사업명	'14(억원)	'15	주요내용
친환경농업직불	442	508	친환경 농가 소득감소분 보전 및 환경보전
경관보전직불	141	139	지역별 경관작물재배 유도
조건불리직불	40	40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기능 유지 지원
쌀 변동직불	20	195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 차액 보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72	115	단지·지구조성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친환경농자재지원	2,272	2,286	부산물 재활용·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 보전
가축분뇨처리시설	969	877	가축분뇨 퇴비·액비화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농업용수수질개선	137	169	농업용수원 수질조사 및 개선

□ 농업의 전반적인 환경보전기능 제고를 위한 우리 현실에 맞는 생산 모델 구축작업이 미흡하고, 개별사업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

- 유기·무농약 관련 정책은 투입재 사용 억제에 따른 생산량 감소분의 소득보전 및 공급확대 중심으로 운영
 - 화학자재 사용 감축 이외에 유기·무농약 농업 실천에 따른 환경보전효과 검증 및 환류·보완 체계 부족
- 농업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토양관리 및 투입자재 절감형 농법개발 등을 통한 발생원 관리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관심·노력은 부족
 - 발생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수질개선 등 별도의 사후관리를 통해 토양·수질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
 - 유기질비료·유기농자재 등 지원사업은 자재 과투입을 유발하고, 농가의 자가 제조 유인을 감소시킬 우려
-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사·분석 및 이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는 관심 부족
 - * 수자원 함양, 토양유실·홍수 방지, 생물다양성 증진, 경관형성, 쾌적한 환경 제공 등

□ 환경부는 점오염원(하수도 등) 관리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를 주요정책 방향으로 추진

-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오염원그룹별 배출 부하량 분석 등에 따라 토지계와 축산계가 비점오염원 관리의 핵심으로 인식
 - * 배출부하량 : (BOD) 토지계 63.5%, 축산계 28.5, (TP) 토지계 57.5, 축산계 38.1
- 주로 발생 후 관리(인공습지, 침사지 등)를 통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06~'15년간 1조 2,576억원 예산 투자
 - 최근 발생 후 관리 효과성 부족으로 농지에 대하여 발생 전후의 포괄적 관리방안 모색 중(수질개선형 친환경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계획)
- 다만, 농법·시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농촌지역의 환경부하 감소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참여와 관련기관간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

나

농업환경 조사 현황

- 농진청 및 농어촌공사에서 농업환경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사체 등에서 인증 및 직불제 이행조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정 실시
- (농업환경변동조사) 일반 농경지(논·밭·과수·시설재배지), 수질(하천, 지하수), 취약농경지 등에 대해 농진청에서 정기적 조사
- (토양검정) 농업인 의뢰, 친환경·GAP 인증 및 직불제 이행조건 확인, 자체 필요 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인증·검정기관 등에서 실시
 - * 검정건수('14) : 총 596천건(자체검정: 79, 농업인 의뢰: 117, 친환경: 169, GAP: 12 등)
- (수질조사)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 호소 대상 조사('14 : 수혜면적 30ha 이상 호소 825개소) 실시

< 종류별 세부 조사항목 >

구 분		조사항목
농업환경변동조사	토양	화학성 필수 :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K, Ca, Mg, Na) 선택 :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질산태질소, 양이온치환용량 중금속 : Cd, Cr, Cu, Ni, Pb, Zn
		물리성 작토심, 산중식경도, 용적밀도, 삼상, 입도분포, 유기물
		미생물 세균, 사상균, 바실러스, 형광성 슈도모나스, 미생물체량 등
	생물다양성 식물상, 지상부 곤충, 조류, 수서무척추동물	
	농업용수 (지하수·하천) 하천수 : pH, DO, BOD, COD, T-P, SS 등 지하수 : pH, NO ₃ -N, Cl, Cd, As, Hg, Pb 등	
토양검정	필수 :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K, Ca, Mg, Na) 선택 :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질산태질소	
수질조사(호소)	pH, COD, TOC, SS, T-N, T-P 등	

-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항목의 농업환경자원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기관간 연계가 부족하고 정책 활용이 미흡한 실정

4. 해외사례

- ◆ EU·미국 등은 투입재(농약·화학비료) 중심의 유기농업 지원정책과 전반적인 농업환경 보전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환경프로그램 시행
 - 유기농업은 전환직불*,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
 - * 전환 이후 지속직불 지급은 농업환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상위 개념)
 - 농업환경프로그램(EU)은 모든 농가가 농업보조금 수령을 위한 기본조건
- ◆ 계절풍 기후(건기·우기가 뚜렷한 벼농사 지역)의 동아시아 국가(한·중·일)는 유럽에서 정립된 유기 외에 해당국 특성에 맞는 친환경인증제도 운영

가 유기농산업 현황

- 전세계 유기농 면적은 43백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1% 수준('13, IFOAM)
 - '99년 이후 연평균 20.8% 성장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이 높은 수준 유지
 - * 유기재배면적 : ('99) 11백만ha → ('03) 25.7 → ('06) 30.1 → ('10) 36 → ('13) 43.1

< 주요국 유기농업 현황('13) >h

국가명	면적(천ha)	비중(%)	국가명	면적(천ha)	비중(%)
호 주	17,150	4.2	독 일	1,060	6.4
아르헨티나	3,191	2.3	스위스	128	12.2
미 국	2,178	0.6	한 국	21	1.1
중 국	2,094	0.4	일 본	11	0.3

- 세계 유기식품 거래액은 720억 달러(79.2조원)로 수준('13, IFOAM)
 - '13년 시장규모는 '99년(152억 달러)의 4.8배로 연평균 27.1% 성장
 - * 유기식품 시장 : ('99) 152억달러 → ('03) 255 → ('06) 402 → ('10) 591 → ('13) 720
 - 시장규모는 미국(243억 유로, 43%), EU(222, 40) 등 선진국에 집중, 중국(24.3억 유로), 일본(12.2, '12) 등 아시아 시장이 성장 추세
 - 미국·EU 등 유기식품 선진국들은 생산량 증가에 비해 소비지시장 성장속도가 빨라 부족한 물량을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실정

□ 대부분의 유럽국가의 경우 일반소매점(슈퍼마켓 체인 등) 판매비중이 높고, 산지조직이 소비자와 직접 교섭하는 유통체계 구축

- 독일·스위스 등 유기식품 선진국은 일반소매점의 판매비중이 높아 일반 소비자의 유기식품 구매 접근성이 높음
- 전문점의 경우 농산물, 가공식품(과자, 향신료, 음료, 주류 등), 비식용유기 가공품(옷, 화장품, 생활용품 등) 등 유기관련 제품을 모두 판매하고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

'13년 기준	독일	스위스	영국	프랑스	덴마크
일반점	59.6	78.3	72.0	46.4	85.4
전문점	31.8	12.6	14.7	35.4	-
기 타	18.6	9.1	13.3	18.2	14.6

(출처 : IFOAM and FiBL)

- 판매가격은 제품·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농산물은 관행대비 1.5~2배,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은 1.05~1.3배 수준
- 해외조달원료를 통해 제조된 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의 낮은 가격은 유기식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
 - *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곡류·유제품 등은 자국에서 조달한 원료를 사용하고, 커피·코코아 등 기타원료는 남미·동아시아 등에서 조달하여 제조·가공
- 생산자단체 중심 산지조직화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직접 교섭하여 높은 가격교섭력 확보 가능
- 각 생산자단체는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유통·가공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소속농가 생산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자단체는 자체 유통회사를 건립하여 판매촉진 지원
- 각 생산자단체는 별도 인증기관을 설립하여 소속농가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홍보 및 품질확보 서비스도 수행

- ◇ 스위스 : 최대 생산자단체인 Bio-Suisse는 스위스 유기농가의 90%가 가입하고 있으며, 최대 일반소매점인 Coop 등과 협약을 통해 유기식품 납품 지원
- ◇ 독일 : Bioland, Demeter 등 주요 생산자단체는 자체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있으며, 가공회사·유통업체 등과 협약을 통해 판로 개척 지원

□ 선진국들은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신뢰확보, 연구개발, 직불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 관리

○ (EU) 기본지침 성격의 **유기 실행계획**(‘14~’20, 6개 분야* 18개 실행방향)을 수립하고, 각 국가별 실정에 맞게 **실천계획 마련·시행**

- * ① 유기분야 지원, ② 인지도 확대, ③ 연구개발 확대, ④ 감독·평가 강화, ⑤ 수입제도 개선, ⑥ 제3국·국제기구와 제도개선 협력 등

< 예시 : 덴마크 유기 행동계획 실천계획(‘15~’18) >

행동계획	주요내용
수출증대 노력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 활성화를 위한 4.5백만 유로 지원, EU 판매진흥 보조금 신청 등
국내 수요창출	국내 판매 확대를 위한 3.3백만 유로 지원, 유기자재 구매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와 협력, 유기식품 사용식당 표시제 확대 등
생산·소비 증대를 위한 협력	정부 부처간 협력, 국방부 급식 확대, 공공급식 유기원료 사용 확대 등
유기사업 영역개발	교육 및 기술개발 위해 1.6백만 유로 배정, 유기생산 자문 서비스 1.3백만 유로 배정 등
경작지 및 생산자 확대	유기농업 경쟁력 개발 위해 1.3백만 유로 배정, 유기농장 보조금 지급모델 확립 등
회복가능 유기생산	질소사용 감축 유기농지 지원, 대체농약 진흥, 유기돼지 생산 진흥 등

○ (독일·스위스)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핵심수단을 **직불금 지원, 연구개발로 상정**하고 관련분야 지원 강화

- * 유기·지속가능한 농업 연구에 독일은 연간 940만 유로, 스위스는 800백만 스위스 프랑 지원
-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FiBL 등 민간 연구기관 및 주립대학** 등에 지원
- 최대 유기농업전문 연구기관인 **FiBL의 연간 예산은 2천만 유로**이고, 스위스 농식품부, 지자체, 유통업체·생산자협회에서 1/3씩 지원받아 운영 중

○ (미국) **유기 전략계획**(‘15~’18)을 수립, **5개 전략목표*** 설정

- * ① 유기 순수성 보호, ② 시장 접근성 촉진, ③ 명확한 기준설정 및 이행, ④ 기술축적, ⑤ 팀과 조직 개발 등

나

농업환경 보전정책 현황

□ 유럽*은 정부지원과 농업인의 환경자원 생산활동을 연계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 농촌환경 보전 필요성 및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인한 예산부담 문제 해결위해 도입('85 회원국 자율실시 → '87 EU 재정지원 → '99 회원국 의무실시 → 지속 강화)

① (EU)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강화하는 추세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토양침식 방지·수자원 관리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상호준수의무* (cross-compliance) 규정 강화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토양침식 방지, 토양유기물 방지, 수자원 관리 등으로 구성(모범농업환경조건, GAEC)

- 직불예산의 30%는 초지유지·작물다양화 등 환경보전의무(Greening)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토록 의무화

② (영국) 농촌환경 관리지원제도(ES)를 통해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유지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지원 강화

- 목적 : ①생물다양성 증진 ②경관 유지·개선 ③역사적 환경 보호 ④일반인 인식 제고 ⑤자연자원 보호 ⑥토양·수질오염 방지 ⑦고지대 환경적 관리 등

- 넓은 지역 쉬운 의무(Broad and Shallow) 원칙하에 많은 농업인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환경프로그램* 설계

* ELS의 경우 4가지 의무사항과 91개 선택사항으로 구성

구분	ELS	OELS	HLS
수준	기초수준	유기농업 수준	특정요건 충족 의무
자격	모든 농민	유기농업인	특정활동에 관해 협약 맺은 특정지역 농민
협약기간	5년	5년	10년
보조금	£ 30/ha/년 (단, 황무지 8, 구릉지 62)	£ 60/ha/년 (단, 전환기 175, 과실 600, 구릉지 92)	실제 보조금은 협약 내용에 따라 다름, 협약기간 동안 투입물의 획기적 개선필요

- ES에 배정된 예산액은 7년간 29억 파운드로 농촌개발정책 예산의 74%이며, 국가적으로 복원가치가 있는 서식지 면적의 84%가 참여 중

- ③ (스위스) 농업이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농업생산활동과 결합한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철학을 헌법에 명기하고 직불금을 통해 지원
- 농업예산의 81.5%를 직불제로 지급하며, 직불제 수급을 위해서는 질소·인 양분균형, 윤작, 농약사용 제한 등 상호준수의무 이행 필요
 - *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비중 : ('99) 56.7% → ('05) 68.3 → ('09) 74.3 → ('14) 81.5
 - 직불금은 5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활동 이행여부에 따라 중복 수취 가능
 - * 직불금 예산 28억 스위스유로(3.2조원) 가운데 식량공급 관련(농지·식량공급 보장 직불) 직불금이 50% 내외이고, 생태직불 관련 예산이 50% 차지
 - 생물다양성 증진, 경관보전·관리, 유기농업 등의 활동을 수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공공재 생산 유도

명 칭	지 급 조 건
농지직불	여름방목, 경사지 포도재배, 조건불리 시행여부에 따라 지급
식량공급보장직불	구릉지·산간지역 등 재배난이도가 높은 지역 생산 및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종작물 생산시 지급
생물다양성직불	보상지역의 생물종과 서식지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지원
경관직불	꼭 재배지, 다양한 작물 윤작, 전통농업 실천 등에 지원
생산시스템 직불	유기농업, 조방농업, 동물복지 등의 실천여부에 따라 지원

※ 직불금 지급은 검열관을 통해 상호의무 준수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고, 위반시 벌점을 합산하여 직불금을 누진적으로 삭감

- 일본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도입·추진 중
 - 환경보전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전형 농업직불 추진 중
 - 농지·수로 등 지역자원 공동관리를 위해 다원적 기능 직불 도입('14)

명 칭		지원내용	지불대상
다원적 기능 직불제	농지유지직불	다원적 기능을 수로·농지 기능을 유지하는 공동활동 지원	활동조직 (농가조직)
	자원향상직불	지역자원(농지, 수로, 농도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공동활동 지원	활동조직 (주민포함)
중산간지역 직불제		조건불리지역과 평지지역과의 생산비 격차 지원	마을협정 개별협정
환경보전형농업 직불제		환경보전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의 추가적인 생산비 지원	농가 (그룹 포함)

Ⅲ. 친환경농업 발전 기본방향

1. 국내외 여건 및 전망
2. 그간 5개년 계획(1~3차)의 성과 및 반성
3. 제4차 5개년 계획 추진방향
4. 비전 및 목표

1. 국내외 여건 및 전망

- (친환경인증 농식품산업) 환경보전·건강한 먹거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로 유기농산업 시장은 지속 확대 전망
 - (해외) 미국·EU를 중심으로 성장추세이며,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이 급성장('09 : 7.9억유로 → '13 : 24.3)
 - * 세계 유기식품 시장은 '13년 720억 달러로 '99년 대비 4.8배 증가(IFOAM)
 - (국내) 저농약 인증 폐지 등의 영향으로 '16년까지 줄었다가 '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 예상(KREI)
 - * 친환경 시장규모(추정) : ('13) 27조원 → ('14) 24 → ('16) 1.9 → ('17) 21 → ('20) 28
 - 다만, 외국은 인증품 구매시 환경보호·건강을 동시에 중시하는 반면, 국내 소비자는 안전성·영양을 중시
 - * 구매사유(중복선택) : (한국) 안전성 95.5%, 영양가 42.5, 환경보호 35, (EU) 환경보호 83%, GMO 기피 81, 지역 제철음식 소비 78 등
 - 구매자(74.3%) 및 비 구매자(46) 모두 구입 애로요인으로 높은 가격을 지적하여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판매가격 인하 필요
- (농업환경 보전) 미국·EU 등 국제적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의 중점 추진
 -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으로 쉼터·삶터로서의 농업·농촌 역할에 대한 기대 상승
- (소비자 동향) 단순한 식품 공급 차원을 벗어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등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안전하고 몸에 좋은 식품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고,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 확산 추세
 - 선진사례 검토시 시장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공급하지 못할 경우 수입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 **조사대상** : 전국의 일반소비자(500명) 설문조사

- 일반 고객(305명), 충성고객(95), 비구매자(100)으로 나누어 조사
- * 구입비중 50% 이상인 그룹을 충성고객으로, 50% 미만인 그룹을 일반고객으로 분류

◇ **구입동기**

- 안전성·가족건강(88.3%)이 대부분 차지, 환경보호(1.5)에 대한 고려는 부족
- 1~3순위(가중평균) 고려 시에도 안전성 및 가족건강(46.1%) 비중이 가장 높고, 영양가(12.1), 인증제도 신뢰(9.4), 환경보전(8.9)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충성고객은 환경보호(11.9%), 농업의 지속가능성(4.4) 등 환경보전 관련 응답에서 일반고객보다(각 8.0, 3.3) 높게 나타남

◇ **만족도·충성도 및 추가 소비의향**

- 친환경농산물 만족도는 보통이 50.5%이며, 만족이 40.5 수준이고, 불만족은 7.3%로 대체로 소비 후 만족하는 경향
- 부실인증 등의 부정적 소식을 접할 경우 충성고객은 지속 구매 응답 비율이 높은(44.2%) 반면, 일반고객은 지속 구매 응답 비율이 낮음(24.6)
- 품위저하시 구매와 관련하여 충성고객의 50.5%가 구매의사를 밝힌 반면, 일반고객은 24.3%로 품위여부에 따라 구매의사가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
- 소비자의 46.5%는 현수준 유지를, 34.3%는 구매확대 의사를 보여 향후 친환경농산물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충성고객은 구매확대 의향이 46.3%로 일반고객(30.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친환경농산물 구입장소**

- 1~2순위 고려시 대형 할인마트가 제일 많고(30.4%), 전문점(20.6), 농협계열(20.5), 직거래 단체(15.6) 순이고, 충성고객은 직거래단체, 일반고객은 대형 할인마트가 가장 높음

◇ **가격 적절성 및 애로요인**

-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이 대부분(매우비쌌 : 13.3, 비쌌 : 79.5)
- 유기·무농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 대비 1.6~1.7배로 판매되나, 일반 소비자는 1.4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인식
- 친환경농산물 구입의 가장 큰 애로는 비싼 가격(74.3%)이고, 인증에 대한 신뢰부족(13.8), 상품구색(5.3), 구입처 부족(4.8) 등
- 친환경농산물 비구매자 역시 비싼 가격(46%), 인증제도 불신(33)을 비구매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

◆ 생산·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에 적정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판매가격을 낮춰 소비저변을 확대할 필요

◆ 철저한 인증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경우 추가 소비 확대 가능

2. 그간 5개년 계획(1~3차)의 성과 및 반성

그간 친환경농업 추진실적

- **친환경 인증 농식품(유기·무농약) 농업 변화**
 - 면적 : ('01) 1.7천ha(0.1%) → ('05) 19.9(0.7) → ('10) 110.1(6.4) → ('14) 83.4(4.9)
 - * 친환경 대비 유기·무농약 비중 : ('00) 57.5% → ('05) 40 → ('10) 56.7 → ('14) 83.3
 - 농가 : ('01) 2,087호 → ('05) 20,681 → ('10) 73,056 → ('14) 68,389
-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출하량 기준) 변화**
 - 화학비료 : ('00) 382kg/ha → ('05) 376 → ('10) 233 → ('14) 258
 - 화학농약 : ('00) 11.1kg/ha → ('05) 10.7 → ('10) 9.2 → ('14) 9.3
- **종합평가**
 - 유럽에서 정립된 유기농업을 국내에 도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우리농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
 - * 유기·무농약 면적 : 14년간 48배 성장('01 1,743ha, 0.1% → '14 83,367ha, 4.9%)
 - 유기 면적 : 14년간 41배 성장('00 450ha, 0.1% → '14 18,306ha, 1.1%)
 - ** 유럽 유기면적 : ('85) 0.1백만ha, 0.02% → ('13) 11.5백만ha, 2.4%(EU는 5.7%)
 - 단기간 성장 중심의 접근으로 인해 최근 면적이 감소되고 있고, 소비자 신뢰, 농가 판로 문제, 한국형 친환경농법 정립 노력 보완 필요

가 그간 계획의 주요내용

①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1~'05) 주요내용

-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01)
 - '품질인증제'와 '표시신고제'로 이원화된 친환경농산물 관리제도를 전문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제'로 통합
- 친환경농업 직불제 도입·확산('02) 및 인증단계별(유기·무농약·저농약) 단가 차등화('03)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 공급확대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절감 및 토양지력 증진 유도

* 유기질비료('01: 50만톤 → '05: 70), 토양개량제('01: 1% → '05: 38), 녹비('01: 67천ha → '05: 101) 등

- 토양·수질 대상 토양검정·농업환경변동조사 체계 확립 등을 통한 농업환경 변화상 주기 확인·점검

②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6~'10) 주요내용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600ha 이상, '06~)을 통해 소규모·고비용 친환경농업의 저비용·고효율 협업방식 전환 유도
-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지 판매장 개설자금('08~) 및 전용 물류센터 건립('09~) 지원 강화
- 친환경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저농약 인증 폐지 결정('09)
 - * 저농약 인증은 농약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친환경농산물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인증단계(유기·무농약·저농약) 혼란을 초래하여 폐지 결정
- 농업환경정보 통합관리시스템(휴토람) 구축을 통한 농업환경정보 제공

③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1~'15) 주요내용

- 시군단위 광역단지(200ha 이상) 및 마을단위 지구(10ha 이상) 조성 확대를 통해 전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의 36.3% 차지('14)
 - * 친환경농업단지/지구 : ('09) 20/992 → ('12) 42/1,077 → ('14) 48/1,141
-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유도
 - *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2), 유기직불금 지급기간 연장(5→8년, '15), 밭작물 친환경·밭직불 중복지급 허용('15) 등
- 생협·전문 판매장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채널 확대를 통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 * 친환경 인증 농식품 취급점 : ('10) 4,102개소 → ('12) 4,658 → ('14) 4,954

① 친환경 인증 농식품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및 관리강화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97) 및 인증제 도입('01), 가공식품 관리 제도 통합('14.1) 등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식품 관리기반 마련
 - 인증제 전면 도입으로 인증 받은 제품만 '유기', '무농약' 등으로 표기가 가능하여 관행 농산물과 차별화 가능
- 예외규정 정비, 민간인증기관 관리강화, 생산·유통단계 조사확대 등을 거쳐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인증·관리기준 정비

② 친환경 인증 농식품 유통·소비 활성화 기반 마련

- 판매장 지원자금 및 원료 구매자금 용자지원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접근성 확대(판매장, '01: 477 → '05: 1,266 → '12: 4,658 → '15p: 5,228)
- 소비지(경기도 광주)·생산지(전남 나주) 거점지역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물류 효율화 유도
 - * 경기 물류센터 건립('12)을 통해 수도권 유통·학교급식 물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고, 전남 나주도 '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
- 임의자조금 등을 활용한('15년 기준 19억원) 소비자 홍보·교육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인지도('15 : 95.8%) 제고

③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 친환경농업의 규모화·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단위 광역 단지(200ha 이상) 및 마을단위 지구(10ha 이상) 조성 확대
 - * 친환경농업단지/지구 : ('06) 3/822개소 → ('09) 20/992 → ('12) 42/1,077 → ('14) 48/1,141
-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실천기반 조성
 - * 직불제 도입('99), 수급대상 전국 확대('02), 인증단계별 단가 차등화('03), 단가 인상('06, '12), 유기직불금 지급기간 연장('12, '15) 등

- 권역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및 친환경 재배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한 농가 교육·재배기술 보급 확대

* 전남('08), 강원('09), 경남('10), 경북·제주('12), 충북('13), 전북('14), 충남('15)

4]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강화

- 화학비료·농약의 적정사용 유도를 위한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작물 확대

*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작물 : ('04) 96 → ('10) 105 → ('13) 112 → ('15) 115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확대 및 시군별 분뇨 자원화계획 수립 의무화('14) 등을 통한 분뇨·악취 등 축산환경 개선 지속

* 공동자원화(퇴·액비)/에너지화 시설(개소) : ('10) 53/3 → ('12) 82/7 → ('14) 101/9

다 반성 및 도전과제

1] 정부·지자체 주도의 인증면적 확대 중심 정책으로 신뢰저하 초래

- 인증면적 확대정책 및 일부 민간인증기관·농가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실인증으로 소비자 신뢰도 저하('12: 67.8 → '14: 61.6)

* 무리한 인증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의지가 없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을 노린 민간인증기관·자재업자 등으로 인해 부실인증 증가

- 국제기준과의 부합성만 강조하고 국내 농업현실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인증기준도 부실인증 유발의 원인

- 인증제도 보완 및 사후관리 강화로 부실인증은 감소 추세이나, 과도한 검사, 서류작성·제출 요구 등으로 농가 부담 증대 초래

2] 높은 유통비용 및 안전성 중심 홍보로 소비확대에 한계

- 지역농협 및 단지·지구 등을 권역별 산지유통조직으로 육성하여 유통비용을 낮출 계획이었으나 성과는 미흡

- 소규모·분산 생산구조인 상황에서 생협·전문점·학교급식 등 소비자 확대정책은 생산자가 가격 교섭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초래

- 폐쇄적 생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소매점 판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판매가격 인하 없이는 일반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에는 구조적 한계

* 쌀의 농가 수취가격은 무농약 1.13, 유기 1.25배 높은 반면, 소매가격은 무농약 1.59, 유기 1.89로 일반 소비자 구매의사가격(1.4)보다 높은 상황('13)

- 인증 농식품의 안전성 중심 홍보는 농약검사 확대를 유발하여 농가·유통업계의 비용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판매가격에 전가

* 인증단계의 토양·수질검사 및 유통·소비 단계의 잔류농약검사 등은 확대되는 추세이고, 검사·시험비용은 농가가 부담하고 있어 비용부담 증가

③ 국내여건에 맞는 생산모델 구축작업이 미흡하여 안정적 생산에 애로

- 관행수준의 재배기술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유기농자재 등 외부 투입물 의존도 증가에 따른 생산비 증가 초래

* 친환경농가(308농가) 대상 조사 결과 친환경농업 전환 이후 53.2%가 수익 감소('15)

- 단지·지구 선정 확대, 직불금·자재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실천에 따른 재배기술·생산비 부담은 관행농의 친환경 전환에 어려운 요인

- 현행 생산구조는 자재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나, 체계적인 자재관리 체계 미흡으로 불량제품('14: 10.1%)이 유통되어 선의의 농가 피해 초래

④ 유기·무농약 등 인증농산물 육성중심 정책으로 농업생산활동에 따른 환경부하문제에 대한 관심 소홀

- 유기질·맞춤형 비료 지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입물 적정 관리에 대한 정책지원·관심 부족으로 과투입에 따른 환경부하 우려

- 농업의 환경부하 절감 및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한 토지관리, 작물 생산방법, 농법개발 등에 대한 연구·조사는 미흡

* 농진청·농기평의 친환경 관련 연구예산('13, 113억) 중 농업환경자원 관리·평가와 관련된 예산은 7.3억원(6.5%)에 불과

3. 제4차 5개년 계획 추진방향

기본방향

- ◆ 친환경 인증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업환경 개선정책을 구분하여 접근
 -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산업은 관행 농산물과 차별화된 고품질 프리미엄 상품으로 육성
 - 전체적인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을 마련하여 확산 추진

-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산업)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체계 확충 추진
 - (인증 제도)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사전·사후관리는 강화하되, 과도한 인증기준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안전성 제고 및 민간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등 추진
 - 불필요한 규제 정비로 유기·무농약 인증의 진입 편의성 제고
 - (유통·소비) 전문화·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소비채널 다양화를 통한 판로 확충 유도
 -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 산지농협 등을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으로 육성
 -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단체급식·온라인 마켓·일반 소매점으로 판매 채널 다양화
 - (가공·외식)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외식·수출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 수요시장 창출 유도
 -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원료공급, R&D, 정보·통계 제공 등 가공·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확대
 - 무농약 가공품 관리제도 도입 및 생산-가공(외식)-수출 연계한 우수 모델 발굴·확산 유도

○ (생산 기반)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 내실화 및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보급 확산 유도

- 친환경 단지에서의 가공-체험 등 6차산업화 유도
-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가의 소득 감소분 지원 및 저농약농가의 무농약 이상 전환 유도
-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정비, 소비자-생산자 신뢰 제고

□ (농업환경 보전)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보전 기능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 투입재 감축에 따른 막대한 환경보전 효과를 넘어 **현행 농법의 환경보전효과 검증 및 증진방안** 지속 추진

- (1단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가칭) 시범사업 추진 및 모델 설정
- (2단계) 기존사업 연계 등 통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확산 및 효과 검증
- (3단계) 직불금 가산 등을 통한 농업 영위시 기본관리사항으로 설정 검토

○ 기관별로 분산 수행되는 기존의 농업환경 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D/B화하여 체계적인 **농업환경 조사·평가 시스템** 구축

□ (인프라 구축) 분야별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통계·조사 및 현장수요와 경제성을 반영한 **연구개발(R&D) 강화**

구분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산업	농업환경 보전
통계·조사	○ 생산·유통현황 ○ 농가소득 및 생산비 현황 ※ 현 조사항목 : 인증면적, 출하계획량	○ 기관별 농업환경 조사체계 통합·연계 및 조사내용 확대
R&D	○ 한국형 친환경(유기·무농약) 생산모델 개발 ○ 유기식품 가공기술 개발 ○ 유기농업원천기술 개발	○ 유기·무농약 환경보전효과 검증 및 효과 제고방안 ○ 국내실정에 맞는 농업환경 프로그램 개발·검증

□ (추진체계) 생산자가공·유통업체·소비자·정부·지자체·연구기관 등의 주체별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성과창출 유도

< 분야별 추진전략 >

		현 행	개 선
친환경 인증 농식품	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에 대한 고려 미흡 ○ 이원화된(농관원·민간인증기관) 인증체계 ○ 과도한 서류요건,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 인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민간인증체계 확립 및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 인증관리는 강화하되, 과도한 인증기준은 합리적 개편
	유통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분산 소규모 유통구조 ○ 생협·전문점 중심 판매구조 ○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홍보 미흡 ○ 1차 농산물 판매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道)단위 산지조직화 ○ 일반소매점·온라인·기업 상생협력 등 판매채널 다양화 ○ 의무자조금 활용,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 마련 ○ 가공·외식 등 연관산업 육성(무농약 가공품, 비식용, 음식점 등)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지구 내실화 미흡(30%) ○ 높은 생산비용으로 친환경 지속 실천에 어려움 ○ 선도농가 중심의 폐쇄적 생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지구 내실화(인증면적 70%) -가공·체험 등 6차산업화 유도 ○ 검사비용 절감, 직불제 개편* 등을 통한 소득보전 지원 * 저농약의 무농약 이상 유도 ○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 교육 및 기술보급 확산
	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화된(공시·품질인증) 자재관리 시스템 ○ 허용물질 평가시스템 미구축 ○ 보편화된 처리종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관리시스템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 허용물질 검증·평가시스템 구축 및 선정기준 강화 ○ 유기종자 공급체계 구축
	농업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농업여건에 맞는 환경보전형 영농방식 미구축 ○ 농업환경 변화상 확인이 어려운 조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농업환경보전모델 정립·확산(시범사업) ○ 지역단위 평가가 가능토록 지표 및 조사주기·지점 확대

4. 비전 및 목표

비전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목표	<p>◇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인증 농식품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 : ('15p) 4.5% → ('20) 8(연간 15% 확대) ◦ 인증 부적합률 : ('15) 4.6% → ('20) 1(연간 25% 감소) <p>◇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 ('16~'19) 시범사업, 모델 정립 → ('20이후) 확산 ◦ 화학자재 사용량 : ('14) 화학농약 9.3kg/ha/화학비료 258 → ('20) 8.5/235 		
추진 과제 및 주요 내용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산업 육성	① 인증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인증체계 확립 / 역량 강화 • 인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내여건 고려한 인증기준 재정비 • 비식용 유기농산물 제도 마련
		②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 소비자 판매채널 다양화 •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의무자조금 활성화) • 가공·외식·수출산업 활성화 • 유통정보 제공 강화
		③ 생산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지·지구 내실화 •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 농가 교육 및 기술 지원
		④ 유기 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물질 및 자재 관리제도 정비 • 유기자재 지원사업 개선 •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농업환경 보전 강화	⑤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 적정시비 및 방제시스템 구축 • 기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⑥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IV.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1)

제1장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산업 육성

1. 인증제도 개선
2.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 확대
3. 생산기반 확충
4.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1. 인증제도 개선

가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 불필요한 규제 정비로 유기·무농약 인증 진입 편의성 제고
- ◇ 친환경 인증 농식품 안전성 제고 및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 유기식품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무농약·무항생제를 활용한 가공식품도 인증·표시대상으로 포함

(1) 국내여건을 고려한 인증기준 재정비

농산물

- 국제기준 및 국내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인증제도 일반원칙을 국제기준(IFOAM, CODEX) 및 미국·EU 등 유기식품 선진국 기준과 비교하여 과도한 사항 조정
 - 국제기준보다 높거나 실효성이 낮은 기준 발굴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여건에 맞게 현실화
- ◇ (예시) ①유기·무농약 인증기준 상 토양 잔류농약 불검출 규정, ②일반 축산분뇨 가축분뇨 자원화 기준(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를 15일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5회 이상 뒤집어야 함 등), ③논농사 윤작 규정 등
- 중장기적으로 농약분석, 생산결과 중심의 관리시스템에서 유기농업 취지에 입각한 성실한 이행과정을 심사하는 인증관리체계로 전환
 - 농가 의식 제고, 소비자 인식 전환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기농 바로 알리기 캠페인, 교육·홍보 등 확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무농약 진입을 희망하는 일반농가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완화·폐지

○ 무농약인증을 위한 전환기간(1년) 제한 등 안전성과 관계가 적은 규정을 폐지하여 친환경 희망농가의 무농약 재배 접근성 제고

○ 무농약 신규신청 이전 1년간 영농일지 제출, 인증취소된 경우 재진입 차단규정*(1년) 등 사후관리강화로 부실차단이 가능한 사항 폐지

* 인증취소 농가 재진입 차단규정은 폐지하되, 해당농가는 재진입시 특별 관리 대상으로 관리

○ 병해충 발생 등으로 특정 필지의 무농약재배가 불가능한 경우 농약살포를 허용(예시: 1회)하고 인증취소 하되, 익년 인증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 인증기관 감독 하에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되, 살포 이후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시 재배 관리하는 조건으로 허용

* (현행) 농약 살포시 신청 전필지 인증취소 + 1년간 재인증 불가 → (개선) 인증기관 승인 하에 특정 필지 농약살포 허용, 해당필지만 인증취소 + 차기년도 인증신청 가능

○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지에서 원활하게 무농약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보완 작업 지속 추진

- 다만, 제도개선시 소비자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 지속 파악

□ 단체인증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신뢰제고 추진

○ (현행) 인증심사 및 절차 등에 따른 농가편의*를 위해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법인 등은 단체인증 가능

* 인증신청비 및 농가수 증가에 따른 인증심사관리비 절감, 인증심사 과정의 토양, 용수 등에 대한 검사·분석의 표본조사, 사후관리 표본조사 등

- 단체인증 심사시 선정된 표본농가 외 농가에 대한 관리소홀이 인증 부실로 이어져 소비자 신뢰저하 요인으로 작용

* 국내 단체인증 관리시스템은 미국·EU 등 동등성 체결국도 문제제기

- (개선) 연차별로 5ha 이상 집단화된 경우에 한해서만 단체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단기) 농지가 분산된 경우 농가의 포장재 단체구매 등에 따른 인증번호 고수의지 등을 감안, 단체인증을 허용하되 부담* 부과
 - * 농지가 분산된 경우에는 단체로 인한 인증심사관리비 절감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소속농가의 검사·분석시 전수조사
 - (장기) 집단화된 경우에 한해 단체인증 신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미충족 단체는 개별인증을 받도록 유도
 - 미충족 단체가 단체인증을 유지할 경우 농가별 생산계획서 작성 의무를 지속하고, 특별 관리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소비자 신뢰제고 관련 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강화
 -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하여 고의·상습적 행위에 대한 처분은 강화하되 비의도적·일시적 행위에 대한 처분은 경감
 - * (예시) 허용되지 않은 유기식품 원료·첨가물 사용 : (현행) 의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증취소 → (개선) 의도적 : 인증취소, 비의도적 : 경감규정 마련
 - 인증품 이력추적을 저해하는 취급자의 인증정보(생산자, 인증번호 등) 표시방법 단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분강화 추진

축산물

- 유기·무항생제 등 축산관련 인증제 기준 표준화 및 차별화 추진
 - 친환경(유기·무항생제),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등 축산관련 인증제의 공통기준을 표준화하여 인증 시 중복 심사 면제
 - 인증제의 개별기준을 차별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란 방지
 -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명칭을 개선하거나, 인증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계하여 일반축산물과 차별화하여 논란과 오해 방지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인증관리 강화**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을 국제기준(미국 NOP 등)에 부합하도록 개선**
 - * (현행) 휴약기간 2배 준수 → (강화) 가축 전(全)생애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 친환경적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무항생제 인증 사육밀도 개선**
 - * (현행) 「축산법」의 일반가축 사육기준 → (강화) 무항생제 인증 사육기준
 - 사양기술 향상 등으로 출하시기 단축을 고려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전환기간(입식 후 출하까지 최소사육기간) **별도 운영**
 - * (현행) 유기축산물 전환기간 준용 → (개선) 무항생제축산물 전환기간 신설

□ **유기축산의 양적성장과 증장기 발전 방안 마련**

- 유기축산물에 대한 인증제 도입('01)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인증 농가수는 100호 내외로 전체 축산농가의 0.1% 수준
 - * 유기축산 인증농가 : ('12) 97호 → ('13) 96 → ('14) 97 → ('15) 97
- 유기축산의 진입장벽 등 **제약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무항생제 인증농가('15년 기준 전체 친환경축산농가의 98.6%)를 유기 전환 유도**

가공식품 등

- 소비자 신뢰제고 및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증·표시기준 마련**
 -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료 사용비율에 따른 인증품 대상범위 확대 추진**
 - 현행 규정상 제한적 유기표시* 대상인 유기원료 함량 **70~94% 제품을 유기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 * 유기원료 70% 이상 제품은 주표시면 제외한 곳에 유기표시가 가능하고, 70% 이하 제품은 원재료·함량란에 유기표시 가능(가공방법, 세척·소독, 포장 등에 대한 인증은 부재)
 - ** 미국은 유기원료 70~94% 함유 제품에 대한 인증 실시 중(유기라고 사용은 불가하고, 주표시면에 "Made with Organic"으로 표시 가능)

- 해외사례 참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비유기 원료(6~30%) 사용 범위, 유기 표시방법 등 세부규정 마련 등을 거쳐 인증기준 마련

* (현행) 인증대상 제외(원료 사용여부만 점검), 주표시면 유기표시 사용 불가 → (개선안) 인증대상에 포함, 주표시면 유기표시 사용 가능(유기라고 사용은 불가)

○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무농약 혼합 가공식품 표시·인증기준 마련

* 가공식품 관리범위 : (현행) 유기가공식품 → (개선)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무항생제 사용 가공식품, 유기·무농약·무항생제 혼합 사용 가공식품

- 관계자 의견수렴 및 유통시장조사, 첨가물 등 허용범위 설정, 인증기준 개발 등을 거쳐 관련법령 정비

□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

○ 수출용 유기원료 수입통관 제출서류 간소화

- 수출용 유기식품 생산을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에 한해 인증서 사본, 수입증명서 등 수입통관서류 제출 면제

○ 유기가공식품의 이중적 표시기준 개선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의 일괄표시면에 기재되는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등 표시사항은 유기가공식품 표시사항에서 제외
- 제한적 유기표시 제품(비인증품)의 투입원료별 함량 표시기준을 총량으로 표시하도록 개선(식품위생법상 표시의무 無)

○ 수출용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 완화

- 국내인증 없이 수출국 인증만 획득한 업체로 가공제품 전량을 수출하는 업체에 한해 수출대상국 규정에 따른 유기표시 허용
- 수출용 유기가공식품은 수출대상국의 표시 규정을 우선하여 국내 기준에 따른 인증품 표시사항의 생략이 가능*토록 개선

* 수출용 제품에 한하며, 국내에서 유기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 필요

□ 친환경 인증 농식품 소비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식당 등 대량소비처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사용 인증·표시제 도입

○ (현황) 다류 판매점·음식점 등에서 '유기'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표시기준이 부재하여 혼란 초래

* 현행법 상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하나, 다류 판매점·음식점 등의 경우 '제조·가공'에 대한 적용여부가 모호

** (예시) 휴게음식점 제품 생산과정은 식품공전의 '제조·가공'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영업 종류에는 '조리'로 구분

○ (단기) 제조·가공업, 제과점영업 등은 유기가공식품 인증·표시 대상으로 관리하고, 조리·판매업체는 원료사용여부만 표시토록 유도

- 조리·판매업체는 유기가공식품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되, 제한적 유기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 표시*토록 관리

* (예시) 음식명·메뉴판 등에 '유기농 사과를 사용한 샐러드' 등으로 표시 가능

○ (장기) 현재 친환경단체가 자체기준으로 인증하는 친환경우수식당 보다 관리기준이 높은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사용 관리제도 도입

- 음식점 인증은 식당의 친환경 원료 사용 수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달리하고, 사용 원료 종류 등을 게시토록 제정

* (해외사례) 덴마크는 학교·병원·호텔 등에 대해 인증(1,048개소) 중이며, '20년까지 6천개소 확대 계획(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 지난 3년간 678% 증가)

- 제조·가공업체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조리·판매업체는 식당·음식점 인증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

구 분	인증대상(안)
가공식품 인증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제과점 등
음식점 인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등

(2) 표시방법 개선 및 인증대상 확대

- 인증받은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유기 표시용어는 “유기”로 통일
 -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사료 등 종류별로 유기 인증품의 표시 용어를 달리하여 상품의 복잡한 표시사항을 단순화
 - (현행) 유기농, 유기축산, 유기가공식품 → (개선) 유기(Organic)
- 유기식품 인증대상 범위 확대
 - 벌꿀 등 수요는 높으나 국내기준 부재로 소비자에 혼돈을 초래하는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제도권 관리 추진
 - 현재 국내 인증기준을 운용하고 있지 않아, 외국 인증을 받은 제품(가공품 포함)이 표시제 형태로 수입
 - 수입량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제정 품목을 설정하고, 국제기준 및 세계 주요국가 인증기준을 토대로 국내실정에 맞게 기준 마련
 - * 호주, 남미 등에서 수입되는 벌꿀 및 가공품이 ‘유기식품 신고 및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국의 표시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표시·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현재 기준으로 인증이 가능한 화훼, 와인 등은 제도보완을 통해 인증을 실시하고, 관련산업 활성화 추진
 - 식용 화훼는 현행 기준에 따라 인증을 지속하고, 비식용 화훼는 인증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추진
 - 와인·전통주 등에 적합한 제조공정 및 천연첨가물 이용범위에 대한 실태조사·기준제정을 통해 인증 활성화 유도
 - 소비자·업계 의견수렴, 유통·판매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진하고, 추진시 법령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연차적 도입

(3) 농가의 인증 편의성 제고

□ 농업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

○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규칙에서 고시 등으로 일괄 전환

- 현행 시행규칙(농식품부)·고시(농관원)로 이원화되어 있는 친환경 인증 농식품 인증기준은 고시로 통합

- 허용물질 종류·선정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도 고시로 전환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

* 허용물질 추가·삭제를 위해 통상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인증 신청·갱신에 필요한 제출서류 최소화

○ 인증 신청시 제출하는 생산계획서는 고령농업인 등이 작성하기 어렵고 심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간소화·제출 제외

- 생산계획서를 인증신청서와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추가 필요한 사항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로 대체

* 생산계획서 작성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인증심사원의 토양 등 조사·분석, 현장심사, 경영 관련자료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친환경농업인 대상 교육 및 인증기관 농가 현장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의 영농일지 작성 교육 강화

- 무농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유기는 시행결과 등을 점검·평가하여 생산계획서 작성 제출 간소화

- 기존 인증사업자가 동일 인증기관에 인증갱신을 신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제출하도록 **첨부서류 간소화**
 - (현행) 생산계획서, 경영관련자료, 사업장 지도, 작업장 도면 일체
→ (개선) 변경된 사항만 제출
- 일반농가 및 가공업체가 친환경 인증 농식품 생산·가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제작 및 교육 강화**
- 인증사업자별 인증기준,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내용·절차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 해설집 제작·보급**(16, 농관원·농진청)
-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등에 대한 **농가 현장교육 확대**(연 1회 이상→2)

(4) 인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유기·무농약 등 인증 농산물의 수확·선별과정에서 **GAP 수준의 위생관리기준을 규정·관리하여 안전성 관리 제고**
- 자재·시설의 청결관리, 수확작업 전후의 개인위생 및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사항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명문화**
 - GAP 위생관리 **필수사항에 한해 규정하여 농가 등의 이행부담 최소화**
 - * (현행) 저장·수송시 청결유지 및 외부오염 방지의무 → (개선) 자재·시설의 청결관리, 수확작업 전후의 개인 위생 및 작업장 등의 위생 등으로 세분화
- 친환경 인증 신청농가의 **GAP 취득 연계방안 마련**
- (단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친환경 인증기관을 GAP 인증기관** (병행기관 27개소)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 검토**

- 친환경 인증농가 희망시 추가 수수료 부담 없이 **GAP**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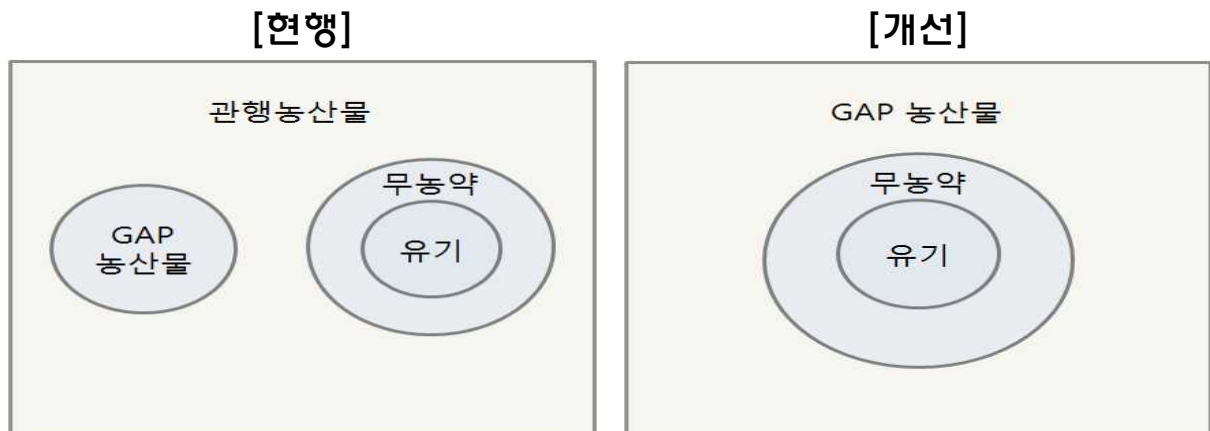
* 친환경·GAP 병행 인증기관은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가에서는 친환경 인증 수수료를 지자체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상호 비용절감 효과

- GAP 신청시 농가에 지원하는 수질·토양검사비용(연간 60억원)은 친환경 인증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

○ (장기) 친환경 인증기준에 위생관리기준 마련시 친환경 인증농가는 **GAP**를 의무적으로 취득토록 제도개선(GAP 표시여부는 농가선택)

- 친환경 인증시 GAP 취득토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검토

< 관계 설정안 >



□ 양 제도간 상이한 심사·관리기준 등으로 친환경농가에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동의과정을 거쳐 추진

◇ 위생관리기준 강화 필요성

- 대다수의 소비자는 '안전성'을 친환경농산물 구매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
-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농약 사용 최소화로 화학적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으나 가축분뇨 등을 많이 사용하는 여건상 생물학적 안전성에 취약 우려
- 현행 친환경 인증기준에도 위생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선언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세부 이행기준 마련을 통한 신뢰도 제고 필요
- * EU도 농산물(유기식품 포함)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GAP 취득 의무화

GAP		친 환경	
범주	준수 수준	추가사항	난이도
1. 이력추적관리제도	필수 1	필수 (출하정보 기록 : 품목, 날짜, 물량, 출하처(전화번호) 등)	중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필수 1 권장 1		
3. 농경지 토양 관리	필수 2 권장 3		
4. 비료 및 양분 관리	필수 2 권장 2		
5. 물 관리	필수 1 권장 2		
6.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필수8 권장4		
7. 수확 작업 및 보관	필수 2 권장 3	필수 1. 개인위생관리 철저(전염병 증상자 작업 불가) 필수 2. 수확농산물은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오염 방지	하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확한 농산물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 일반시설 이용시 8-2, 8-3 기준 충족 	하
	필수	8-2. 선별·세척·소포장·저장 등 처리과정이 필요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과 세면 시설 청결 유지 및 손 건조기 또는 일회용 수건 비치 작업장은 비가림 시설 및 바닥은 물 청소 가능. 축산폐수나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격리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 작업장과 격리 설치 지하수 취수원이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등 안전 격리. 물류 기기와 용기는 세척이 용이하고 소독과 건조가 가능 용수 탱크에 밀폐 덮개 설치, 오염물질 유입 방지 	하
	필수	8-3. 모든 작업자는 위생 지침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 전후 및 용변 후에 손을 청결하며, 손 건조기 또는 일회용 종이 수건 사용 손 건조. 위생적인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위해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예: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 마스크 및 위생 장갑의 착용 등) 작업장의 위생 관리 상황 기록·관리. 	중
	필수	8-4. (약용작물) 호흡열·통풍 불량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 방지 및 건조 후에 품질 변화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건조시 특성에 맞게 양건 또는 음건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건조대의 간격을 적절히 조절 	하
	권장 권장	농산물표준규격에 따라 선별·유통	적용불가
9.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필수 1 권장 3		
10. 농작업자 건강, 안전, 복지	필수 1 권장 2		
11. 교육	필수	농산물우수관리 기본 교육 이수(2년에 1회, 4시간)	중

나

민간 인증체계 확립

- ◇ 농관원의 인증업무 민간이양을 통해 인증체계 재정비
- ◇ 민간인증기관 신뢰제고를 위한 등급제 도입 및 지원·육성정책 마련

(1) 이원화된 인증체계 정비

- 농관원의 효율적 인증기관 관리를 위해 농관원 인증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여 인증체계 단일화
 - ('16.상) 농가·소비시장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및 부실 인증 차단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 농관원 인증농가 대상 사전교육·안내, 민간이양 안내·지원센터 설치(농관원) 등을 거쳐 의무자조금 시행시기에 일괄 이관
 - * 민간인증기관 지도·감독과정에서 실태조사 결과 부실인증 실적이 적은 기관으로 인증물량이 우선 이양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 사전안내·지도 철저
 - 다만, 친환경 의무자조금이 조기 시행될 경우 추가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추진
 - ('16.하~) 시장 수용분위기 숙성과정을 거쳐 완전 이양하고 인증 관리업무 운용현실에 맞게 관련법률 등 개정
 - 민간인증기관 등급제와 연계, 우수인증기관 중심으로 기존 농관원 인증물량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에 안내·지도 강화
- 민간인증기관은 농가 인증뿐만 아니라 직불금 점검 및 의무자조금 거출 등의 공공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
 - 현장과 밀착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 민간인증기관에 직불금 신청 접수 및 이행점검 등의 역할 부여

-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직불금을 농관원으로 이관**하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등을 거쳐 농가에 직불금 지급
- 인증기관의 직불사업 수행에 따른 관리비용은 **발 직불금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업관리비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 건당 3만원 지급시 약 9억원 소요('15년 신청건수 30,500건 × 3만원)

- '16년 도입계획인 **친환경의무자조금 거출기관을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조금법에 따른 거출기관 수수료(최대 7%) 지원
- 농가 스스로 인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 주관 농가교육**을 확대하고,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 등을 위한 소식지 발간
 - 부적합자재 발생시 민간인증기관이 각 **소속농가·업체에 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농가 피해 차단(자재업무 농관원 통합시기와 연계)
 - 생산관리자 중심의 **인증제도·인증관리요령 교육**을 연차적으로 소속 인증농가 전체로 확대('15 : 1,700명 → '20 : 전농가)
 - 새로운 친환경 영농기술, 우수농가 사례, 제도개선 내용 등을 담은 **소식지**를 발간, 인증관리 농가에 보급
- 농관원은 민간인증기관 **관리업무를 중점 추진**하여 부실인증 사전 차단
 - 농관원의 인증기관 업무실태 등 **지도·점검 횟수 확대**(연 1회 → 2)
 - 민간인증기관 등급제와 연계, 하위등급 인증기관은 **지도·점검 확대**
 - 인증기준 위반 우려가 높은 **취약시기 조사 강화**
 - 생산단계 민간인증기관 소속농가 **조사 확대**('15 : 20% → '20 : 40)
 - * 취약품목(예시) : 논벼, 노지 발작물(감자, 마늘, 양파 등), 시설채소류, 돼지·가금류
 - 부실인증품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명절기간(설, 추석) 집중조사**
 - 인증기준을 위반한 **부실인증에 대해서는 처벌기준 지속 강화**

- 인증기관의 인증과정 '2중-check 시스템' 점검대상 확대(현 3% → 6)
 - 민간인증기관별 점검량은 전반적인 업무능력 향상 정도, 우수기관 여부 등을 고려하되,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확대
 - 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인증기관의 인증 심사보고서 모니터링 결과 부실인증 우려건 농관원 현지조사 강화('15: 3% → '20: 10)

(2) 민간인증기관 역량강화

□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농가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

- 민간인증기관 목표 : ('15) 71개소 → ('20) 도별 2~3개소(총 25개소 내외)

◇ 민간인증기관 해외사례 비교

- 인증면적·농가수 대비 인증기관('14)

	면적(천ha)	농가수(천호)	인증기관(개소)	면적/인증기관	농가수/인증기관
독 일	1,047	23	23	46천ha	1천호
스위스	129	6.4	4	32.6	1.6
한 국	100	85	71	1.4	1.2

* 독일·스위스는 유기농만 해당하고, 한국은 무농약·저농약도 포함

- 스위스의 경우 Bio-Suisse에서 유래한 **Bio-Inspecta**가 인증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최대 인증기관은 **Bioland**로 점유율 40% 수준
 - 독일·스위스 주요 인증기관은 국가인증제도보다 높은 수준의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 주요 민간인증기관은 유기식품 이외에 국가인증제도가 없는 비식용 유기 가공품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 ⇒ 우리나라는 독일·스위스 등 유기식품 선진국에 비해 민간인증기관이 많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민간인증기관의 신뢰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급제 도입

- 민간인증기관이 국가업무를 위임받은 점을 감안, 공공성을 갖추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관리

- 연구용역(~'16.상)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 추진
 - (1단계)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근거 마련('15년)
 - (2단계) 연구용역, 전문가 및 생산자·소비자협의 등을 통해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세부시행방안 마련('16년 상반기)
 - * 기관운영실태(회계분석), 인증농가 관리상황 및 접근성 등 평가기준화하고, 전문회계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평가·분석
 - (3단계) 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 개선·보완('16년 하반기)
 - (4단계) 민간인증기관의 역량평가 및 등급 부여('17년~)
- 농업인 등이 인증기관 역량 등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결과 부여등급(3단계)을 인증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방안 검토
- 인증기관의 역량 제고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우수기관 사례를 전파하고, 소속 심사원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지원 검토
 - 하위기관은 경영개선계획 수립, 직원 특별교육, 운영실태 점검(분기별), 2중-check 시스템 우선 포함 등 관리 강화하는 방안 검토
- 우수 민간인증기관 육성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국제표준화 기준(ISO/IEC 17065*)에 부합토록 평가·지원
 - * ISO/IEC 17065 : 제품을 인증하는 기관(민간인증기관)이 갖춰야 할 요구사항 및 기준
- 민간인증기관의 공정성, 책임성, 정보관리능력, 농가 불만 및 문제 해결능력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인증기관 역량 강화
 - *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기준에 ISO/IEC 17065 충족여부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영세한 민간인증기관 부담을 감안, 한시적으로 ISO/IEC 17065 취득을 위한 컨설팅·심사비 등 소요비용* 지원('15: 2개소 → '20: 20)
 - * 일반적으로 인정기관으로부터 ISO/IEC 17065 취득시 연간 1~2천만원 소요

- 중장기적으로 민간인증기관은 ISO/IEC 17065 기준 준수 의무화 추진
 - 농관원은 전문성을 높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기관*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인증기관의 인정기관 취득에 따른 비용절감 유도
 - * 국제표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관리하는 공인기구로 친환경인증기관은 농관원에서 담당, 다른 제품인증분야는 기표원의 적합성평가과(KAS)에서 담당
 -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기준 중 필요한 조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증기관의 ISO/IEC 17065 취득 의무화 추진
- 체계적인 민간인증기관 육성·지원방안은 의견수렴, 해외사례조사 및 진행 중인 연구용역(~'16.상반기) 등을 통해 마련
- 민간인증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기준 정비
 - 신규 민간인증기관은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공공기관 등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기존 민간인증기관도 유예기간(예시 : 5년) 부여 후 비영리법인·공공기관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인증기관 평가시 공공기관에 가점 부여
 - * '15년 실제 운영 중인 65개 민간인증기관 중 영리법인은 37개소(57%)로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최소 인력 상향조정('17년까지 5명)
 - 민간인증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통합시 애로요인 발굴·해소
 - 민간인증기관 삼진아웃제* 적용 우려 등에 따라 통폐합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우수인증기관이 통폐합시 행정처분 감면 추진
 - *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2회를 받고 추가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취소
 - ** (사례) 각 인증기관이 1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통폐합시 행정처분이 승계되어 추가 1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 **인증 관련 비용을 현실화**하여 인증기관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

- 인증수수료 산정 기준인 표준심사 관리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평균 출장비 및 출장횟수 조사·분석을 통해 **표준심사비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기관-소속농가의 연계 강화** 유도
 - * 민간인증기관-농가의 물리적 거리에 따라 상이한 표준심사 관리비를 통일하여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인근에 위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 농가수 외 **인증심사 난이도**(필지수, 면적 등)를 **심사비용에 반영**하여 철저한 인증관리 및 심사원 처우개선 등 유도
 - 인증기관의 서류·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및 생산과정조사 등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분석, **수수료 부과기준 재산정** 검토

(3) 인증심사원 전문성 제고

-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우수심사원 포상**을 통해 자긍심 고취
 - 모든 인증심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식품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유인
 - 매년 우수 인증심사원을 선정, **장관표창(5점)**하고 사례를 전파
 - 인증기관 등급평가지 가점 부여, 심사원 교육시 강사로 활용하여 자긍심 고취
- **인증심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예인력 양성
 - 현업에 종사하는 인증심사원의 심사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인력 육성
 -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실인증하지 않도록 직업윤리의식, 인증관련 법령, 심사기준 및 실무 등을 포괄적으로 교육

- 농가, 농관원, 농업기술센터, 인증심사원간 실시간 영농기술 및 인증 관련 지식과 정보 공유를 위해 SNS 활용 '스마트 학습모임' 구성
- 인증기관별 자체교육(연 4시간)을 농관원 집합교육으로 전환하여 심사원 기초지식 및 소양 함양 교육
 - 농식품교육원 전문가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역량 습득 지원

[4]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 친환경 실천농가, 민간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의 인증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기준 지속 강화
 - 농가 등 인증사업자의 위반빈도에 따른 처분기준 마련
 - 연속하여 2회 또는 총 3회 이상의 상습적인 인증 취소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한을 연장하여(1년 → 2) 상습위반자 재진입 차단
 - 취급자 인증 취소 작업장에 대한 인증 재신청 제한기간(1년) 마련
 - 부실인증 방지 등을 위한 인증기관 관리기준 강화
 - 인증관련 위반자의 인증기관 임직원 재취업을 제한(3년)하고, 취소된 인증기관 재지정 신청 제한기한도 연장(2년 → 3)
 - 중대한 사항 위반시 인증기관 지정취소 외 형사처벌 규정 강화
 - * (예시)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3년, 3천만원) 등
 -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자격 재취득 제한기간 연장(2년 → 3) 등 마련
 - 업무능력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심사원 보수교육(4시간) 의무화

- 인증기준 위반시 회수·폐기 및 미이행자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인증품 감시·지도를 위한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확대

* 명예감시원제도 : 생산·유통조사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관원 인증 단속시 생산자·소비자단체 회원이 동행하는 제도

□ 불합리한 인증기준은 완화·개선하여 인증 편리성 제공

- 신속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인증 처리기한 단축(60일 → 50)
- 단체인증 인증취소 비율을 조정(구성원 15~60% → 20)하고, 경미한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 퇴비 유해성분 함량 비료관리법 규격 적용(퇴비규격 1/2 이하 → 동일), 천연유래물질 불검출 기준 폐지 등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검출규정 완화
 - 제충국 등 천연유래물질 불검출 기준은 폐지하되, 유기합성농약 불검출 규정은 존치

□ 생산자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증관련 정보공개 확대

- 생협·전문점 등 소비지 부적합 제품 실시간 관리를 위한 인증품 유통정보 실시간 조회서비스 개발·보급
 - * 친환경 전용 바코드를 통해 소비지에서 실시간으로 인증품 생산과정, 입고 과정, 인증정보, 부적합정보 등을 확인 가능
- 기관별로 다른 인증신청 비용(수수료, 검사비 등)을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 모두 공개하여 농업인 등 자율선택권 보장
 - (현행) 인증기관별 수수료 공개 → (개선) 검사·분석비용 추가
- 농약사용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정보 공개 확대
 - (현행) 성명, 인증번호, 처분종류 등 공개 → (개선) 처분사유 추가 공개로 인증농가의 경각심 제고

- ◇ 소비자 수요가 높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표시제 도입을 통해 유기제품 신뢰제고 및 소비자 알권리 증진 유도
- ◇ 반려동물사료 인증·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세제·섬유 등 기타 품목은 표시제 도입 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 추진

□ 가축용 사료에 한정된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인증제 도입

○ 반려동물 전용 유기사료 유통실태 조사*,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내시장 현실에 맞는 인증기준 마련

* 수입국별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원료 함량, 첨가물의 종류 등이 다른 제품의 유기제품 표시 실태, 국내 생산업체 현황 등 조사

- 제도 도입시 해외 반려동물 사료 생산업체의 국내인증 취득에 대비해 수입·통관 과정 중 인증여부, 표시사항 등 점검시스템도 검토

○ 소비자, 관련업계 의견수렴 통해 인증제 도입방법 및 시기를 정하고, 인증기준 마련, 제도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 추진

- (1단계)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16)

- (2단계) 현행 이원화된 사료관리법상 유기사료 표시제의 폐지, 애완동물용 유기사료 인증기준 마련 및 관련법령 등 개정 추진('17)

- (3단계)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인증제 시행('17.하)

* 제도 시행시 관련업계의 애로가 없도록 시행 유예기간 설정 등 면밀히 검토

○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증제 도입품목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 및 국내시장 성장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 추진

□ 반려동물 사료 제외한 비식용 유기가공품 표시 관리기준 마련

○ 타부처 소관인 세제, 섬유 등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유기표시 합리화를 위한 표시기준 마련 검토

- 미국·EU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토대로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부터 우선 도입 검토

* 소비자 조사결과('15.8) 우선순위는 세제, 여성용품, 섬유, 화장품 등 순

- 국내 유통제품의 표시실태 및 해외사례조사, 관계기관·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품목별 유기원료 함량별 적정 표시기준 마련

◇ 해외사례 : 민간인증기관 주도의 비식용유기가공품 관리제도 운영

○ Bio-Inspecta(스위스), Ecocert(프랑스) 등 민간인증기관은 유기식품 이외에 국가인증제도가 없는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 주요 품목은 섬유(잠옷, 양복, 속옷 등), 세제, 화장품, 임산물(장난감, 침대, 의자 등) 등이며, 각 인증기관은 자체 인증·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관리시스템 현황>

유기원료 함량	관리기준	가공식품	비식용
95~100%	· 인증대상(유기라고 사용 가능) · 유기표시 가능	· 세부인증기준 有	· 인증기준부재 (사료제외)
70~95%	· 인증대상 제외 · 유기표시 가능(주표시면 제외)	· 현실을 감안한 관리기준 · 사후관리 실시	· 현실과 괴리된 관리기준* · 사후관리 부재
70% 이하	· 인증대상 제외 · 원재료 및 함량에 유기표시 가능		

* 식품이 아닌 경우 유기원료 70% 이상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화장품의 경우 유기원료 10% 이상, 동식물 유래원료 포함 95% 이상일 경우 유기표시 가능)

□ 가축용 유기사료의 첨가물질 제한기준 완화 추진

○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의 사용범위를 국제기준 및 선진국 허용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화

○ 고가로 사료비 상승요인이 큰 천연 비타민제, 아미노산제 등은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이 사용 가능토록 개선 검토

2.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 확대

가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 계열화

- ◇ 전문화·규모화된 산지유통 및 도매조직 육성(유통단계 : 2~6단계 → 2~3)
- ◇ 소비지에는 원하는 품목을 안정적 공급하고, 농가는 제값을 받고 출하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을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으로 육성

- 대형소비처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생산·판매조직 설립

* (예시) 지역단위 친환경단체가 도단위로 회원(2~3천명, 취급액 500억원 이상 등)을 모아 판매 전문 협동조합 설립

- 생산·판매 조직은 친환경 시장변화*를 감안하여 광역단위(道 단위) 선별·포장, 판매, 정산(수확단계 제외) 사업자로 육성·지원

* 가치 소비(안전, 건강, 환경, 영양 등)에서 가격·품위 중시, 농산물 소매점포 대형화·체인화, 무점포 시장의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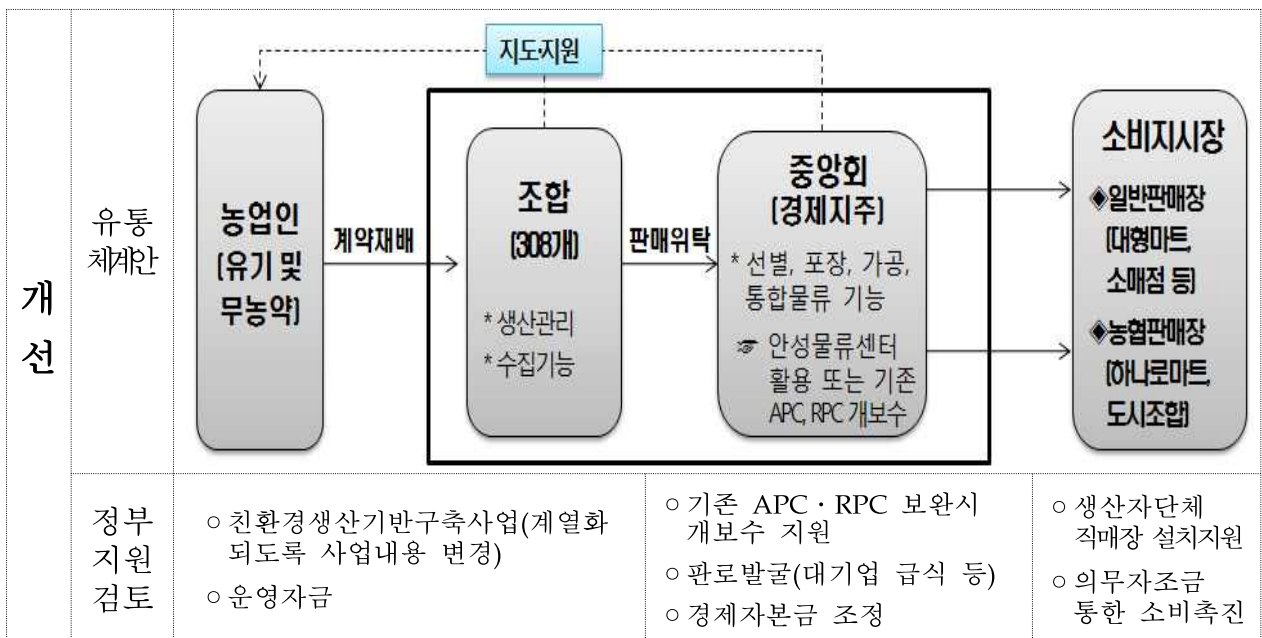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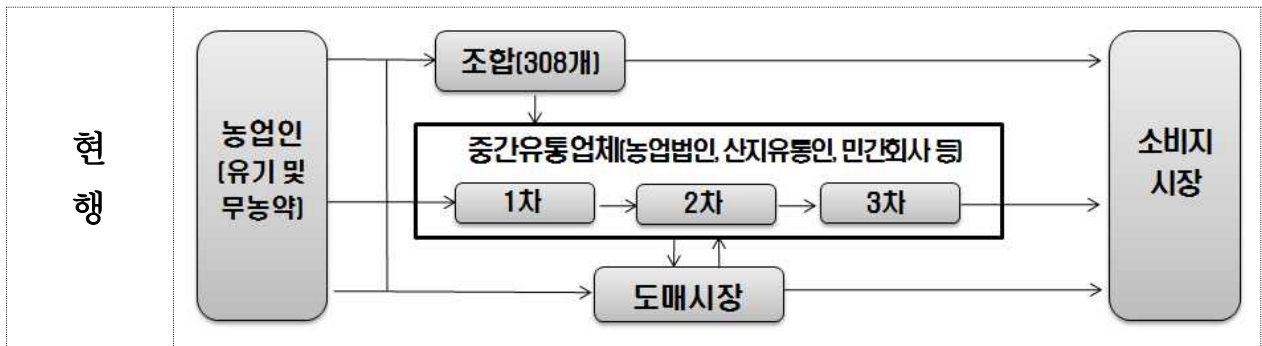
- 특히, 시장변화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른 조직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산지유통주체 육성 계획 매뉴얼(안) >

구분	주요내용	비고
필수항목	공동선별·출하·정산, 업무시스템 구축, 무점포 시장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방안, 작부체계 구축 등	심의대상
자율항목	거점유통센터 구축·운영, 판매장 개설 계획 등	
가점항목	지역조합·중간유통업체·가공업체 연계, 조직구성원 유통교육 실적·계획 등	심의대상

□ 친환경농업인 - 지역조합 - 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계 구축

- 조합 및 중앙회는 친환경농산물 「공선출하회」 구성('14 : 34개소 → '20 : 100) 등 계약재배 방식의 산지조직 육성
 - 채소·과채류 중심의 공선출하회 농산물의 아침마루, a마켓 등에서 우선 판매, 상품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자금 우선지원
 - 경주환경농업교육원,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공선출하회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친환경 전담 산지유통관리자 운영 추진
- 중앙회는 조합 출하물량의 규모화 및 통합물류(안성물류센터 등)를 통해 농협매장 및 일반매장(대형마트 등)에 판매



□ 독일

- 독일에는 10개 내외의 주요 생산자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자단체는 Bioland, Demeter, Naturland 등
- 각 생산자단체는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유통·가공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소속농가 생산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Bioland·Demeter 등은 자체 유통회사를 건립하여 판매촉진 지원
- 각 생산자단체는 별도 인증기관을 설립하여 소속농가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홍보 및 품질확보 서비스도 수행

□ 스위스

- 스위스에는 1개의 생산자협회(Bio-Suisse)가 존재하며, 전체 유기농가의 90% 이상이 Bio-Suisse 협회 회원
- 스위스 주요 소비지는 쿵(Coop), 미그로(Migro)가 존재하는데, 최대 유통채널인 쿵의 경우 모든 유기제품에 Bio-Suisse 라벨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농가 대부분이 판매를 위해서는 Bio-Suisse에 가입
 - Bio-Suisse는 스위스 생산 유기농산물 대부분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직접 교섭하여 높은 가격 교섭력 확보 가능
- 농가·가공업체는 판매액의 0.9%를 로고사용 비용*으로 지불하고, Bio-Suisse는 이 비용을 통해 농가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
 - * 국내의 의무자조금과 유사한 성격
- Bio-Suisse는 소속농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별도 인증기관을 설립하고 있으며, 스위스 국가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나 소비층 대상 판매채널 내실화

- ◇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공동체지원농업 모델 발굴·확산
- ◇ 소비층 대상 판매채널(단체급식, 직거래, 생협 등) 내실화

1] 공동체지원농업(CSA) 확산(회원 목표수, '15: 4백명 → '16: 100 → '20: 300)

- (1단계) 한국형 CSA 운영모델 개발 및 시범구성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 구매 희망품목을 직거래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
 - 친환경농업에 우호적인 소비자단체(녹소연 등)부터 참여를 유인하여 친농연 추천 생산자와 CSA 시범운영 협약 체결(4백명, 13백만원)
- (2단계) 국내 소비·생산여건에 맞는 한국형 CSA모델의 전국 주요 도시권으로 시범운영 확산('15 : 4백명 → '16 : 100)
 - 참여 소비자단체를 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와 전국 255개 지역단체(회원 236만명)로 확산
 -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사업,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등을 활용하여 홍보비·소비자 현장체험 활동비 등을 지원
 - 연초에 집중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CSA를 구성하고, 소비자 구매 희망품목을 농장에서 생산·공급하는 전형적 CSA 모델로 정착 유도
 - 공동체지원농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확산 붐 조성을 위해 우리부, 전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친환경농업단체 간 MOU 체결 추진
- (3단계) CSA의 원활한 추진 및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CSA 구성·관리, 소비자 교육·홍보,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원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CSA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 * 작물 생육상태, 농사일정 공유 등을 통한 생산자·소비자간 소통강화 및 신청 등 회원관리 편리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시스템으로 소협 홈페이지에 구현
 - ** 소요예산은 신규사업 편성 또는 기존사업(자조금사업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② 단체급식 확대

- 대기업-생산자 단체간 이익공유(CSV : Creating Shared Value) 협약을 통한 대기업 구내식당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지속 추진

* (예) 삼성전자 7개 사업장(99천명 근무)의 월평균 농식품 매입량은 4,316톤 수준

-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육성, 학교급식법 개정 검토(교육부 협의)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15 : 97개)」 선호 추세*에 따라 신규 지정요건 강화** 및 법제화 가능성 검토

* 2015년 학생건강 증진 기본방향(교육부) : 식재료 우수관리 업체 우선 이용 권장

** 국가인증 농식품 취급비중 : (현행) 5% 이상 → (변경안) 친환경농산물 10% 이상

- 급식지원센터 설치권자 확대(기초 → 광역자치단체), 현물지원 법제화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지역내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 협의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③ 생략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③ 생략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부담 등) ①~③(생략) ④특별시장...(생략)...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부담 등)①~③(생략) ④특별시장...(생략)...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 국방부(훈령), 방위사업청(예규) 소관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협의

* 행정규칙 내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항목(신인도 평가-품질정도)에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③ 직거래 확대

- aT 사이버거래소·농협의 친환경농산물 전용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
 - 11번가, G마켓 등 쇼핑몰 입점을 위한 온라인 상품개발, 상세페이지 제작 및 쇼핑몰 등록 지원(aT)
 - * '16년 300개 농가(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지원(2억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 a마켓 APP 및 전용상품 개발, 신규 온라인 쇼핑몰 입점(공영홈쇼핑, 쿠팡)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 확대(농협)
 - * (현행) 농협a마켓 120백만원 → (확대) 공영홈쇼핑 등 2,000백만원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포함)에 대한 친환경 전문매장 개설자금 지속 지원 검토(당초 '17년까지)

④ 생협 및 전문점 판매 확대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판매장 개설) 이자율 조정(3% → 1~3%) 및 사업대상자 조정*을 통한 친환경 인증 농식품 판매장 확대 추진
 - * (현행) 생산자단체, 생협 → (개선) 친환경농산물 취급 유통·식품업체 포함
- 직매장 설치자금* 지원 선정시 친환경 분야 가점 부여 검토, 직거래 장터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지원(100백만원 이내)
 - * 소비자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 : 개소 당 300백만원 이내 보조 30% 지원

⑤ 친환경물류센터 확충

- 경기물류센터('12년 완공)는 입주법인 확대('15년 14개)를 통한 단체급식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시설 개보수* 등 추진
 - * 냉동창고 증설('16), 전처리시설 확충, 물류센터 차량 진입데크 개보수 등
- 전남물류센터('16년 완공 목표)는 국내 대기업 또는 생협의 운영주체(입주업체) 참여 유도를 통한 소비지 유통(판매) 및 수출물류 추진

- 소비자조직이 농가경영비를 선지불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현물로 제공받는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방식
- * 소비자에게 농장을, 생산자에게는 판로(무형의 판매장) 제공
- ① (운영체계)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아 CSA 구성, 관리
- (소비자단체) 소비자 그룹과 친환경농업인(마을)을 연계, CSA 구성
 - 매년 초에 농업인·소비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협약을 중개하고, CSA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회원관리(탈퇴, 회원 보장) 등 지원
 - (친농연) 참여할 친환경농업인의 발굴, 연계 등 협조
 - (정부) CSA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조사연구 등 행정지원과 함께 사회적 참여 붐 조성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 ② (회원구성) 1개 CSA는 소비자 30~100호, 2~3농가로 구성
- CSA별로 구매 희망품목, 농가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 조정 하되, 소비회원 중에 리더를 선임하여 운영 총괄
- ③ (회비와 노동력 제공) 농산물의 종류, 분배량, 농가경영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회원별 연 10만원내외 선 지불
- 소비회원이 영농에 직접참여시 농산물 추가제공 혜택(또는 회비 할인)
- ④ (분배방식) 소비자의 수확기 농장방문 수령을 기본으로 필요시 택배배송 등 편의 제공(단,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 농산물의 소비자 공급단가는 유통비용이 제외된 수확기 농가 수취 가격을 기준하여 소비지 매장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
 - 소비자는 선지불한 회비, 생산량, 시세 등에 따라 결정된 물량을 수취(농사가 잘되고 산지가격이 낮으면 많이 수취)

다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 체계적인 소비촉진 홍보 및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자 인식제고 추진

- 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한 체계적 소비촉진 기반 마련
- 홍보기법 다양화 및 행사 통합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1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 마련을 위한 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

- 농업인 공감대 형성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친환경농가 대상 가입동의서 거출 추진
-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대의원회 및 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의무자조금 전환⁽¹⁶⁾
 - 자조금 미납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의 지원제한 등의 제약 설정을 통해 자조금 미납 농가의 무임승차 문제 방지
- 의무자조금은 산업적 측면에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분야의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투입

구분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사업내용	일시적 홍보와 광고, 이벤트성 사업 (조성액이 비교적 소액)	주기적 언론·생활잡지 매체 노출 (대규모 자금 운영)
성과목표	미설정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자금운용	자조금 납부 당사자가 상당부분 사용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 납부자와 운용기관 분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 참고 : 한우자조금 사업 평가결과⁽¹³⁾

- 평균 투자수익률은 19.1으로 정부와 한우농가가 거출한 자조금 광고비 1원당 평균 19.1원의 농가소득 증가
- 지난 8년간('05~'13년) 홍보로 월평균 추가수요 366톤 발생
- 소비자 설문조사결과, 홍보가 한우의 높은 품질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효과적이다'라는 응답이 69.1%, 광고를 보고 한우를 지금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싶어졌다'는 응답이 63.5%로 나타남

② 친환경농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기존 홍보사업(4억원 수준)은 친환경 인증제 인지도가 높아짐(15 : 95.8%)에 따라 소비촉진보다는 **환경보전가치 및 인증제도 홍보**에 중점
 - 유기농업의 생태계 복원 효과 등에 대한 **교육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추진
 - * (예시) ‘학부모 및 은퇴교사’ → 초·중·고 학교대상 교육, ‘소비자단체’ → 주부 대상
 - **친환경농산물 캐릭터**를 활용하여 공익광고, 대형포털사이트 초기 배너, 농식품정보누리를 통해 인증제도 지속 홍보
 - * (예시) 탄소성적표지제 확산-‘카봉이’, 그린카드-‘물범이’ 제작 보급(환경부)
- 농업분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 저탄소인증제와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
 - * 기후변화 주간행사(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박람회 등 참가
- 대중매체(공중파, 신문 등), 행사중심 홍보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접촉이 많은 **ICT·SNS 등 온라인 분야 홍보 강화**
 - SNS 빅데이터 연관 키워드 분석*, 민간분야 프로모션 기법(예: Self-Promotion) 등 ICT 기술을 활용, **소비자 욕구(Needs) 분석결과를 반영한 홍보** 추진
 - * 과산 유기농산업엑스포(15)는 네이버 등 소비자 반응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홍보(목표 66만명/실적 108만명)
 - 참여형 홍보 동영상(예 : UCC 공모전), 트위터 등 CPV(Cost per View) 방식의 **온라인·모바일 분야 홍보**를 통한 소비자 관심 유발

③ 친환경농업 관련 행사의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일부 친환경농업 행사가 통합되었으나, 단체별 독자적 행사 개최*로 행사의 **규모화·효율성 측면은 미흡**
 - *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친환경유기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품평회(친환경농업협의회), 유기(6·2)데이 기념식(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축산페스티벌(친환경축산협회)
- 환경농업단체 주관 유기(6·2)데이 행사를 **유통기업 판촉전과 연계**하여 전국 규모로 개최

- 해외 유기농식품박람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 행사통합을 추진하고, 유통기업 판촉전과 연계하여 전국 규모로 개최(17~)

< 예시 : 독일 뉘른베르크 유기농박람회(BIOFACH) 개요 >

- ▶ 매년 2월 중순('16.2.10~2.13)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유기농 박람회로 '16년에는 130개 국가에서 4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방문 계획
- ▶ 특히, 유기농 제품(신선농산물, 요리, 스낵·과자·음료 등) 이외에도 유기농 조경(튤립 등 화훼류와 관상수)도 전시하는 등 유기농업을 레저산업으로 확대

④ 소비자 혜택부여를 통한 소비확대 방안 검토

○ 친환경 소비자의 실질적 혜택 부여를 위한 그린카드 포인트 제공

- 포인트는 시중 적립률*을 고려하여 적용, 포인트 비용은 농업인의 자발적 부담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 의무자조금 활용방안 검토

* 기본 적립율 : (농협, 뉴해브체크카드) 0.3%, (하나SK, 스마트DC카드) 0.7%

- 포인트는 “그린POS”가 설치된 대형유통사, 전문매장에서 우선 적립

- ▶ (개요) 신용카드의 point 제도를 활용하여 전기·가스·수도 절약,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생활 실천 시 포인트 지급
- ▶ (주요 특징)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제공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탄소포인트 적립	녹색소비 할인	대중교통 할인	공공부문 혜택
정부·지자체 제공	제조기업 제공	카드사 제공	공공기관 제공
연 7~10만원	제품가격의 최대 24%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최대 20%	50% 할인 또는 무료입장

○ 정확한 표적고객 또는 충성고객 유치가 가능한 전문매장 내방객, 유통사 MD 대상 현장체험 신규지원 및 판촉 지원* 강화

* (예)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한 에코백 증정 등 현물제공 중심의 행사 등

⑤ 유기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원스톱 체험이 가능한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추진(충북 청주, 총사업비 180억원)

○ 충북 청주시에 설치·운영 후 운영상황 등을 점검, 생협·전문 판매업체 등과 연계하여 추가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산업 생태계 조성(R&D, 원료공급 강화 등), 수출지원, 관리기준 정비 등을 통한 친환경 인증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①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한 맞춤형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업체 조사결과(181개소, 전체업체의 31%)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81.4%

- 국산 유기원료 사용 업체 대상 ‘찾아가는 기업 지원 서비스’ 및 단계별 컨설팅 지원(‘14: 90개소 → ‘17: 200) 등을 통한 현장애로 해소
 - * 「aT 기업지원단」과 연계하여 경영, 기술전문가를 현장기동반으로 구성·운영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농진청) 등과 연계한 가공시설 공동이용, 가공기술 개발 및 표준화,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유기가공식품업체를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대상에 포함(‘16~)시키고, 점진적 대출금리 인하 협의

② 무농약 농산물 사용 가공품 관리제도 도입 등 제도 정비

-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무농약 혼합 가공식품 표시·인증기준 마련
 - * 현재 유기가공식품 표시·인증기준만 마련되어 있고, 무농약 가공품 관리기준은 부재
- 소비자 수요가 높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표시기준 마련
 - 애완사료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세제·섬유 등 타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 추진

③ 유기가공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중심으로 계약재배* 모범사례 발굴·확산
 - * (사례) 전남 보성 강상농원은 친환경 녹차·어성초·삼백초(141톤)를 계약재배로 조달·가공하여 미국·일본·홍콩 등으로 수출

- 광역단위 산지조직과 유기가공식품업체 연계를 유도하여 해외 원료 의존도(85%) 축소
-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 수요가 높은 품목 수출국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동등성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원료조달비용 부담 완화
 - * 국내 조달이 어려운 시럽류, 커피, 설탕 등을 수출하는 국가에 우선순위 부여

④ 유기가공식품 기술 수요를 반영한 R&D 개발 확대

- 가공식품 R&BD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신규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 실용화되도록 추진
 - * 농식품부·산학연 전문가·대표조직·가공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 R&D 정책, 중장기 로드맵작성, 연구과제 발굴 등 자문 및 건의
-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즉시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은 단기·소액과제로 추진하고, 내수·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기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
 - * 천연 첨가물 대체 기술개발, 허용물질 미사용 제품 개발, 유통기한 증진을 위한 포장재 개발기술, 기능성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등

⑤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 주요 수출 유망국 대상 시장·통관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 수출업체 애로사항('14) : 해외시장 정보(25.2%), 제도현황(21.7), 인증비용(18.9) 등
- 한국 농수산물식품 수입 바이어 협의회* 확대('13: 9개 → '17: 20)를 통한 현지 소비자 및 유통업체 정보 파악 지원
 - * 협의회 현황 : 일본(동경·오사카), 중국(상해·북경), 미국(뉴욕·LA), 홍콩, 네덜란드 등
- 미국·EU 등 동등성협정 체결국 및 수출 유망국에 상주하는 공관·공기업(aT, kotra 등) 등과 연계, 유기식품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 농관원은 동등성협정 진행 중인 캐나다 kotra와 협조하여 캐나다 수출입 절차 안내, 수출전략 제공 및 수출 가능품목 발굴 등의 협의 진행 중
- 해외 유기식품 인증 취득비용(2천만원 내외) 및 샘플통관 운송비(월 1백만원) 지원 등을 통한 중견·영세업체의 유기 수출 확대 지원

◇ 유통·소비 관련 통계정비를 통한 체계적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사 시스템 구축

- 농가의 출하처, 판매물량 조사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정책 자료로 활용(인증기관에서 매년 조사)
- 친환경농산물 유통비용 또는 유통경로는 '농산물유통실태 조사' (유통정책과, aT)*에 분야 포함

<농산물유통실태조사 개요>

- ▶ (목적) 주요 농산물의 유통실태 및 비용을 조사·분석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수립과 유통개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 ▶ (품목) 42개 품목(매년 조사 24품목, 격년조사 18품목)
- ▶ (방법) 품목별 성출하기 및 저장시기에 주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경로 중 ①출하단계 ②도매단계 ③소비단계별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조사
- ▶ (조사내용) 직접비(수확·포장작업비, 운송비, 수수료 등), 간접비(점포유지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윤 등

- 소비지 유통실태(매장수, 매장별 매출액 등)는 자조금 등을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매년 조사

□ 농가 및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 aT 가격조사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출하 정보 농가 접근성 확대
 - * (현행) 소매단계 28개 품목 → (확대) 소매+도매단계, 특용작물 분야 확대
- 친환경농산물 구매가이드 제작·배포 등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확대하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홍보* 강화
 - * (예시)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미래세대 교육교재 제작(예 : 초등 1~2학년용 '무당벌레가 농사를 지어요') 및 체험활동 강화 등
- 카카오스토리, 국가인증농식품블로그(안심밥상)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구매 관련 콘텐츠 제작·배포

3. 생산기반 확충

가 생산단지 · 지구 조성 내실화

- ◇ 신규지구 지원조건 · 절차 개편을 통해 성과창출 유도
- ◇ 기 지원된 단지 · 지구의 내실화(인증면적 확대) 중점 추진
 - * 지구 · 단지 내 유기 · 무농약 면적 : ('14) 30% → ('17) 42 → ('20) 70

(1) 신규지구 지원체계 개선

-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내용 · 방식 재설정
 -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품목에 따른 차등 지원책 마련
 - 실현 가능한 면적 중심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면적 평가지표* (5점)를 폐지하여 실천지역의 집단화 유도
 - * (50ha 이상) 5점, (40~50) 4, (30~40) 3, (20~30) 2, (10~20) 1
 - 품목특성에 따라 최소 제한면적 및 지원시설 · 자재 등을 세분화
 - * (현행) 10ha/10호 이상(곡류 50ha, 원예 · 과수 10ha 이상시 우선선정) → (개선) 곡류 : 30ha/15호 이상, 과수 · 채소 : 10/10 등(예시)
 - 지명도 높은 지역 특화품목(원예 · 특용작물 등)의 유기농 생산 전문 지구로 시범 육성(3~4개소 내외)
 - 사업자 역량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 컨설팅 · 브랜드 개발 등의 S/W 사업비를 현행 10%에서 30%까지 확대

□ 사업선정 절차·방식 강화

- 사업대상 선정 심사절차 개편 및 지원조건 강화
 - 신규·인센티브사업 대상자 선정시 **3단계 평가제**를 도입하고, **유기농업지원단(19명)**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 객관성·신뢰성 제고
 - * (기존) 전문가 서면평가 → (개선) ①전문가 서면평가, ②현장평가, ③공개발표
- 사전 사업준비가 충실한 사업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개편
 -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일정부분(예: 10%) **친환경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우선 지원
 - 지구내 농업인 **호응도 평가비중(5점→10)**을 확대하여 출하약정 비중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비중에 따라 차등화
 - 들녘 경영체·APC 등 **조직화된 사업주체** 및 이들과 연계된 사업주체가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개편(개보수 비용 지원)

(2) 기존단지 내실화

□ 단지·지구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지원 강화

- 단지운영 내실화를 위한 **광역단지 지원협의체 구성 의무화**
 - 단지내 친환경농업 이행률 제고 및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관리단계별 책임자급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전방안 협의·조정
 - * 전국단위(단지 책임자급), 도단위(도단위 관계자), 시군단위(광역단지별)
-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지자체를 통해 단지·지구내 **인증면적 확대계획을 수립·이행토록**하고, **연 2회 이상 이행상황 점검**
 - 평가 결과 우수 광역단지는 인센티브(취급물량 확대로 부족한 생산·유통·가공시설 확충 등) 지원
- 사업성과가 부진한 **광역단지의 해당 시군은 3년간 지원 배제**
 - *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 시군에 3년간 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나 광역단지 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도 신규 지구 선정 배제

□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집단화된 들녘, 격리된 농지구역 등을 권역화하여 **단지·지구 구역 재정비**

○ **(단지)** 사업주체의 역량, 지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제 친환경농업이 실현 가능한 범위로 **사업구역 축소·조정**

* 전국 들녘(2,832개소) 중 500ha 이상은 4.5%(128개소)에 불과하나, 기존단지 평균면적은 1,601ha로 사업구역이 방대하여 성과창출이 어려운 구조

○ **(지구)** 지리적 근접성(읍면단위), 사업주체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기존 지구(5개소 이내)를 통합·확대 유도**

○ 재조정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필요한 **교육 및 시설·장비 추가지원**을 통해 사업 내실화 유도

- 친환경지구사업을 통해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추가 지원하고, 교육·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

□ **인센티브 사업을 개편·확대하여 기존단지 내실화 유도**

* 그간 1,358개 읍면 중 1,141개(84%) 지구를 기선정, 신규 수요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방향을 조성 단지·지구 내실화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 확대 필요

○ 단지에만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을 지구까지 확대**하고 **단지의 인센티브 사업 규모도 확대**

* (현행) 광역단지 한정(20억) → (개선) 단지(20억범위) 지구(10억범위)

○ 지원대상을 유통·가공시설 확충·개보수에서 교육·컨설팅 등 **S/W까지 확대**하여 사업 내실화 유도

* (현행) 생산·유통·가공시설 확충 및 개보수(S/W는 지자체 자체지원) → (개선) 생산·유통·가공시설 확충 및 교육·컨설팅·마케팅(S/W), 6차산업화 등

○ 친환경지구의 **6차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 시설·장비 개편**

-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 설치도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지구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도

- 공동출자·참여하는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산업화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과 연계,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체험 등 시설 및 S/W 지원

□ 친환경단지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강화

- 사업주체는 단지 친환경농업을 선도할 **현장리더**를 선정하여 정부·지자체 주관의 **교육훈련 대상자**로 추천하고, 자체 **교육프로그램**(조합원 교육,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단지 역량 강화
 - * (현장리더) 단지별 선도리더 선정, 공공기관 교육 수료 → 조합원 교육, 설명회 등
- 단지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역별 현장리더(40명)**로 육성 및 재배 기술 교육(2천명), 생산관리자 지정 등으로 단지내 인증면적 확대 지원
- **관련사업**(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활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별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R&D 지원체계** 구축

□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단지·지구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지역으로 전환

- 일정면적 이상(예 : 30%)은 **유기·무농약**으로 재배하고, 나머지 면적은 정부·지자체-농가 협약을 통해 **환경보전활동을 이행**토록 개편
-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기존 단지·지구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으로 전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S/W 지원
 - 농업환경변동조사·토양검정사업 등과 연계, 단지·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상**을 점검하는 방안 검토
-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 만족도, 생물다양성·수질지표 등 **환경변화상**을 조사·검증하여 **사업성 평가 후 전국으로 확산**

[3]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 조성·확산

□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 주거지와 떨어져 있고 차단방역이 용이한 유휴지 등을 활용한 축산 농가 단지화 유도 및 인센티브 지원
- 시범사업('14~'17, 1개소)을 통해 경제성, 방역여건 및 환경영향 등 국내 적용 가능성 검증·평가한 후 본사업 추진여부 결정
 - * 경기 화성시 화옹간척지 에코팜랜드 내 한우번식우단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돈분처리장) 조성 추진 중('15년 내 기반공사 착공 예정)
- 친환경축산 단지화에 참여하는 축산농가 대상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 강구
 - * 경축순환농업과의 광역단지화 유인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단지와 축산단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 마련

- 동물복지 및 친환경적 사육, 조사료 자급 확대 등을 위하여 국유림 등을 활용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추진
 - 시범농장에 대해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한국형 모델을 정립 후 확산 추진(시범사업, '14~'16)
 - * 시범농장 선정 : ('14) 8개소 → ('15) 22 → ('16) 40 → ('20) 100
 - 기존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산지생태축산 진입 시 친환경축산 직불금 가산(20% 증액), 정책사업 패키지 지원 등 농림사업 연계* 추진
 - * (농식품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농진청) 농촌교육농장 지정사업 등
- 산지생태축산 모델 및 산지초지 조성·이용기술 개발 R&D 추진
 - 밤·대추나무, 고로쇠 조림지 등 활용 산지양계 모델개발 연구('14~)
 - 산지생태축산 가축사육, 초지조성 및 관리 기술 개발('14~'18)

[4]**친환경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확충****□ 친환경 임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 조성**

○ 친환경 임산물 소재를 생산 중심의 구조에서 가공식품 개발 구조로 전환하고, 지원 확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음료, 건강식품, 각종 소득작물(79종)

○ 산간 청정지역 약성이 풍부한 전통 약용식물 생산을 위한 특화단지 육성 및 생산·가공·유통 등 과정을 융·복합화하여 6차산업화단지 조성

* ('15~'17) 임산버섯 클러스터, 황칠산업화단지, 산양삼산업화단지 등 4개소

○ 임산물생산단지 및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으로 임산물의 생산·수집·가공·유통체계 구축으로 가공·판매 기능 및 가격 경쟁력 확보

*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지원으로 대량 운송기반 마련 및 물류비 절감

□ 임산물 생산·유통과정의 투명성·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산양삼 등 재배이력시스템 구축 운영 및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 제도 도입을 통한 임산물의 안전성 강화

○ 원산지 표시 및 불량임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한국임업진흥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등)과 협업 추진

○ 산양삼 종자공급단지 조성을 통해 우수한 품종의 종자·종묘 생산 보급으로 산업화 경쟁력 확보

○ 임산물 생산임지의 제초제, 화학비료 사용 억제로 산성화방지를 통한 고품질·생산성 증대 도모

-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등 지원으로 친환경임산물재배지 관리

* 유기질 비료 등 토양개량(누적) : ('15) 523ha → ('17) 1,960 → ('19) 3,006

나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 잔류농약 검사 체계 개선 및 검사비용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이 높은 검사비용 절감 유도

* 생산단계 검사물량 : ('15) 11,500건(인증기관 4천건) → ('16) 9,000

◇ 재해보험 도입 및 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1) 검사비용 절감

□ 인증농산물 조사 체계 개선 및 검사정보 공유시스템 마련

○ 농관원·인증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인증농산물 생산과정 검사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검사 최소화

- 인증심사단계의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기관별로 실시하되, 사후관리과정의 농약검사는 정보공유를 통해 농가 중복검사 차단

* 현행 농관원·인증기관의 수확기 안전성조사 대상농가 중복으로 문제제기

- 농관원이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검사대상 농가정보를 사전 제출받아 안전성조사 계획을 통합 관리하여 농약검사 물량 감축

* 생산단계 검사물량 : ('15) 11,500건(인증기관 4천건) → ('16) 9,000

○ 각 기관별 인증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는 농관원 Safe Q 홈페이지에 등록·공유하여 불요한 중복검사 차단

- 지자체, 인증농가와 거래하는 유통업체 등도 시스템에 등록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중복 검사 최소화

* 농가의 정보공개 동의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공유(신청서식 개선)

□ GAP 안전성조사와 연계한 친환경 인증심사로 농가부담 완화

○ '16년부터 GAP 안전성조사 예산(연간 60억, 국고·지방비 각50%)을 활용하여 친환경 인증심사를 위한 토양·용수 검사비용 지원

- 안전성조사 지원대상에 **친환경 인증 신청필지를 포함**하여 분석 비용 부담에 따른 농업인 부담 해소
 - * 검사·시험비용(평균) : (잔류농약검사비) 220천원, (토양중금속) 114, (수질검사) 279
- 중장기적으로 친환경농업 점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토양·용수 등에 대한 **검사·분석 축소·폐지 검토**
- 다만, 식품안전에 민감한 소비자의 혼란이 없도록 개선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회에 소비자단체 포함하고, 사전홍보로 사회적 공감 유도

(2) 친환경에 특화된 재해보험 도입

- (현황) 벼에 한정하여 친환경의 표준가격·생산량을 반영한 재해보험 상품 판매 중
- 표준가격은 높게 적용하였으나(유기 120%, 무농약 110), 표준수확량은 낮게 적용 중(유기 90%, 무농약 88)

구분	평균수확량	표준가격	가입금액 변동
무농약	90%	110%	99%
유기농	88%	120%	106%

- 친환경 실천의 경우 보험료 할증률 30%가 적용되어 일반재배에 비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높은 상황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생산량을 반영한 재해보험 체계 마련
- (벼) 친환경 재배 벼 수매가격 조사를 통해 **적정 표준가격 재산정**
 - 현행 표준가격은 '13년 산출된 가격임을 감안, 산지주체-소비자 시장 교섭가격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거쳐 표준가격 재산정

- (기타품목) 현행 벼에만 한정되어 있는 재해보험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1단계) 인증기관을 활용, 농가 대상으로 지역별 주요 품목에 대한 출하가격·생산량 조사 실시
 - (2단계) 관련기관 실무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재해보험 적용 품목 단계적 확보 방안 마련
- * 재해보험 상품 마련을 위해서는 친환경재배에 따른 수확량, 거래가격 및 자연재해 발생빈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다만, 표준가격 상승폭보다 평균수확량 감소폭이 더 클 경우 보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품목 확대여부 결정

(3) 유기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 (현황)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02) 이후 농업용 기자재 52개 품목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용 중
 - 기자재 52개 품목(농업용 21, 축산용 31) 중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유기농자재는 누락되어 있어 형평성 저해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농자재 추가 추진(15개 품목)

1. 규산염, 2. 고삼, 3. 부식산류, 4. 해조류추출, 5. 님, 6. 데리스, 7. 해조류, 8. 제충국, 9. 맥반석, 10. 벤토나이트류, 11. 황, 12. 구리염, 13. 파리핀오일, 14. 담배잎차, 15. 버섯추출물

*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품목 15종의 시장규모는 428억원(추정치)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 개정 추진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추가 15개 품목 중 감면세액이 큰 5개 품목 (규산염, 고삼, 부식산류, 해조류추출물, 님)부터 단계별로 확대 추진 검토

참고

검토품목 시장규모 및 연간 세수감면액(추정)

□ 세수감면 필요 유기농자재 및 감면세액

	유기농업자재명	연간 필요량*	시장규모** (억원)	감면세액 (억원)
1	규산염(천연광물)	15천원 × 40만봉(500ml)	60	6
2	고삼(천연식물추출물)	2만원 × 25만병(500ml)	50	5
3	부식산류(풀빅, 피트모스)	2만원 × 25만봉(500ml)	50	5
4	해조류추출물(식물추출물)	3만원 × 15만포(1ℓ)	45	4.5
5	넙(천연식물추출물)	2만원 × 20만병(300ml)	40	4
6	데리스(천연식물추출물)	3만원 × 10만병(300ml)	30	3
7	해조류(식물추출물)	3만원 × 10만포(1ℓ)	30	3
8	제충국(자가제조천연식물추출물)	5만원 × 4만병(200ml)	20	2
9	맥반석(맥섭석)	2만원 × 10만봉(500ml)	20	2
10	벤토나이트류(제오라이트)	2만원 × 10만봉(500ml)	20	2
11	황(유황제)	15천원 × 10만병(500ml)	15	1.5
12	구리염(수산화동)	3만원 × 5만병(500ml)	15	1.5
13	파라핀오일	13천원 × 10만병(500ml)	13	1.3
14	담배잎차(천연식물추출물)	2만원 × 5만병(500ml)	10	1
15	버섯추출물(식물추출물)	1만원 × 10만포	10	1
	계		428	42.8

* (산출근거)

- 1포(병)당 가격: 농협중앙회 계통 계약자재 종류별 평균가격 적용
- 연간 필요량: 농협중앙회 계통 계약물량과 농협중앙회 계통 계약 47개 업체 종류별 판매량 조사(개별문의) 및 친환경농업단체 회원사 공급량, 지자체 지원공급량 등 종합한 평균치 적용

** 산출근거 : 농협 계통 계약 유기농업자재 종류별 규모, 유기농업자재 주요 47개 업체 개별 매출액 조사 및 유기농업자재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연2회) 종류별 시장규모 취합한 추정치 산출

□ 조사방법

- 유기농업자재 종류 선정: 2014 농협중앙회 유기농업자재 공급지침서 및 유기농업자재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미적용 허용물질 종류 선정
- 농협중앙회 계통 계약 신청량 + 판매예상량, 친환경농업단체 회원사 공급량 지자체 자체지원 공급량 등 종합 추정

[4]

토양·병해충 정보제공 강화

□ 농진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을 활용하여 지역토양별
친환경재배 적합작물 정보 제공

○ 친환경농업 희망농가 등이 토양특성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하여
영농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양정보 제공

○ 토양특성을 고려한 퇴비투입량 등 토양관리법을 안내하고, 친환경
농지를 전자지도로 구현하여 정책사업(생산기반구축사업 등)에 활용

* 관행농지와 격리여부, 인근 친환경농지와 거리 등을 검토하여 집단화 가능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을 활용, 친환경 병해충방제 등 재배방법
및 실시간 전문가 진단처방서비스 제공

* 병해충 진단, 발생정보 및 사용가능 농약 정보 서비스 제공

○ (현황) 농진청은 기후변화 등에 의한 병해충 발생 위험증가에
대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예측·진단시스템 구축(12)

- 병해충 자가진단 및 현장 진단의뢰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어플리
케이션도 개발하였으나, 관행농법에 따른 병해충방제 방법만 제공 중

○ 시스템 개선을 통해 품목별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병해충 방제법을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인의 병해충 진단의뢰에도 신속 대응(농진청)

○ 정부 및 지자체(기술센터 등) 농업인 교육훈련 강의시간에 병해충
진단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활용법을 안내하고 이용 확대

* '15년 7개 품목(벼, 배추, 상추, 고추, 당근, 토마토, 딸기)을 등록하고, 연차적 확대

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 ◇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지원
- ◇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조사·검증을 통한 지속 직불제 도입

(1) 친환경 직불금 지원 강화

- 집단화된 농지구역(56ha 이상 들녘 2,832개소)의 친환경 전환을 유인하기 위해 직불제 지급 상한면적 확대 추진
 - (현황) 경영체 형태(농가·법인)와 무관하게 직불제 지급상한을 5ha로 제한하고 있고, 5ha 이상 법인은 전체의 0.8%, 면적은 27.2% 수준
 - * 5ha 이상 경영체는 2,097개소(농가 2,081, 법인 16)이고, 5ha 이상 경영체는 전체 면적의 27.2%인 19천ha 보유(논 10, 밭 4, 임야 5/개인 18.7, 법인 0.3)
 - (개선) 경영체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지급 상한을 제한(개인 30ha, 법인 50)하고 논·밭에 따른 지급상한 면적의 개별기준도 마련
 - (현행) 5ha → (개선) 개인 30, 법인 50(논: 개인 30, 법인 50 / 밭: 개인 5, 법인 10)
 - ** 유사사례 : 쌀(농가 30ha, 법인 50), 밭(농가 4, 법인 10)
 - 추가 확대 면적은 3,272ha로 예상되나 신규면적, 지급회수 초과 등 직불금 지급제외 조건 고려시 소요예산은 5억원 내외로 추정
- 유기·무농약 실천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품목군별 재배난이도 및 소득감소분 등을 반영, 직불제 지급단가 조정 추진
 - 현행 직불금 지급단가는 '12년 조사된 생산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유기·무농약 농가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에는 한계
 - * 지급단가 : (논)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밭) 유기 1,200, 무농약 1,000
 - 곡류 등 논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감소분 및 재배난이도가 높은 과수 등 밭작물에 친환경·밭직불 중복지급(25~40만원/ha) 허용

- 밭직불금을 '16년부터 40만원/ha로 일원화하고, 연차적으로 '20년까지 60만원/ha(매년 5만원 상향)으로 상향조정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 및 경영비 증가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차등화·상향하는 방안 검토

- 실천유형별(유기·무농약), 품목군별(쌀, 배추, 사과, 엽채 등), 연차별(1·3·5·7·9·11년차)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소득조사 실시('16.상)

- 현행 논·밭 구분을 재배난이도 및 소득감소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논·밭·과수 3개 품목군으로 분류 추진

◇ 해외사례 : 독일·스위스 유기직불금 품목구분 및 단가

○ 독일 : (과수 등 다년생 작물) 950유로/ha, (채소) 590, (경작지·초지) 210

○ 스위스 : (과일·채소·와인포도 등) 1,350CHF/ha, (개활지) 950, (일반 농경지) 200

□ 기존 저농약 농가의 무농약 이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직불금 지급 추진

○ (현황) 저농약 인증 농가가 직불금을 3회 수령한 경우 무농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추가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지 못한 상황

- 특히, 무농약 이상 인증전환이 어려운 저농약 과수농가의 상위 인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14년말 기준 주요 저농약 품목은 과실류(75%), 채소(16), 곡류(7) 등

○ (개선) 저농약 직불금 수령 농가가 무농약 인증을 받을 경우 직불금을 추가 지급하여 저농약 농가의 무농약 이상 전환 유도

- 수령대상 : 그간 저농약 인증을 받고 직불금을 수령했던 농가* 중 무농약으로 전환한 농가

* 현행 저농약 인증 유지농가 및 저농약 인증 갱신을 포기한 농가

- 수령금액 : 무농약 직불금 전액 또는 무농약-저농약 직불금 차액

□ 직불금 추가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 추정·예산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직불금을 개편하여 농가 소득안정 지원

(2)

친환경 지속 직불제 도입

□ **친환경 직불제 지급기간 제한을 폐지**를 추진하여 공익적 기능이 높은 친환경농업의 지속실천 유도하는 방안 검토

○ **유기농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5 → 8년)**을 통한 유기농 실천 유도('15)

* (기존) 5년 지급 → (개선) 5년 지급 + 3년 추가(단, 지급단가는 1/2로 인하)

○ **현행 지급기간 연장(5년→8, 단가는 1/2)에 따른 효과 분석**

-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유기농 실천면적 변화 및 소득변화, 토양분석 등을 통해 유가지속 직불금 도입의 타당성 검토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환경보전효과 검증**을 통해 친환경 실천 농가의 지속 직불금 지원 정당성 확보

- (가칭)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 구성·운영을 통한 유기·무농약 농업의 환경보전효과 세부 조사·검증 뒷받침('16~)

◇ (가칭)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의 환경보전효과 검증계획(안)

- 토양·수질의 곤충, 수생물, 초본류 식물, 조류, 미생물 등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품목군별 지표 선정
- 토양·수질 등의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효과 조사·분석
- 품목별 국내 친환경농가와 관행농가의 농업환경지표 비교·분석
- 환경재 생산·확산방안 모색 및 환류·관리체계 구축
- 선정된 검증 지표들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

- 기 추진 중인 연구용역(농진청, ~'16)을 활용, 관행농업과 비교한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 조사·분석

* 대체법, 일반국민 대상 CVM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 조사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 중심 육성을 위해 **유기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무농약은 사업성과 분석 후 추진여부 결정 추진

- 무농약은 농가 소득조사 및 환경보전효과 검증 등을 거쳐 **현행 지급기한(3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활동 유도 및 최적 양분투입체계 마련**

- 작업장 주변 자재·시설의 청결관리 등 **위생관련사항을 신설하여 농업·농촌 환경개선활동 기반 조성('16)**
- 유기·무농약에 적합한 **비료사용처방서 개발 및 토양 비옥도 개선 방법 연구** 등을 통한 **적정 시비체계 마련**(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 과제)
 - * **현행 비료사용처방서에는 유기·무농약 농업에 사용되는 유기질 비료·녹비작물 등의 적정 시비량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

(3) 친환경 축산 직불제 개선

□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의 소득감소 및 경영비 증가분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지원 등 **직불제 개편 추진**

* ('15) 연구용역 → ('16) 제도개선 및 '17년 예산 반영 추진

- '09년 직불제 도입 이후 동결된 지급단가를 **축종별로 실제 소득 감소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상향 추진**

* 유기직불 인상 예시 : (한우) 170,000원 → 245,000, (돼지) 16,000 → 20,500, (육계) 200 → 370, (오리) 400 → 470 등

- 친환경축산직불 지급대상 **축종 확대***, **유기축산에 대한 지속직불제 도입 추진**(~'16년 연구용역, '17년 도입 목표)

* 번식우를 대상에 추가하여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입식 유도 검토

□ **동물복지 축산물의 직불금 지원근거 및 절차·방법 제도화**

-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보전

* 인증대상 축종 : ('12) 산란계 → ('13) 돼지 → ('14) 육계 → ('16. 1) 한우·육우·젓소·염소 → ('16.상) 오리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직불제 시행근거 마련

* 지급기한은 5년으로 하고, 시설투자 수준에 따라 비용보상 차등지원(시설투자 최소/최대(원) : 양돈(1마리) 1,793/3,965, 산란계(계란 100개) 61/313, 육계(10수) 831/1,436)

- 산지생태축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산지생태축산으로 진입할 경우 직불금 가산(20%) 지원

(4) 친환경 직불제 관리업무 농관원 이관

- (현황) 농관원은 인증의 전문성·책임성을 갖추고 있으며, 밭직불 등 타 직불사업도 집행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확보

* ('09~) 친환경축산직불, ('12~) 밭·경관, ('13~) 조건불리, ('16~) 쌀

- 지자체는 인증업무 전문성 부족으로 사실여부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

- 친환경 인증업무 전담기관인 농관원에 직불금 관리업무 이관

- 농관원의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에 완전 이양하는 '17년부터 친환경 직불금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

- (농관원) 사업자 확정, 예산집행 등 종합적 사업관리 및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업무 담당
- (인증기관) 사업신청·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정부는 관리비용 일부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친환경 직불제 관리업무 이관을 위해 시행령 개정('17년)

- 친환경 인증정보시스템과 Agrix 시스템을 연동하여 직불금 신청의 편리성 제고 및 원활한 업무이행 지원

* 현재 인증신청은 친환경 인증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직불금 지급 신청은 Agrix 시스템에서 관리되어 인증농가 중 일부가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지 못한 실정

◇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 및 농가 보급체계 구축 강화

* '20년까지 10개 주요 품목 유기·무농약 생산모델 개발·보급

◇ 친환경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신규인력 유입 및 전문성 강화

(1)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 주요 품목 공통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가칭)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 구성·운영 추진

-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은 학계·친환경농업연구센터·생산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
- 연구방식은 농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 분석 실시
 -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영농단계별 농법·방제기술들을 정리·집대성하고 효과검증 등을 거쳐 현장에 배포

□ 한국형 친환경(유기·무농약) 생산모델 개발 계획(안)

○ 주요 품목별 생산모델 개발

- 국내 선진농가, 국내외 주요 친환경재배 매뉴얼, 해외사례 수집
 - * 주요 재배품목(벼, 사과, 배, 딸기, 감귤, 배추, 고추, 상추, 감자, 고구마, 토마토, 콩, 밀, 호박, 무, 인삼 등 15개 내외) 등에서 10개 선정
- 국내 선진농가 사례의 과학적 근거와 성립조건 해명 : 국내 우수 친환경 농가를 선정·발굴하여 경제성·성공원인 분석
- 기 개발된 병해충·잡초 관련 기초기술 수집·분석(필요시 농진청 참여)

- 성공사례를 분석·종합하여 경제성이 고려된 지역·품목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 생산모델 구축(품목 예시 : 벼, 사과, 배, 고추, 토마토 등 10개 품목)
- 개발된 생산모델에 대한 표준 재배기술 지도서 작성
- 개발된 생산모델은 참여농가에 시험 적용하여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품목별 5곳 이상)

○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위한 토양 관리 모델 개발

- 논·밭에서의 유기자재의 N, P, K 함량 및 시계열 분해특성 조사·분석
- 시비처방에 있어 유기물(부산물비료 등)의 시비량 계산법 마련 : 토양 이화학적 특성, 질소함량, C/N비, 지온 등을 감안
- 부산물 비료, 윤작, 녹비 등을 이용한 토양생물상과 이화학적성을 포함하는 유기재배 토양 비옥도 기준 설정 및 개선방법 마련
- 지역별·토양별 특성에 맞는 시비처방 기준 마련

○ 유기농업에 적합한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체계 구축

- 자가 채종이 가능한 품목·품종 선정 및 종자 생산기술 보급
- 미국·EU 등에서 우수 유기종자를 도입하여 각 도 농업기술원의 적응실험을 통한 국내 적합 품종 선발·보급
 - * 선발된 품종의 원종을 재도입하여 유기종자 생산자에게 보급하여 증식
- 유기종자의 생물제제 등을 이용한 소독법 개발·보급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 검증 및 증진방안 도출

- 토양·수질의 곤충, 수생물, 초본류 식물, 조류, 미생물 등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품목군별 지표 선정
- 토양·수질 등의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효과 조사·분석

- 품목별 국내 친환경농가와 관행농가의 농업환경지표 비교·분석
- 환경재 생산·확산방안 모색 및 환류·관리체계 구축
- 선정된 검증 지표들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

○ 과수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및 병해충 관리 자재 개발

- 농업인·생산자단체, 학계, 정부 관계자 참여 워크숍(연 1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

(2) 친환경 기술 지원·보급

- 연구에 참여한 연구센터·생산자단체 및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 공통재배기술 교육·컨설팅 및 현장보급 강화

- 공통재배기술 참여 현장 농업인을 친환경농업인 대상 농정원·농업기술센터 교육 등에 교사로 활용

- ‘친환경농업 우수농가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품목별 우수농가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우수농가 재배기술, 성공 비결을 책자로 발간·전파하고, 농업인은 ‘명인’으로 선정하여 농정원, 기술센터 등 친환경 교육시 강사 활용

- 현장에서 실증된 우수 재배기술이 여러 농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농장의 현장교육장 활용 등 다양한 교육 지원방안 마련

*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내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등 검토

- 저비용·고효율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위한 품목별 재배기술 표준화 및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체계 마련

- 기존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자재의 자가제조 및 적정사용 방법 등 지속 교육하고,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사업 편성 검토

(3)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농업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교육 및 재배기술 현장컨설팅 강화로 친환경재배 전문성을 갖춘 인력 육성
 - (농정원 공모교육) 현장 교육수요에 맞춰 안정적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상설화 및 농가 수준별 교육 추진
 - 친환경 수준별(초·중·고급) 교육과정에 품목군별(곡류·원예·과수류) 재배기술과정을 마련하고, 농가 수요에 맞춰 편성
 - 선진기술 개발, 인증제도 및 실천기준 변경시 신속한 현장전파가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과정을 편성, 대처
 - 목표 : ('15) 11개과정/2,685명/500백만원 → ('20) 15/4,000/700
 - (마이스터대학) 친환경농업 고급기술, 지식과 함께 마케팅 등 경영 능력까지 갖춘 지역 핵심리더 육성
 - 지자체 등과 협력, 유기농 마이스터대학(2년) 과정 및 친환경 가공 식품 관련 전문인력 과정 개설 등 추진
 - 목표 : ('15) 11개 대학/11개 품목과정/247명 → ('20) 15/17/340
- 친환경농업 교육과정 다각화로 신규 친환경농업인 참여 유도
 - (한농대) 주요 품목별 교육과정에 친환경 농업 교육을 확대시켜 청년층의 친환경농업 참여 유도
 - 친환경농업 교육 실시 학과를 확대*하고, 친환경 선도농업인 교육 및 개발된 재배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실효성 제고
 - * 11개 학과 중 식량작물·채소학과 등 6개 학과에 포함된 친환경농업 교육 과정(2~8학점)을 8개까지 확대(특용작물·버섯)
 - (귀농교육)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화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

- (관심단계) 귀농귀촌종합센터 등에서 친환경농업 관련 시책 안내
 - (실행단계) 귀농인의 집·창업지원센터 등을 활용,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착단계) 친환경 선도농업인 농장 현장실습(5개월)을 통해 귀농인의 친환경 재배기술 습득 지원
- (농진청) 본청 교육과정에 친환경농업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수료한 연구사·지도사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
 - 개발된 재배매뉴얼(7품목)을 현장교육교재로 활용하여 현장 지도
 - 목표 : ('15) - → ('20) 4개 과정(친환경일반, 수준별 재배기술)
 - * 품목은 연도별 수요·기술개발 추이에 따라 조정하며 연차별 확대
 - (aT 유통교육원) 친환경 전문 유통인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
 - 목표 : ('15) 일반교육 1개 과정 → ('20) 일반교육 3, 전문교육 2
- 친환경농업인의 영농애로 해소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 거점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육성하는 방안 검토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 교육훈련* 수행기관으로 거점 지원센터를 거점별로 설치·지정
 - * 환경농업 가치, 친환경농업 인증기준, 재배기술 이론·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농업기술센터, 기관·단체 등을 지정하고, 지정 기관은 자체 교육·홍보, 체험·실습, 기술개발·보급 등의 역할 담당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작업을 통해 지정근거·기준 등 법적근거 마련
 - 선정된 지원센터·양성기관의 육성·지원체계 마련
 - 지정기관에는 품목별 친환경농업 교육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선도농업인 실습교육 등을 실시
 - 지정 지원센터 및 양성기관의 우수 사업계획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반영

4.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가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정비

- ◇ 허용물질 선정절차 강화 및 안전성·필요성 재검증 추진
 - * 연간 15~20종 검증을 통해 현행 허용물질(90종) 전면 재검증
- ◇ 유기농업자재 관리시스템(공시, 품질인증)을 통합하고, 품질관리 및 농가 정보제공 강화

(1) 허용물질 선정절차 개선

□ 허용물질 선정기준은 강화하되, 절차는 간소화

- 현행 허용물질 선정기준을 재점검하고, 과학적 실증·이론에 근거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
 - 현행 허용물질 선정기준* 중 소비자의 저항·반대가 없을 것 등의 추상적 내용은 국제기준·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 대안 마련

◇ **현행 선정기준** : ①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적합, ②천연 유래하거나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 ③환경에 대하여 악영향 없을 것, ④사람 건강 및 식품안전 증진, ⑤품질개선 및 품질보존에 도움, ⑥소비자의 저항·반대 없을 것, ⑦유전자변형 기술 미적용 ⑧방사선 처리하지 않을 것

- 허용물질 선정위원회의 전문가 기초평가를 의무화하여 신규 허용물질의 과학적·사회적 필요성 검토

* 현재는 농진청·농관원의 기초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는 체계임

○ 농업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 (현행) 선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시행규칙 개정 후 사용 가능

* 절차 : 1차 전문가 위원회(농진청·농관원) → 2차 전문가 위원회(농식품부) → 시행규칙 개정 공포(확정 시행)

- (개선) 심의위원 · 역할이 비슷한 1·2차 심의회를 통합하고, 농가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전환('16)

* 개선절차 : 전문가위원회(농식품부 주관, 농진청 · 농관원 협조) → 고시개정

- 허용물질 선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정위원회 논의결과는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및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

□ 허용물질 안전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시스템 마련

- 현행 허용물질(90종)의 안전성 · 필요성에 대한 검증 강화('17~'21)

- 연차별 허용물질 검증계획(연간 15~20종)을 수립하고, 적합성 검증
- 국제기준 · 주요 선진국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허용물질 선정기준 중심으로 점검

- 국내에서만 사용 중인 허용물질은 선정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실험 등을 통한 독성 · 인체 유해성 등 안전성 점검

- 허용물질 선정위원회에서 국내외 사례 검토, 연구용역,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고, 불필요한 허용물질은 일괄 삭제

- 허용물질 일물제를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각 허용물질의 사용 필요성, 환경 · 인체 위해성 등을 점검

- 허용물질 사용기한을 설정(5년)하고, 해당 허용물질의 필요성 · 사용 불가피성 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

* 미국은 허용물질을 5년마다 재평가하여 필요성 ·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허용물질 2종(스트렙토마이신 · 테트라시클린) 삭제('15)

- 허용물질 전문가 심의회 개최를 의무화(연 2회)하여 정기적으로 허용물질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허용물질별 재평가결과는 유기농업자재 심사기준에도 연계

* 유기농업자재 제품별 제출하는 안전성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방안 검토

□ **농가 자가 제조·사용 허용물질의 안전사용지침 설정**

- 각 허용물질별 효과, 사용방법, 주의사항, 안전성 등에 대한 자가 제조 허용물질 지침 설정
 - 바닷물 등 농가의 자가제조·사용 물질을 중심으로 하되, 국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보급
- 작성된 안전사용지침은 해설집으로 제작하여 친환경농업인 교육 과정에 활용·배포('17)
- 추진계획(안) : ('17) 10종 → ('19) 30종 → ('21) 50종

(2)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 **공시·품질인증 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현실성 있는 기준 마련**

◇ **현행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 공시 : 유기농업에 사용가능 여부만을 검토(명칭, 주성분명, 함량, 사용방법)
- 품질인증 : 유기농업에 사용가능 여부와 함께 효능 검토(효과, 효능보증)

○ **(1단계) 품질인증 신청자격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품질인증 활성화 유도**

- 공시자재의 품질인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자격 완화
 - * (현행) 공시 후 3년 경과시 신청 가능 → (개선) 공시 후 즉시
- 품질인증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 부여

○ **(2단계) 공시·품질인증을 유기농업자재 인정제로 통합·개편**

- 유기농업자재 인정제로 통합하되 대조약제 대비 통계적 유의성 평가 등을 통해 효능·효과를 검증하고 표시
 - * 공시제도는 사용가능만을 표시하고 효능·효과는 보증하지 않아 농업인 불만 제기

구 분	사용 가능여부	유해성분 검사	효능·효과
공시(公示)	확인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등	미확인
인정(認定)	확인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등	확인
인증(認證)	확인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등	보증

- 현행 품질인증 기준 중 과도한 사항은 완화·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인정기준 마련
 - * 품질인증의 효능·효과 기준(증수효과 15%, 방제효과 60%)이 지나치게 높아 인증 실적이 저조(전체의 3%)하고, 작물별 효능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과다 발생
- 신규 자재는 '인정제'로 일원화하고, 기존 공시·품질인증 제품은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여 제품전환 유도(신규 공시는 제한)
- 추가 제도개선사항은 수행 중인 연구용역(~12월, 농진청) 및 업계·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개편
 - * 허용물질별 대조약제 선정, 효능·효과 검증방법, 단성분 자재 인증 등 일원화에 따른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유기농자재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16 하)
- 유기·무농약 농업인들이 제품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기농업자재 표시도형 및 세부 표시기준 마련('16)
 - 공시·품질인증 유기농자재와 일반 농자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위치·표시방법 등을 구체화
 - * 유기·무농약 농업인들이 공시·품질인증 자재 이외에 '친환경'으로 표기된 농자재를 사용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 발생
 - 현재 품질인증 제품에만 사용되고 있는 표시도형을 공시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
 - 유기농업자재 제품 표시실태 조사('16~), 업계·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표시기준 마련

◇ 세부표시기준(안)

- 표시도형 : 품질인증·공시 통합 로고 마련, 유사도형 표시금지
- 기타표시 : 문자크기, 표시위치, 유통기한, 원료함량, 사용방법 등

□ 유기농업자재 사전·사후관리 강화

- 유기농업자재 쏠제품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공시 사업자에 대한 공시유효기간(3년) 내 2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화('16)

- 점검실적 평가·분석을 거쳐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1회로 확대하여 불량 유기농업자재 제조업체 관리 강화('17~)

* 현재 인증농산물·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중

- 생산과정 조사를 강화하고(연 2회 이상), 고의적인 위반여부에 따른 처분 차별화 방안 마련

- (현행) 유해물질 혼입량,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벌

- (개선) 의도적 : 공시취소, 고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비의도적 : (1회) 해당제품 판매금지, 회수폐기, (2회) 공시취소, 고발 등

- 불량제품 회수·폐기규정을 신설, 사용농가 피해 최소화

* 불량 제품의 회수·폐기 명령 및 위반자 처벌규정 마련('15 법률 개정)

[3]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 통합

- (현황) 유기농산물 등에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에 대한 관리기관이 농진청과 농관원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

-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불량제품에 대한 신속한 농가전파가 미흡하여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한 농가 인증취소 등의 2차 피해 발생

- 사후관리강화로 불량제품이 감소하고 있으나, 국내 미등록 농약 성분 검출 등의 품질 부적합 제품('14 : 10.1%) 지속 발생

* 농진청 전담인력(2명)으로는 확대되는 자재 관리('14 : 1,237점)에 한계

- 허용물질 선정과정에서 업무 범위 불명확 및 담당기관 혼동으로 민원인 혼란 초래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

	농진청	농관원
허용물질 관리	유기농자재 생산에 필요한 물질 관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 관리
자재 공시·품질인증	공시·품질인증 총괄 운영	공시·품질인증 유통제품 사후관리
공시·품질인증 기관	지정·관리업무 총괄(3개 지정)	-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총괄(38개소)	-

-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인증품 관리와 종합적으로 대응
 - 전국적 조직체계, 잔류농약검사 등 유해물질관리 전문성,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신속한 시장격리 및 농가전달효과 등 고려 필요
 - (조직성) 전국적인 조직체계(1연구소, 9개 지원, 109개 사무소)로 농자재 사용 인증농가 및 전국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 가능
 - (신속성) 전국적인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부적합 자재 발생상황 정보를 농가·업체에 실시간 제공 가능
 - 부적합자재 발생시 농관원은 민간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민간인증기관은 각 소속농가·업체에 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농가 피해 차단
 - * 농관원은 전국 109개 지역 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가에 부적합 자재 정보 제공 가능
 - (전문성) 인증품, 용수, 토양, 농자재 등 검사전문기관으로 유해물질 등 사용금지물질 전반에 대한 분석·조사 가능
 - * 농관원은 식품·사료 품질검사, 농자재·토양·용수 등 유해물질 검사, 인증품 생산과정 조사와 연계 자체검사 또는 위탁검사 실시
 - ** 농진청은 미생물 함량 등 성분검사 및 농약·중금속·병원성 미생물 등 유해물질검사는 실용화재단에 위탁 검사 처리
 - 허용물질 사전평가, 유기농자재 시험·연구·개발 및 검증업무는 종전과 같이 농진청(농과원 유기농업과)에서 담당
 - 농관원의 인증심사업무 민간이관 시기와 연계하여 업무 통합
 - 기존 농관원 인증업무 담당자(109개 사무소)들을 인증 농식품 및 유기농자재 사후관리로 업무를 전환하여 농자재 관리 강화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의 공시·품질인증, 공시기관 지정 등 농진청장 위임업무를 농관원장으로 위임토록 개정('16~)
 - 위임규정 개정 등을 통해 농진청 인력(2명)·예산을 농관원으로 이관

참고

주요국 허용물질 관리체계

구분	CODEX	한 국	일 본	미 국
법률	유기식품생산 가공·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표준법, 지력증진법	유기식품생산법
관리기관	CODEX 집행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성	농무부(USDA)
심의기구	식품표시분과위원회	허용물질 전문가 위원회 (농촌진흥청, 농관원 운영)	기준평가 위원회	유기농 표준 위원회 (NOSB) *연 2회 공개회의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유기생산 원칙에 부합 2. 특정 용도에 필요 / 필수적 3. 제조, 사용, 제거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하거나 일조해서는 안됨 4. 사람, 동물의 건강 및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극히 낮아야 함 5. 대체물질이 질적·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에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2. 천연 유래한 것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재생 가능한 자원일 것 3. 환경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4. 사람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5. 품질개선 및 품질 보존에 도움이 될 것 6. 소비자 저항/반대가 없어야 하며 소비자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 7. 유전자변형 기술을 적용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가 아닐 것 8.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CODEX 기준에 준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합성물질 허용 기준 (원칙 허용, 예외적 비허용) -인체 또는 환경에 무해, 농작물 생산에 필수적인 것으로 천연물질로 대체 불가능 물질 -유기농업 및 취급에 적합한 물질, 독성학적 영향이 없는 합성 불활성 성분 2. 합성물질 금지기준 (원칙 불허, 예외적 허용) -인체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유기농업, 취급 및 유기생산의 목적에 부적합한 물질
평가주기	특정되지 않음. 회원국 제안에 따라 평가	특정되지 않음. 신청인 제안 또는 관리기관 판단에 따라 평가	특정되지 않음. 신청인 제안 또는 관리기관 판단에 따라 평가	청원 또는 5년 주기 재평가(일몰 재심)

나

자재 지원사업 개선

- ◇ 사업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공시·품질인증 자재 사용 확대 지원
- ◇ 녹비종자 공급체계 개편을 통한 녹비사용 확대 유도
- ◇ 유기농업자재 공급방식 전환을 통한 농가부담 절감

□ 공시·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 농가 공급 확대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 홍보 및 자부담 완화를 통한 지원확대
 -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지자체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품질인증자재 우선구매 유도
 - 사업신청기간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조정하여(전년도 11~12월) 유기자재 사용 확산 유도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함에 따라 유기자재에 대한 농가 수요 감소
- 무농약인증 농가(전환기 포함) 대상 유기농자재 주요 지원품목인 작물생육용 자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농가 교육·홍보 강화
 - * 작물생육·토양개량 유기농업자재는 유기질퇴비와 금액이 비슷

□ 녹비종자 공급체계·방식 개편

- (현황) 녹비종자 구입시 거래교섭력 제고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전담업체(NH 무역)에서 일괄 구매방식으로 시행 중
- 공급업체간 경쟁유도를 통해 고품질 녹비종자 공급을 위해 친환경 생산자단체를 공급업체로 추가 지정 필요
 - * 유사사례 : 조사료 종자 공급은 NH 무역, 생산자단체(낙농육우협회) 경쟁 체제이고, 향후 1개소를 추가 지정 예정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여건, 공급가격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녹비 공급체계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 국내 생산종자를 우선공급하고 수입대체 가능종자를 발굴하는 등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녹비종자 생산·공급체계 마련

□ **유기농업자재 공급·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유도**

- 농자재 유통단계 축소(4~5단계 → 3)를 위해 **권역별 농자재 유통센터 설립 및 농협자재센터 확대**
 - 농자재 유통센터와 전문 스토어를 연결, 복잡한 농자재 유통구조를 단순·투명화하여 농자재 가격 절감 유도
-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친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농가 수요를 받아 일괄 구매하는 **공동구매 체계 구축**
 - (단기) 전년도 공급실적 및 친환경농가 추천품목을 조사하여 유기농자재 업체와 가격협성 등 **공동구매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 확대**
 - * '16년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으로 확대
 - (장기) 시군별 유기농자재 **선정위원회**(생산자단체, 공무원, 기술센터 직원 등)를 구성하여 농자재 품질평가 및 자재 선정·지원
- 중장기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농업현장과 밀착도가 높은 **친환경단체를 유기농업자재사업 품목 공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강화**

- 비료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한 **비료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16)
 - 폐기물 처리업체의 재활용 물량과 비료업체의 원료 수불대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체계적 비료 품질관리 가능
- 농관원에 비료품질 관리업무를 위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반입원료 확인 및 불량원료 추적조사 강화**

다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 ◇ 유기종자 사용 확대를 위한 단계적 제도개선 추진
- ◇ 유기종자 생산기반 확충 및 정보제공 강화

(1) 유기종자 사용 인증심사 기준 개편

□ 국내여건 및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유기종자 사용기준 마련

- 국내 유기종자의 정의가 국제기준(CODEX)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인증기준 종자 사용범위 확대
 - * 국내에서는 연속으로 유기규정에 따라 생산된 종자만을 의미하나, 국제기준은 최소한 1세대 동안 유기기준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정의
- 인증사업자의 비유기 종자 사용시 인증기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예외 규정 적용 단계를 설정하여 유기적 순수성 확보
 - 비유기종자 사용시 구하지 못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비유기종자 사용 등 종자 이용기준 마련(고시 개정)
 - * 예외 규정 적용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을 경우 ① 무농약인증 농가 생산 종자, ② 관행 농가 생산 종자, ③ 처리(소독) 종자 순으로 적용
- 중장기적으로 유기농가의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경우 처리(소독) 종자 사용을 금지 도입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운영
- 유기·무농약 농가의 종자사용 실태 조사('16) 등을 거쳐 유기·무농약 종자 사용비율이 높은 품목군부터 소독종자 사용 금지
 - 유기종자의 정의는 우선 개정하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16), 품목군별 소독종자 사용금지는 단계적으로 추진

(2) 유기종자 생산·공급기반 마련

□ 유기농업에 적합한 종자 육종 및 생산기술 개발·보급

○ 유기농업에 적합한 품종 조기개발·보급

- 자가 채종이 가능한 품목·품종(콩·대파·시금치 등) 선정 및 종자 생산기술 보급

- 미국·EU 등에서 우수 유기종자를 도입하여 각 도 농업기술원의 적응실험을 통한 국내 적합 품종 선발·보급

* 선발된 품종의 원종을 재도입하여 유기종자 생산자에게 보급하여 증식

- 유기종자 생산농가 대상 종자생산방법 등 지속적 기술지도 실시

* 기술지도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

○ 유기종자의 생물제제 등을 이용한 소독법 개발·보급

○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을 통해 종자 육종 생산기술을 개발·보급

□ 유기종자 생산·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시스템에 등록된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생산·유통비 지원

○ '18년까지 유기종자 전문 생산자 100개소를 육성하고 생산·유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유기종자 거래 활성화 유도

- 벼, 콩 등 농가 생산가능 품목은 인증농가(유기, 무농약) 및 친환경 광역단지를 활용하여 종자 보급

* 유기재배 농가에서 유기종자 생산 및 처리종자를 1세대 이상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하여 농가당 3~5품목씩 전국에 100여 농가 선발 운영

○ 국내 생산이 곤란한 상추, 고구마순 등 품목은 종자 육종가, 실용화 재단 등을 활용, 무처리 종자 수준의 생산기반 조성

* 전친농 등 생산자단체와 민간육종가협회 등과 상호 MOU 등 상호 협력 체계 마련

□ 친환경 재배용 종자 생산·공급기반 구축

- 현행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친환경 종자관리 D/B 구축
 - 유기·무농약·비소독 종자 등으로 분류하여 구분관리하고, 친환경 종자 공급이 가능한 인증농가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 * 시스템에 업체별 공급가능 품목명, 공급가능 시기, 재고유무, 연락처 등을 공개
 - 친환경인증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시스템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후 등록 대상자 및 인증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 * EU의 종자데이터베이스 등록·관리 제도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개선 검토
-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자가채종 및 인근 농가 생산품 사용)하는 경우 친환경종자로 인정하여 유기종자 사용 확대
 - * 현재 유기인증농가 중 농관원 및 인증기관에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등록하고, 무농약 인증농가 또는 일반농가까지 확대 적용

□ 농진청에서 종자 생산농가에 대상 종자생산 방법, 채종포 전문 교육 등 교육훈련 실시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품목에 유기종자를 포함하여 유기종자 시장의 조기정착을 유도
- 종자 생산방법·채종포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관원은 유기종자 생산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담하여 신뢰도 확보

□ 고추·상추·토마토 등 유기육묘 유통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발

- 개별육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수 유기육묘를 보급할 수 있는 유기육묘 인증제 도입
 - *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에 유기육묘 규정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농관원 고시 개정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8,520백만원)의 우수종묘증식·보급사업을 활용, 육묘장 시설 지원을 통해 유기육묘 산업 활성화 지원
 - 친환경기반구축사업의 단지·지구 단위 육묘장 활용도 병행 추진

IV.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2)

제2장 농업환경 보전 강화

5. 농림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

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및 확산

나. 걱정시비 시스템 구축

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라.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6.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5. 농림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

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및 확산

- 기본방향 수립,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농업환경보전사항을 구체화하고, 모델화 작업 등을 통해 확산
-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 자발적 참여,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지역특성 반영, 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및 연구개발 지원
 - 다만, 자재를 지원하고 있는 국내 여건을 감안, 참여농가는 자재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 마련
 - 사업대상 : 참여 의지가 높고 사업효과가 높은 수계 상류 인근(9개소)
 - 운영방식 : 정부-협약에 의해 결정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
 - * 지자체·농어촌공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 불이행시 지불금 삭감 등의 조치
 - 이행사항 : 모든 농가들이 수행하는 기본관리사항과 지역여건에 따라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이행사항으로 구성
 - 지원내용 : 영농활동 소요비용 및 소득감소분 지원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산
 - 추가이행사항은 지속 발굴·검증하고, 기본관리사항은 중장기적으로 유기·무농약 농가들이 의무 이행사항으로 개편 검토

② 적정시비 시스템 구축

- 비료사용처방 가능 작물 확대, 다양한 비료 혼용방안 제시 등
- 합성농약·화학비료 과투입 억제를 위해 GAP 확대

③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④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숲가꾸기 사업, 활엽수 조림 등으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증진
- 산림부산물·폐목재 재활용 지원 및 목재펠릿 보일러 확대

- ◇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보전 기능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 (1단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가칭) 기본방향 수립
 -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분석 및 환경보전활동 모델화·확산
 - (3단계) 직불금 가산 등을 통한 농업 영위시 기본관리사항으로 설정 검토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본방향 수립

-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보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방식 발굴·확산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고투입 농법으로 인한 높은 양분수지를 감안시 투입재 적정량 사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농업으로의 전환 추진
 - 농업환경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보전활동 발굴·확산을 통해 농촌다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 수자원 함양, 토양유실·홍수 방지, 자연경관 보전, 전통문화 보존, 쾌적한 환경 제공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 다양한 환경보전형 영농방식을 유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 * 환경보전활동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불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교육·컨설팅 및 시설지원 등의 정책지원 패키지

◇ 농업환경(Agri-environment) 개념

- 농업활동으로 인해 조성된 농촌지역의 경관, 생물다양성, 역사적 유적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을 의미
- 농업환경은 비경합성·비배제성 등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어 정부의 정책적 개입·지원 필요

□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 보전·복원 대상 조사·분석,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법개발 등 장기간 소요*

* EU·스위스 등도 농업환경 프로그램 도입 후 30년 이상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는 농법개발 및 현장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지속 보완

- 기본방향 수립,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내 적용이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사항을 구체화하고, 모델화 작업 등을 통해 확산
- (기본방향)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기본원칙 마련, 시범사업 계획 수립
- (시범사업) 국내 농업환경에 적용 가능한 환경보전사항 확인 및 사업성과 분석, 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강화
- (모델화·확산) 시범사업 실시지역에서 수행한 사항 검증·모델화, 세부 실시메뉴 발굴, 연구개발·조사,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확산

□ EU·스위스·영국 등 주요국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중심으로 환경보전사항 구성
 -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 기본관리사항은 작업장 주변 청결유지 등 간결한 사항 중심으로 구성하여 농가 참여 확대 유도
 - 기반조성, 경영 등과 관련된 현장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해 환경보전활동 실천시 농가 어려움 해소 지원
- 사업 초기 농가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활동 이행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마련
 - * 농가는 농법 변화로 생산비 증가(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 우려가 높아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참여 가능 예상
 - 환경보전활동 이행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되, 세부 이행 사항의 개별단가는 사업성과 분석, 조사·연구 등을 통해 산정

- 지자체-농가 협약을 통해 **단순·명확한 이행사항**을 마련하고, 미준수시 예산지원 삭감 등의 **불이익 부여**(cross-compliance)
 - 환경보전활동은 토양검정, 수질관측 등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항 중심으로 구성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지속 확대
 - 관리기관(지자체 등)은 **이행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불이행시 보조금 삭감 및 사업배제 등의 **패널티 부여**

-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자재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자재 지원(현물)을 지불금(현금)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접근
 - 추가 노동력 소요, 환경친화형 시설·자재 추가 구입비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은 **기존 직불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보전
 - 다만, 사업 참여농가는 **자재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지급받은 **지불금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
 - * 농가는 토양에 필요한 만큼 적정량의 투입재를 구입·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장기적으로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정착시점과 연계하여 **자재 지원사업과 통합**하는 방안 검토

- 지역별·품목별 농업환경자원이 상이한 점을 감안, 농가들이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 협약 내용은 전국 공통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인 **기본관리사항**과 지역특성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추가이행사항**으로 구성
 - 정부는 **개략적인 메뉴를 제안**하고, 농가는 범위 안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사항**을 정부·지자체와 협의하여 수행

- 지속적인 **연구개발·조사** 등을 통해 우리여건에 맞는 농법을 개발하고,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 역량강화 유도
 - 작물별 최적재배기술(BMP) 개발, 현장적용성 평가, 기술지침서 작성 등의 **농업환경보전 R&D 로드맵**을 마련하여 **환경보전형 농법 발굴·확산**

(2)**시범사업을 통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 마련
 - (기본방향) 환경친화형 영농방식을 도입·적용하되, 적정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농가 참여의 지속성 확보
 - (사업대상) 자발적 참여의지가 높고, 사업효과가 높은 수계 상류 지역 인근 농지구역을 대상으로 선정
 - 사업성과 비교를 위해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9개소 선정
 - 농가 참여도가 높고, 집단화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성과 제고
 - (운영방식) 정부·지자체-마을·농업인 간 협약에 의해 환경보전 사항을 결정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마을·농업인은 현장포럼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농업환경보전 관리 기간에 이행할 사항을 선택해 정부·지자체와 협약(agreement) 체결
 - 농업인은 환경보전활동을 기록하고, 관련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 실천
 - 정부·지자체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농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불이행 농가에 지불금 삭감 등 조치
 - (사업내용) 3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되, 연차별 이행사항 점검
 - (1년차) 농가 대상 농업환경보전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 농업인은 환경친화형 영농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 우려가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교육 및 공감대 확보 필수
 - (2~3년차)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보급 및 사업 모니터링
 - (4년차 이후) 사업지역 성과점검·평가에 따른 협약 연장여부 결정

- (이행사항) 모든 참여농가들이 수행해야 하는 기본관리사항과 지역 여건에 따라 농가들이 선택하는 추가이행사항으로 구성
 - (기본관리사항) 기본적인 토양·용수 및 재배관리, 영농일지 작성, 교육 이수, 기본 환경보전활동 등 수행이 용이한 사항으로 마련

항 목	관 리 내 용(안)
교 육	농업환경관리 관련 교육 수료(환경친화 시비법, 병해충 방제법 등)
토 양	농경지 토양은 유해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용 수	농업용수 이상의 용수 이용
재배관리	비료 : 비료 표준사용량 준수 및 사용내역 기록·관리
	농약 : 농약 사용기준 준수 및 사용내역 기록·관리
환경보전	농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폐자재, 농약병 등) 청결 관리

- (추가이행사항) 시설조성, 농법 변경 등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나 추가 노동력 투입 및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기본관리사항 이상의 활동

항 목	세 부 활 동(예시)
토양관리	토양비옥도 개선, 토양침식 방지, 토양유실 방지, 농업부산물 농지 환원, 완효성 비료 사용 등
용수관리	용수사용 절감을 위한 간단 관개, 수자원 함량 증진(물높이 조절 가능 물꼬 설치 등), 침사지 설치, 유량·수질 관측망 설치·운영 등
생물다양성	토종품종 등 유전자원 경작, 논의 습지환경 조성, 생태둑병 조성 등
농촌환경	용배수로·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공동관리, 조건불리 농지 및 휴경지 보전 관리 등

- (지원내용) 농업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친화형 영농활동 소요비용 및 소득감소분 등을 인센티브로 지원
 - 환경친화형 자재 구입비, 추가 노동력 소요 등을 감안하여 지불금은 최대 200만원/ha* 지원하되, 참여 농가는 자재지원사업에서 배제
 -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농가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참여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유기질비료 등 관련 자재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업환경보전 활동에 따른 초생대·저류지·둑병 등 H/W 설치·관리 비용 및 필요한 장비는 별도 지원
- 사업에 필요한 H/W 등은 즉시 지원하고, 지불금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0~100% 삭감)
-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농진청·연구기관은 농업환경 변화상 모니터링 시행
 - 관리기관(지자체, 농관원 등)은 육안조사·토양검정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생물상 및 토양·수질 변화상 정기 모니터링
-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생물상 변화, 토양·수질 변동, 주민인식·만족도 등을 검토하여 시범사업 문제점 검토 및 대안 강구
 - 각 시범사업 실시지역에서 수행한 추가이행사항의 환경보전효과 검증 및 적정단가 산정
 - 연구개발·조사 등을 통해 장기 관리지표를 발굴하고, 사업실시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상 지속 점검
 - * 배출량 변화는 년 단위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농법변경을 통한 생태계, 수질·토양 미생물 변화 등은 장기간 소요되어 장기변동 관측 필요
 - 국내외 전문가 워크숍, 친환경농가 세미나, 소비자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성과 보급·홍보
 - 지속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접목형 프로그램 개발
 - 체험·관광·판매 등과 연계를 통해 수익창출 및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 지역 농산물 가공·판매 역할을 넘어서 지역의 환경재 및 환경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환경친화형 영농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 판매 가능

(3)**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산**

- 시범사업에서 농가들이 수행한 기본관리사항 및 추가이행사항들을 중심으로 국내 여건에 적합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유기·무농약 농업 이외에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추가적인 영농활동**으로 지위 설정
 - 다만, 기본관리사항*은 농업활동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점진적으로 **유기·무농약 인증시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개편****
 - * 기본적인 토양·용수 및 재배관리 수준으로 구성하고, 기본 환경보전활동 추가
 - ** 작업장 청결, 주변관리 등의 관리사항을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에 명문화하고, 점진적으로 기본적인 환경보전사항도 추가
 - 유기·무농약 농가도 인증기준 이외의 추가이행사항 수행시 지급
 - 기본관리사항을 **상회하는 환경보전활동들은 지속 개발·보완**
 - 사업성과가 높은 추가이행사항은 타지역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세부 실시메뉴로 추가**
 - 중장기적으로 기본관리사항은 직불금(쌀·밭 등) 지급시 모든 수급 농가들이 이행해야 하는 **상호준수의무**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후 환경보전기능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지구 재설계**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시 **일정면적 이상(예 : 30%)은 유기·무농약**으로 재배하고, 나머지 면적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토록 개선
 - 기조성된 친환경농업단지·지구도 **인센티브 사업(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

- (배경) 생산성 중심의 농업정책에 대한 부작용(환경 파괴*, 과잉생산 등)의 해법으로 영국**에서 최초 도입, EU에서도 CAP가 환경파괴를 가속시켰다는 점을 인식하고 CAP 기준을 EU 토지의 환경친화적 관리 방향으로 전환
 - * '45~'84년간 원시림의 50%, 미개간지의 80%, 평야의 40%, 습지의 60% 훼손, 담쟁이 넝쿨 14만마일 훼손, 조류 및 야생동물 종류 및 개체수 감소 등
- (목적) 현대적 농법 적용에 따른 환경피해 감소 및 농촌의 자연과 경관 보전
- (실시원칙) 자발적 참여, 지역 특정, 장기간(5년 또는 10년) 실시 및 평가, 인센티브 제공, 오염자 부담(우수영농규정 이상의 농법 적용), 자율적 추진(회원국 자율), 비용과 손실보상(WTO 그린박스)

영국의 농업환경정책 도입과정

- '50년대부터 환경단체 농업의 집약화·산업화의 피해 문제제기
 - * 대규모·상업적 영농에 따라 2차 대전 이후 95% 허브초지, 80%의 초크·석회암 초지, 50% 전통림이 소실되고, 농약사용에 따라 조류 개체수 급감 보고
- 환경단체 자체비용으로 농가와 계약 맺고 소득보상을 통해 저투입농법 지원
- 영국의 EU 가입에 따라 농업의 집약화 진전 및 농산물 지지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농민 이탈 발생 → 환경단체에서 정부차원의 환경보전농법 적용 지원 요구
- 농민단체의 반대 로비(농림부에서 수행, 농촌사회의 자율성 보장 주장)
- 각 주체간 합의에 따라 환경민간지역 시책(ESA) 도입('87년 19개 지역 선정)
 - 영국정부는 환경규제 통한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통한 예산 부담 압력 완화와 농가에 대한 대안적 소득기회 제공을 통한 농가소득지지 의도에서 접근
- ESA 도입 이후 농가소득지지, 환경 보전·복원에 따른 농촌사회에의 긍정적 효과 등으로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 '85 : 19개 ESA지역 선정 → '09 : 58천개 협약 진행 중(잉글랜드 농경지의 약 66%, 국가적 복원가치 서식지 면적의 84% 참여)

□ (경과) 영국의 ESA*를 EU가 받아들인 후('85) 세부 시행지침 마련, 지원 확대 등의 과정을 거쳐 '00년대 EU의 기본적인 농촌개발 정책으로 정착

* 환경민감지역 시책(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으로 사업대상을 지정하여 지역경관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역사유적 보호 활동시 보조금 지급

○ 회원국 자율적으로 ESA 정책 실시 허용('85)하고, EU에서 재정 지원 시작('87) → 영국만 ESA 정책 실시

○ EU 차원의 정식 농업정책으로 정립('92, 맥서리 개혁 : 환경보호와 전원 유지에 필요한 영농방법에 대한 규정)

- 다만, EU 차원의 구체적인 환경보전요소에 대한 정의는 없고, EU회원국 자율 실시(권고사항 수준)

○ CAP 농촌개발 정책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해 의무화하고, 세부 시행지침(모범영농조건 : GFP) 마련('99~'00)

○ 농업환경정책을 수정 강화('03)

* 세부적 환경보전요소 제시 및 농업인의 영농시 농업환경보호 역할 강화, 상호준수의무 규정 강화, 상호준수의무 위반시 직불금 감액 규정 도입 등

⇒ 농업환경정책은 경제학적 요소와 자연과학적인 요소(농법의 정립)를 포괄하고 있어 제도화 후 약 30년간 점진적으로 정책으로 정립시킴

□ (기대효과) 농업환경자원의 복원과 보전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농업환경 복원 및 보전 → 농촌지역 환경자산 증대 → 외부 방문객 증가 → 농촌지역 주민소득 증가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영국 농업환경정책(ES) 효과

- 58천개 이상의 농촌환경관리 협약을 시행하여 6백만ha(전체 농경지의 66%)가 참여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예산 지출액 대비 25배 순효과 : ES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178백만~847백만 파운드의 소비 유발, 1,800~15,000개의 일자리 유지
- 농경지 조류의 종 및 개체수 증가, 담쟁이 넝쿨의 41% 참여 및 6% 복원, 돌담의 24% 참여 및 3% 복원, 방문자들의 농업농촌 인식 제고 등

- (배경) 비와호 수질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농업환경 보전사업 실시
- (주요내용)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농업용수 유지·보전활동 지원 및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농촌환경보전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농지·농업용수 유지·보전 활동 및 논·수로 생물조사, 경관조성 활동 등에 대해 지원
 - * 영농활동구역을 기준으로 1구역당 20만엔 지원
 - 시가현 자체적으로 '환경을 고집하는 농산물 인증제도' 실시
 - '03년 조례 제정을 통해 관행농이 친환경 전환시 보조금 지원
 - 3년간 시가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07년부터 농림수산성 정책사업으로 추진(국비 50%, 현 25%, 지자체 25%)

구 분	주요 기준
인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관행의 50%로 감소 · 화학농약 총 사용 성분수와 사용량을 제시된 기준 이하 사용 · 퇴비 및 기타 유기질 재료의 기준 내 적정사용 · 주변 환경 부하 삭감 및 생태계 보전, 경관 형성
인증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생산계획을 신청하고 인정을 받아야 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된 농산물에는 시가현의 인증마크를 표시해 출하·판매

- 작물별 지원금(단위 : ha당, 엔)

작물	지원단가	작물	지원단가	작물	지원단가
벼	60,000	엽채류	100,000	시설재배	400,000
보리, 콩	30,000	과수, 차	120,000	화초	100,000
고구마, 근채류	60,000	과채류	180,000	기타작물	30,000

- (사업성과) 사업대상면적 확대, 농약사용량 감소, 부하량 감소 효과
 - 사업대상면적 : ('01) 394ha → ('05) 4,552 → ('10) 14,173
 - 농약사용량('00년 100 기준) : ('01) 96.9 → ('05) 76.7 → ('10) 58.2
 - 유출 부하량(관행대비, '05) : (총질소) 50.5%, (총인) 31.6, (COD) 49.1 감소

□ (사업개요) 간척지 지역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농업 비점관리 거버넌스 구축시범사업 실시 및 확산방안 마련

- 위치·규모 : 전북 부안군 324ha(새만금 유역 동진강 수계)
 - * 새만금유역 동진강 수계 간척지로 비점오염관리 지정고시 지역 내 위치하여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사업기간·사업비 : '15~'16, 1,800백만원
- 사업내용
 - 집단화된 들녘을 선정, 농업 배출저감기술(BMP) 개발·보급 및 이행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모니터링
 - * (논) 물관리(배수물꼬조절), 시비관리(완효성 비료, 가축액비, 토양검증시비) 등 (밭) 지표피복(벗짚거적), 초생대, 침사구 등
 - 농업인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자발적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프로그램(참여거버넌스, 정책거버넌스) 운영
 - 농업비점관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구축 사업모델 및 사업지표 작성

□ (사업성과) 배출저감기술(BMP) 적용 농법 적용시 질소·인 배출 감소

<논에서 관행대비 질소·인 저감효율(%)>

	TN(총질소)	TP(총인)
배수물꼬관리(5cm 높이기)	31.0	39.3
완효성 비료	38.6	33.7
조합형(배수물꼬+완효성 비료)	35.5	49.5
돈분퇴비(화학비료 대체)	45.3	17.0
돈분액비(화학비료 대체)	28.8	38.1
돈분액비+화학비료 (기비 : 액비, 추비 : 화학)	22.0	28.6

나

적정시비 시스템 구축

- ◇ 화학비료·농약 사용 절감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및 농가 지도·관리 강화
- ◇ 비료사용처방서 개선·확대를 통한 적정 시비 유도

(1) 적정 시비 지원체계 마련

- 토양양분의 체계적 관리 및 맞춤형·유기질비료 등의 공급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 절감 유도
 - 토양 양분수지에 따른 비료사용 유도를 위해 농업인 지도 강화
 - 흙토람 정보를 활용,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토양진단센터를 통해 농업인이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도록 지도 철저
 - * 흙토람 : 작물재배적지, 농경지 화학성, 토양특성, 정밀농업기후도, 생물상 분포, 농업환경변동정보 등의 정보 제공
 - 지역에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기술전문가 등이 현장에 파견, 농가 대면지도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토양검정결과를 반영하여 설계·공급하는 맞춤형비료 효과 등 농가 교육 및 홍보
 - * 화학비료 사용량(ha당) : ('00) 381kg → ('09) 267 → ('11) 249 → ('13) 262 → ('14) 258
 - 화학비료 대체재인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내실화
 - 흙토람 비료사용처방 서비스 가능 작물* 확대 및 활용도 증진
 - * 비료사용처방 작물(누적) : ('15) 115작물 → ('17) 133
 - ** '18년 이후는 작형과 재배기간을 고려한 비료사용처방으로 개선

□ 유기질비료·녹비작물 등 다양한 혼용방안에 대한 적정시비가 가능토록 비료사용처방서 개선

○ 양분수지를 낮추면서 유기질비료 및 녹비작물 투입비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료사용 처방 프로그램 연구과제 추진

* 유기질비료·녹비작물 등의 적정 시비량을 제시하거나, 화학비료·유기질비료·녹비작물의 적정 혼용체계를 비료사용처방서에 제시

- 유기·무농약 농산물에 적합한 비료사용처방서를 개발하여 적정 자재사용에 의한 환경부하 절감 유도

-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을 통해 유기농업에 적합한 토양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시험적용을 거쳐 확산

○ 토양진단 기반 시비체계의 생산량 증진 및 경영비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과제 추진(농진청 또는 기획공모)

* 스위스의 경우 '99년부터 직불제 수급에 상호준수의무를 도입하여 농약·비료 사용량이 지속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적정 사용 지도·관리를 통한 합성농약 사용량 절감 유도

○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등록 확대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 소규모 작물 농약직권 등록(누계) : ('15) 22작물/117품목 → ('18) 100/400

○ 적정농약 사용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정보 서비스 구축

-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농진청)을 통한 예찰·진단 및 농약 사용 종합시스템**을 통한 처방·판매(농협중앙회) 추진

* 병해충관리시스템 : 병해충 진단, 발생정보 및 사용가능 농약 정보 서비스

** 농약사용종합시스템 : 회원 농가별 맞춤형 농약 처방 서비스 및 구매기록 관리

○ 화학농약 사용 대체가 가능한 미생물·천연 추출물 등 천연식물 보호제 개발 유도(농진청)

(2)

GAP를 통한 적정시비 지원

* GAP 확대를 통해 농약·비료의 과투입을 지양하는 농업환경 조성 가능

□ GAP 취득 확대를 위한 농업인 안내 및 교육·컨설팅 강화

○ GAP 자율점검표(2장 이내)를 개발하여 관심있는 농업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15 : 농진청) → 권역별 시험적용 및 현장지도('16 : 농업기술센터) → 본격 확산

* 대상작물 : 벼, 사과, 배, 포도, 배추, 딸기, 잎들깨, 인삼, 버섯, 오미자

○ 현장에서 농업인의 GAP 적용을 돕기 위한 표준작업지침(SOP)를 개발, GAP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

* ('15) 벼, 콩 등 식량작물 중심 14종 → ('16) 46(누계) → ('17) 77

○ GAP 취득희망 농업인 교육('15, 4만명 이상), 농업인 대상 컨설팅 사업 지속 추진('16 : 5억원)

□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 취득 집중 확대 지원

○ 전국 주산지 대상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전국 주산지 및 지역별 특화품목에 대해 토양 및 용수 중금속 등 안전성 분석을 지원하여 GAP 취득 기반 마련

* '16년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신규) : 60억원(국비)

○ 정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밭작물 공동경영체 및 들녘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 이행 확대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16, 신규)으로 GAP 취득 지원 및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시 GAP 취득 요건 명시 등

○ 시·도별 GAP 추진협의체를 활용하여 자발적인 GAP 확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내용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사업개편 및 액비 품질관리 강화

◇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및 연구개발 촉진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수익성 확보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화** 추진

○ **규모화·광역화**를 통한 가축분뇨 처리물량 확대 및 수익성 확보

* 퇴비화시설을 제외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에서 제외 추진(환경부 협업)

○ **퇴·액비 수거비용 현실화***를 통한 농가의 공동자원화시설 이용 유도

* 수거비용 : 공동자원화 2~2.5만원/톤, 액비유통센터 : 0.8~1.5만원

○ **고품질 퇴·액비 수요처**(가로수, 골프장 등) 및 **바이오에너지 판로*** 확보

* 바이오가스 플랜트 공정에서 나온 폐열을 인근 시설원에단지에 공급

○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 시설을 유치한 사례** 홍보 및 견학·교육시설로 활용(예 : 충남 아산, 전북 정읍 등)

○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시설지하화 등 주민 친화적 이미지 구축으로 사업 추진 동력 마련

- 처리효율, 처리비용 등 전체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현황 및 경영수지를 파악하고, 시설운영 개선방안 마련

□ 액비 품질제고 및 규격화를 위한 **비료생산업 등록** 추진

○ '16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 '17년에는 액비유통센터 등록 의무화

○ 고품질 액비 생산·유통을 위해 **액비 품질 등급제** 도입

- 현행 액비화 기준을 보완하여 품질에 따라 액비를 세분화하고, 품질 등급에 따라 액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전체 액비저장조 실태조사를 통해 액비저장조 정비사업 실시
 - 노후화시설 및 미활용시설 철거, 사용 가능 액비저장조는 자원화 조직체에서 관리, 액비저장조 관리·운영지침 마련, 지도점검 강화 등

□ 축산냄새 기준 및 관리지침 마련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악취발생 원인별(축사, 분뇨처리시설 등) 악취기준 마련 및 등급제 도입, 축산냄새 관리 매뉴얼 마련·보급, 교육·홍보 지속 추진
- 축산냄새 저감시설 지원 확대 등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신규 도입
 - 주요 악취발생지역에 대하여 패키지형 지원*으로 해당지역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
 -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광역악취 개선사업(120억원)을 통해 3~5개소를 선정, 악취저감시설, 축산환경컨설팅, 경관개선, 홍보 등 실시
 -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타 지자체와 공유 및 확산
- '통합형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단'을 통한 축산냄새 중점관리기준 개발 및 저감 모델 연구 실시(~'17)
-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380여명)을 통한 농가 컨설팅 상시화
 - * 전문 컨설턴트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심화교육 과목설정, 교육방법, 시험과목 등 자격증 부여 방안 검토
-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생산자단체, 축산업계의 역할을 분담하여, 축산분뇨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구 분	역 할
농식품부	노후화된 시설은 개·보수를 유도하고, 환경부·지자체 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적극 추진 * 점검을 통해 환경부의 유사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 단가 등 합리적 조정
축산환경관리원	축산과학원, 환경관리공단 등 축산분야 환경관련 전문기관과의 기술협력 MOU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 주요 업무 : 악취 컨설팅, 퇴액비 유통 및 품질관리, 분뇨처리시설 기술 평가 등
생산자단체	악취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소비자단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지역주민이 찾는 축사농장 만들기, 축종별 결의대회, 교육·컨설팅 등
범축산업계	축산업 상생발전 기금(사료업계 조성) 등을 활용하여 축산환경 개선 R&D 사업 및 축산업 인식개선 사업 추진

라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숲가꾸기 확대 및 생태·경관기능 강화
- ◇ 산림부산물 사용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임업 지원

(1)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증진

□ 댐유역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추진

- 전국 11개 댐 유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 87,629ha 추진
- 울폐된 침엽수림은 건강한 숲이 될 때까지 약도의 속아베기를 실시하여, 산림토양 보전 및 입목 수원함양기능 증진
 - * 수원함양 기능 비교 ⇒ 침엽수림 : 혼효림 : 활엽수림 = 1 : 1.2 : 1.3
-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다층혼효림 유도하고 토양의 공극 발달 및 수질 정화 기능 강화
 - * 다층구조 숲은 단층구조 숲보다 수자원 함양기능이 14% 높음

□ 물 저장 능력이 뛰어난 활엽수로 친환경 조림사업 추진

- 백합나무, 참나무류 등 인공조림을 위해 바이오순환림 조성, 경관 조림 등 다양한 조림 추진

□ 공익적 기능을 구현하는 5대 기능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전문화된 숲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생태·경관 기능 강화

기능별	관리 방향
수원함양림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생활환경보전림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산림휴양림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환경 개선을 통해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산지재해방지림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친환경 별채사업 지원 및 국산재 이용 확대

- 산림생태적 건강성을 고려한 **친환경별채**로 국산재 자급률 제고 및 별채산업에 따른 농·산촌 환경적 영향 최소화

* 별채에 따른 임목 부산물은 산림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적극적 활용

- **숲가꾸기 산물 수집비**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용재의 이용도 제고

* 숲가꾸기 산물은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 산림부산물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속적 지원

- 폐목재를 원자재로 활용하는 **산업시설 현대화·구입자금** 지원

*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설·교체·증설, 폐목재 구입을 위한 융자금 지원

-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 확대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체계** 구축

- 지역 내 목재가공업체와 목재펠릿 제조업체간 **원료공급** 활성화

- 산림부산물 수집량 확대 및 수집 산물의 지역 내 활용·소비 촉진

-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유통망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속으로 난방분야 펠릿 소비 확대

* 주택용 보일러 누적 보급실적(대) : ('15) 19천 → ('17) 23 → ('19) 27

□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구축

- 불량, 불법 수입 목재펠릿의 유통 방지를 위한 주기적 단속 실시 및 관련 부처 간 협업단속 추진

- 저품질(3~4급) 제품이 주택용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 강화

- 사후관리 모니터링위원회 및 A/S전담반 운영으로 보일러 품질향상

6.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 ◇ 전체적인 농업환경 변화상을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 조사시스템 개선
 - 농업환경변동 조사지점을 정책사업 시행지역과 연계하도록 확대·개편
 - 대표필지(15만점)를 활용, 토양환경 변화상 주기 점검
- ◇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업환경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시지역 농업환경 변화상 지속 점검(10년)
 - D/B를 활용, 환경부하 예상지역은 농업환경보전 관리지역으로 선정, 집중 관리

□ 농업환경 변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스템 개선·보완

- 농약·화학비료 총 사용량, 가축분뇨 발생량 등 거시지표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농업환경 변화상 점검·관리
- 지역단위 농업환경 평가가 가능토록 조사주기·지점 조정·확대
 - 토양화학성은 지역별·품목별·토양유형별로 대표필지를 선정하여 매년 농업환경 변화상 평가
 - * (현행) 4년 1주기(밭→과수원→논→시설) 2천점 내외 조사 → (개선) 매년 대표 필지 중심 15만점 조사(전체 필지의 1%, '16년은 5만점)
 - 농업용수 수질조사 지점수 확대를 통해 수계·유역단위 평가 강화
 - * (현행) 하천수 300지점, 지하수 200 → (개선) 지역별·수계별 평가 강화('17)
 - 미생물·생물다양성 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생물다양성 조사 확대
 - * (현행) 생물상 4년 1주기 조사 → (개선) 논·밭 중심 조사('17)
 - ** (현행) 도별 3지역 → (개선) 도별 논·밭 농경지 비율에 따라 조사 확대('17)
 - 농경지 중금속 등 오염도 평가 강화를 통해 생산기반 확충 지원
 - * (현행) 4개 권역별 조사 → (개선) 도별 취약지구 중심 조사
 - 선정된 조사지점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예 : 5년) 확인·검증하여 신뢰도 제고

- 현재 적정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토양 미생물 및 생물 다양성 조사의 적정 관리지표 설정
 - * 농진청 기초연구사업을 활용, 종풍부도 등의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변동 평가
 - 농업환경변동조사와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사업 평가·환류 강화
 - * 현행 농업환경변동조사는 사업지점과의 연계성이 적고 조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책환류가 부족
 - 농업환경변동조사 조사지점을 친환경농업단지·지구,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시지역, 일반농경지 등으로 구분
 -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지역의 경우 스마트 팜 맵 정책지원 정보와 농업환경변동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농업환경 변화상 분석
 - * (예시) 특정 친환경농업 단지·지구를 선정하여 토양 화학성·물리성, 생물 다양성, 미생물 변화상 등을 조사하고 분석
 - 농업환경 변화상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친환경 농업 관련 정책·사업의 환경보전효과 제고 유도
 - 조사지점별 농업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사업 물량조정 및 가점 부여 등 환류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 정부기관(농식품부, 농진청 등), 전문가, 농업인 등 관계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분석결과 환류(연 2회 개최 원칙)
 - * 농식품부(친환경농업과, 친환경축산팀 등),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생산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 주요 농업환경조사 통합관리를 통해 조사의 효율성 제고
- 농진청, 농어촌공사, 조사·분석기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농업환경조사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조사 효율성 제고
 - 조사는 기관별로 실시하되,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검사 차단
 - 농진청은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시군센터, 분석업체 대상 정도관리 및 분석교육을 강화하여 조사의 정확성 제고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환경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각 농업환경자원은 기관별**(수질 : 농어촌공사, 토양 : 농진청, 가축분뇨 : 축산환경관리원) 관리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통합관리기관은 각 기관에서 수집·조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의 토양·수자원 현황 파악·분석
 - 입력된 D/B를 기초로 환경부하가 예상되는 지역은 '(가칭)농업환경보전 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최적재배기술(BMP), 토양 침식방지 재배기술 등을 지원하고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 검토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친환경 단지·지구 등 정책사업 실시지역은 **농업환경 변화상 지속 점검**(예 : 10년)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환류
 - 수질, 토양, 생태계, 지표수·지하수 등 장기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
 - * 미국도 보전농법영향프로그램(CEAP)을 통해 보전농법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장기 모니터링 실시 중(농경지 : '03~, 습지복원 : '04~, 야생서식처 : '05~, 목초지 : '06~)

□ 실효성 있는 농업환경자원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 **주체별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조사-정책 연계 강화
 - 농식품부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마련·점검하고, 농진청은 이에 부합하는 조사·기초연구 수행
- 지자체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 수립시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현황파악 및 목표·추진전략** 등을 마련토록 유도
 - * 친환경농어업법 제8조에는 지자체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유기·무농약 농산물 생산·유통확대를 위한 방안 중심으로 구성
-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주요국 농업환경정책 동향파악 및 주요 지표 변동상황 점검 등
- 지자체 정책담당자, 농업인 등의 농업환경지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
 - * 친환경농업 교육과정에 포함, 환경지표 활용 매뉴얼 개발·보급 등 검토

V. 실천계획

1. 계획의 추진체계
2. 법령·통계 정비 및 R&D 추진계획
3. 투융자 계획
4.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1. 계획의 추진체계

가 기관별 역할분담

<p>농식품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육성 총괄(생산·유통·소비기반 확충, 인증제도 관리 총괄, 농업 환경자원관리 강화 등) ○ 홍보·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R&D) 총괄 및 통계기반 확충
<p>농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관리 ○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 세부 인증기준 마련·집행
<p>농진청 및 연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실행(농기평 농식품 기술개발, 농진청 경상연구) ○ 재배 매뉴얼 마련 및 농가 기술지도
<p>지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친환경 실천방안 마련 ○ 지역단위 맞춤형 지원 ○ 생산농가 조직화 지원
<p>친환경 농가 및 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 친환경농업의 가치·정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조금) ○ 환경보전형 영농 실천
<p>생협·농협 및 유통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생산지원(자금, 교육·컨설팅 등) 및 농가조직화 ○ 친환경 인증 농식품 판매장 확충 ○ 친환경 인증 농식품 가치 확산
<p>소비자 및 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활성화 ○ 친환경농업의 가치 공감(윤리소비)

나

계획의 추진·평가체계

(1) 계획의 추진체계

- (과제 담당기관)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주요 과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및 정책지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 철저
- (지방자치단체)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 실천계획 수립·시행
 - 친환경농어업법 제8조에 의거, 자치단체 실천계획 수립 시행
 - 농식품부 기본계획 → 시·도 실천계획 → 시·군 실천계획
 - 시·도에서는 자체 실천계획 수립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에서는 자체 실천계획 수립 후 시·도 제출 및 이행 철저

(2) 계획의 평가체계

- (농식품부) 매년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 농식품부에서 매년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과제 담당 기관에 송부, 담당기관에서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 제출
 - 과제별 추진실적과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정·보완
- (지방자치단체) 시·도는 매년 시·도, 시·군 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 유기식품 선진국, 수출 가능국과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 채널 구축
 - 동등성인정 협정 체결국과 유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선진 유기식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실질적 교류를 위한 체계 마련
 - * 전문가 회의, 세미나개최, 워크숍,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국내의 우수 유기제도 및 시스템을 해외 전파 체계 구축
 - 유기식품 교역량이 많은 국가를 선정하여 국내의 유기·무농약 인증 관리 체계, 전산시스템 등을 전파
 - *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는 동남아시아·남미 등을 대상으로 국내 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추진
 - 유기식품 교역량, 국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추진 대상 국가 선정하고, 미국·EU 협정사례를 활용하여 국가별 대응전략 마련
 - 각 국가별 인증제도 비교·검증 및 현장평가를 철저히 수행하고 국제기준(Codex, IFOAM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 * 검증국가('15.12) :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에콰도르, 인도 등 7개국
 - 소비자, 유기가공식품업체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별 대응전략 마련
 - 동등성인정 협정 체결국가와 실무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운영
 - 협정체결 국가별 연 1회 이상 협정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비교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국내제도 선진화 과제로 발굴
 - * (예시) 선진 인증기관 관리체계, 인증기준·심사절차 벤치마킹, 국제기준 동향파악을 위한 국가간 정보교류, 각 국가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2. 법령·통계 정비 및 R&D 추진계획

가 법령 정비계획

□ 친환경 인증 농식품 신뢰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인증관리 강화

- 다만, 농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규정은 완화·폐지하고, 무농약 가공식품 등 새로운 관리제도 도입

구분	주요내용	추진계획(일정)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신청 제한, 인증품 회수·폐기 ○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결격사유, 심사원 보수교육, 인증기관 및 등급 공포, 인증기관·인증심사원 재지정 강화 	(16.2)입안 → (16.8) 국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2월 개정안 국회 기제출('15.12.) ○ 공시·품질인증제를 인정제로 통합 ○ 농관원 인증업무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양 ○ 무농약가공식품, 조리·판매업체 관리제도 도입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관리 농관원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업무, 시험연구기관 지정, 공시품 관리, 공시기관 지정·처분에 관한 업무 등 	(16.2) 입안 → (16.7) 국무회의사행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물질 및 유기·무농약 인증기준 고시화 ○ 인증 갱신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 유기인증품 표시기준 간결화(organic) ○ 공시사업자 비의도적 처분기준 완화 	(16.2) 입안 → (16.7)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 민간이양 등 법 개정 후속조치 ○ 의도·비의도에 따른 행정처분 조정 ○ 민간인증기관 ISO/IEC 17065 의무화 ○ (고시) 인증기준 완화, 단체인증, 무농약기준, 유기가공 비율, 위생조건, 및 반려동물 사료 등 인증제도 마련 	'17년이후 개정

나

통계 정비계획

- 친환경 인증면적·농가 변동현황은 구축되어 있으나, 농가경제 및 생산·유통현황 등은 구축되지 못하여 체계적 정책수립이 어려운 상황
- (출하량) 인증품 취급실적보고서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나, 농가의 자의적 기재 및 사후검증 미흡 등으로 정책활용 어려움
- (판매량, 생산비, 유통현황 등) 필요시 단기 연구용역 및 조사를 통해 확보하고 있어 시계열 분석이 곤란하고, 정책방향 수립 애로

<친환경농업 관련 통계 구축현황>

구분	내용	구축여부	비고
생산	인증면적 및 인증농가	○	친환경 직불제 친환경농자재지원 재해보험 확충
	생산계획량 및 출하량	△	
	실제 생산량 및 경로별 출하량(액)	×	
	실천농법	△	
	자재 조달방식 및 사용실태	△	
	사용 용수·종자	△	
유통	주요 품목별 출하경로 및 판매마진	×	유통활성화 직거래 지원
	출하경로별 판매가격	×	
	유통경로·판매장별 취급 품목	×	
	경로별 유통비중(중간·최종)	×	
가공	업체현황	△	유기식품 활성화 동등성협정
	생산량(액) 및 판매량(액)	△	
	원료조달실태	×	
	수입량 및 금액	△	
농가 경제	친환경농업인 현황(성별, 연령, 실천기간 등)	△	친환경 직불제 친환경농자재지원
	주요 품목별 경영분석(품목별 생산비, 소득액, 노동력 투입, 작업방식 등)	×	
	친환경 경영체 현황(법인수, 평균면적, 운영형태 등)	×	

* △ : 현행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생산계획서 및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 보고서 등을 통해 확보 가능, × : 제도개선 등을 통해 확보 가능

□ 생산기반 · 농가경제 분야

- 정책상 필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조사표를 설계하여**(‘16.상) 인증 신청시 농가·업체가 작성하여 **민간인증기관에 제출**
 - ‘16년 시범조사를 거쳐 ‘17년 전체 농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전수조사가 어려운 분야*는 통계설계 후 샘플조사 실시하는 방안 검토
 - * (예시) 품목별 생산비, 소득액, 노동력 투입 등
- 민간인증기관이 수집한 자료는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에 반영·D/B화**하여 정책 수립·개편시 참고자료로 활용
 - * 시스템 개보수 비용을 활용하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경우 ‘17년 예산으로 확보
 - 인증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으나 산출이 곤란한 자료는 **입력·산출방식** 등을 개선하고, 허위기재시 **행정처분조항**을 마련하여 현실성 제고
 - * (예시) 생산계획량, 전체 출하량, 업체현황 등
- 인증신청서, 인증품 실적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등 관련서류 중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간소화**하여 농가부담 경감 지원

□ 유통분야

- 인증사업자(농축산업, 가공업)들이 **취급실적보고서 제출시** 경로별 출하량(액)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실적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또는 ‘농산물유통정보실용화 사업(유통소비정책관)’ 등을 활용, **연 1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 실시
 -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량·수입금액 등은 신고 수리 대상(식약처) 및 **수입증명서(인증기관)** 등을 활용, 통계자료로 활용
- 연 1회 친환경 인증농가(성별, 연령, 실천면적 등), 지역별 주요 생산품목 현황, 유통경로, 소비현황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로 정보제공 강화

□ 세부 분야별 통계 구축방안

현황	개선방안
□ 생산분야	
○ 생산계획량 및 실제 생산량 인증품 생산계획서(농관원 고시)에 생산계획량 및 전년도 생산량을 기재	친환경 인증시스템에 품목별 생산계획량 및 실제 생산량 등록, D/B화
○ 출하량 및 경로별 출하량(액)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실적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에 전체 출하량만 기재	경로별 출하량 및 금액을 기재토록 실적보고서 양식 개편·세분화
○ 자재 조달방식 및 사용실태 인증품 생산계획서(농관원 고시)에 기재	친환경 인증시스템에 자재명, 사용시기, 사용량 등을 등록, D/B화
○ 사용 용수·종자 인증품 생산계획서(농관원 고시)에 기재	친환경 인증시스템에 등록, D/B화
○ 가공원료 조달실태 인증품 생산계획서(농관원 고시)에 원료 입출고 일자, 품목, 물량 등을 기재	친환경 인증시스템에 등록, D/B화
○ 수출입량 및 금액 수출입시 식약처에 신고토록 규정	거래인증서, 수출증명서, 수입신고대장(식약처) 활용 및 D/B화
□ 유통분야	
○ 주요 품목별 출하경로 및 판매마진 ○ 출하경로별 판매가격 ○ 유통경로·판매장별 취급 품목 ○ 경로별 유통비중(중간·최종)	통계설계 후 연 1회 유통 실태조사
□ 농가·업체경제	
○ 친환경농업인·가공업체 현황(성별, 연령, 실천기간 등) 인증품 생산계획서(농관원 고시)에 기재	성별, 연령 등은 인증시스템에 D/B화하고, 실천기간은 양식을 변경하여 추가
○ 주요 품목별 경영분석(품목별 생산비, 소득액, 노동력 투입, 작업방식 등) 기재사항 없음	인증심사시 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주요 품목별 생산비·소득액 등의 경영사항 조사 후 D/B화
○ 친환경 경영체 현황(법인수, 평균면적, 운영형태 등) 인증신청서에 법인여부, 신청면적 등을 기재	친환경 인증시스템에 등록, D/B화

다**연구개발(R&D) 추진계획****(1) 기본방향**

- (연구목표) '20년까지 주요 품목(10개)에 대한 생산모델 개발 등을 통해 유기농업 경영비를 관행 대비 130%에서 100%로 절감

◆ 정책목표

- 유기·무농약 재배면적 비율(%) : ('15p) 4.5 → ('20) 8
- 유기가공식품 수출액(천만달러) : ('14) - → ('20) 2

- (추진체계) 각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개발 추진

- 기초기술 성격은 농진청에서 수행하고, 실용화 성격은 별도의 '가칭'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을 구성·운영

연구분야	추진주체
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친환경(유기·무농약) 생산모델 개발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 농진청
②부가가치 제고, 수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유기식품 가공기술 개발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
③기초 기술 개발(재배기술, 허용물질, 정책지원연구 등)	농진청

- 연구방식은 농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 분석 실시
- 특히, 생산모델 개발은 품목별 선도농가, 친환경단체 및 지역별 친환경연구센터가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적용

1 한국형 친환경(유기·무농약) 생산모델 개발

◆ 주요 품목별(10개) 표준생산모델 개발·구축

- ('16) 국내외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재배기술 개발이 필요한 10개 품목 선정
 - * 친환경 재배면적, 시장 수요, 현장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선정
- ('17~'19) 주요 5개 품목 생산모델 개발
 - * 선진사례의 과학적 근거 및 성립조건 해명(1년차) → 지도서 작성 및 현장 시험적용(2년차) → 표준재배 기술 지도서 작성 및 농가 보급(3년차~)
- ('18~'20) 5개 품목 생산모델 개발(기타 품목)

◆ 토양 특성에 맞는 토양관리모델을 개발하여 개발된 표준생산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 제고

◆ 농업환경 변화상 검증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진방안 모색

○ 주요 품목별 생산모델 개발

- 국내 선도농가, 국내외 주요 친환경재배 매뉴얼, 해외사례 수집
 - * 주요 재배품목(벼, 사과, 배, 딸기, 감귤, 배추, 고추, 상추, 감자, 고구마, 토마토, 콩, 밀, 호박, 무, 인삼 등 15개 내외) 등에서 10개 선정
- 국내 선도농가 사례의 과학적 근거와 성립조건 해명 : 국내 우수 친환경 농가를 선정·발굴하여 경제성·성공원인 분석
- 기 개발된 병해충·잡초 관련 기초기술 수집·분석(필요시 농진청 참여)
- 성공사례를 분석·종합하여 경제성이 고려된 지역·품목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 생산모델 구축(품목 예시 : 벼, 사과, 배, 고추, 토마토 등 10개 품목)
- 개발된 생산모델에 대한 표준 재배기술 지도서 작성
- 개발된 생산모델은 참여농가에 시험 적용하여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품목별 5곳 이상)

○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위한 토양 관리 모델 개발

- 논·밭에서의 유기자재의 N, P, K 함량 및 시계열 분해특성 조사·분석
- 시비처방에 있어 유기물(부산물비료 등)의 시비량 계산법 마련 : 토양 이화학적 특성, 질소함량, C/N비, 지온 등을 감안
- 부산물 비료, 윤작, 녹비 등을 이용한 토양생물상과 이화학적성을 포함하는 유기재배 토양 비옥도 기준 설정 및 개선방법 마련
- 지역별·토양별 특성에 맞는 시비처방 기준 마련

○ 유기농업에 적합한 종자 생산기술 개발

- 자가 채종이 가능한 품목·품종 선정 및 종자 생산기술 개발·보급
- 미국·EU 등에서 우수 유기종자를 도입하여 각 도 농업기술원의 적응성 검정을 통한 국내 적합 품종 선발·보급
 - * 선발된 품종의 원종을 재도입하여 유기종자 생산자에게 보급하여 증식
- 유기종자의 생물제제 등을 이용한 소독법 개발·보급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 검증 및 증진방안 도출

- 토양·수질의 곤충, 수생물, 초본류 식물, 조류, 미생물 등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품목군별 지표 선정
- 토양·수질 등의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효과 조사·분석
- 품목별 국내 친환경농가와 관행농가의 농업환경지표 비교·분석
- 환경재 생산·확산방안 모색 및 환류·관리체계 구축
- 선정된 검증 지표들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

○ 과수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및 병해충 관리 자재 개발

② 유기식품 가공기술 개발

○ 농산물 활용 천연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 개발

- 기 개발된 국내외 천연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 조사(농산물 활용 우선)
- 천연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 개발
 - 분석된 천연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 중 개량 가능한 후보군 선정
 - 선정된 후보군 개량·검정 및 유기가공식품 생산 적합성 평가
- 농산물 활용 허용물질 대체제 개발
 - 허용물질(합성착색료 등) 대체 가능 천연물(농산물) 후보군 선정
 - 천연물(농산물) 후보군에서 대체 허용물질 최적 추출 및 정제조건 정립
 - 정제성분의 대체 허용물질로써의 효과 평가 및 실용화 기술 확립

○ 허용물질 미사용 제품 수명연장 및 품질 안정화 기술

- 유기가공식품의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 유기가공식품 유통기한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
- 천연 항균물질 개발
 - 분석된 유기가공식품의 유통기한 감소 원인 미생물 검출
 - 원인 미생물의 생육을 저하, 억제 또는 사멸 시킬 수 있는 천연 유래 항균물질 탐색 및 후보군 선정
 - 선정된 후보 항균물질 효과·범용성 검정 및 유통기한 연장효과 분석
- 유통·저장조건 정립 연구
 - 분석된 유기가공식품 유통기한 감소 원인 미생물 검출
 - 원인 미생물의 생육 저하·억제할 수 있는 유통 및 저장 조건 분석·선정
 - 선정된 조건의 유기가공식품 적용 시 유통기한 연장효과 검정

③ 친환경농업 원천기술 개발(농진청)

○ 유기농작물 병해충·잡초 종합관리기술

- 주요작물 병해충 저항성 품종선발 및 작부체계 연구
- 천연 유래물질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유기농업 기술연구
- 생태적·재배적·물리적 방법을 활용한 유기농 작물보호 연구
- 유기물 피복에 의한 잡초관리 및 천연 제초물질 활용연구

○ 유기농 채소류의 안전성 및 기능성 향상·평가기술 개발

- 유기농산물 수확 후 처리 및 안전성 연구
-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기능성 성분분석 및 DB 구축

○ 농자재 안전성 검증 및 특성 분석

- 자가 제조 유기농자재 제조기술 표준화 및 활용기술 매뉴얼 개발
- 유기농자재 개발용 유기물 및 생물유래 천연소재 탐색
-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특성, 안전성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 확립

(3) 기술보급 및 유기가공식품 수출 확대

□ 개발된 기술은 정책사업 및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신속히 보급

- 연구에 참여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생산자단체 등을 활용, 지자체·농정원 등 **관련기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확산**

* '15년 현재 농정원(11개 과정 2,700명), 지자체(754회 26천명) 실시 중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 수출동향 정보제공, 가공업체 대상 원료 정보시스템 구축(aT) 등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수출 확대 지원

- 주요국 수출품목 유통 현황, 검역 시스템, 쿼터 적용 품목, 표시제도 등을 파악하여 가공업체에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3. 투융자계획

□ 5년간('16~'20) 총 3조 4,229억원 투융자를 통해 친환경농업 활성화 유도

* 대책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이전 5개년 계획과 예산 투자금액이 상이

○ 5년간 친환경 인증 농식품 육성 관련 예산은 2조 4,605억원이며, 농업환경자원관리 관련 예산은 9,624억원 수준

	연차별 소요예산(단위 : 억원)					
	합계	'16	'17	'18	'19	'20
합 계	34,229.3	6,226.5	6,815.7	6,902.5	7,096.5	7,188.2
① 소비자 신뢰제고	1,910.4	341.5	384.7	396.4	390.5	397.3
· 인증제도 개선	1,110	209.9	217.5	229.2	223.3	230.1
· 민간인증체계 확립	800.4	131.6	167.2	167.2	167.2	167.2
②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2,887	498.5	542.8	535.5	647.6	662.6
·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 계열화	135		15	15	45	60
· 고정소비층 대상 판매채널 확대	2,501.7	472.8	430.2	469.1	564.8	564.8
·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제고	227.3	22.7	92.6	46.4	32.8	32.8
·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23	3	5	5	5	5
③ 생산기반 확충	7,017.7	1,214.4	1,469.6	1,389.2	1,441.3	1,503.2
· 생산단지·지구 조성 내실화	3,191.5	631.5	674.4	631.8	627.1	627.1
·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120	60	60			
·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3,280.9	436.5	622.4	682.1	739.0	800.9
· 농가교육 및 기술지원	425.3	86.4	113	75.3	75.3	75.3
④ 유기농자재 안정적 공급	12,790.4	2,281.5	2,458.3	2,618	2,716.3	2,716.3
· 허용물질 및 유기자재 관리제도 정비	28		7	7	7	7
· 자재지원사업 개선	12,695.8	2,275.5	2,442.3	2,594	2,692	2,692
·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66.6	6	9	17	17.3	17.3
⑤ 농림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	9,217.9	1,860.3	1,894.7	1,860.1	1,797.5	1,805.3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확산	94.7		29.4	15.2	15.2	35
· 적정시비 시스템 구축	202	24	34.5	54.5	44.5	44.5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5,952.3	1,197.9	1,169.5	1,194.9	1,199.9	1,190
·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2,969	638.5	661.4	595.5	537.9	535.9
⑥ 농업환경조사시스템 구축	405.9	30.3	65.6	103.3	103.3	103.5

□ '17년부터 소요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반영 추진

4.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16	'17	'18	'19	'20
① 소비자 신뢰제고					
1. 인증제도 개선					
· 인증기준 합리화	발전방안마련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무농약 가공식품 관리규정 마련	연구용역	발전방안마련	시행	시행	시행
· 인증기준 환경변화 대응성 제고	인증기준 고시통합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인증 신청·갱신 서류 최소화	생산계획서 간소화	무농약 시행	유기농 시행	시행	시행
· 식당 등 인증 농산물 사용 표시제 도입	연구용역	발전방안마련	시행	시행	시행
· 인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의견수렴	기준 개정	시행	시행	시행
· 친환경 축산물 인증기준 강화	의견수렴	기준 개정	시행	시행	시행
· 유기축산 활성화	연구용역	발전방안마련	시행	시행	시행
2. 민간인증체계 확립					
· 인증업무 일원화	법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행	시행
·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	생산단계 조사	조사확대	조사확대	조사확대	조사확대
·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법령 개정, 시범사업	시행·평가	시행·평가	시행·평가	시행·평가
· 인증심사원 전문성 제고	교육과정 신설	교육	교육	교육	교육
· 사전·사후관리 강화	관리방안시행	시행·보완	시행·보완	시행·보완	시행·보완
3. 비식용 유기가공품 관리제도 마련					
· 반려동물사료 인증제 도입	연구용역	발전방안마련	시행	시행	시행
· 비식용 유기가공품 표시제 도입	연구용역	발전방안마련	시행	시행	시행
②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1.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 계열화					
· 광역단위 산지조직 선정·지원(누계)	예산협의	3개소	3	3	9
2. 고정소비층 판매채널 내실화					
· 공동체지원농업(CSA) 확산(누적)	MOU 체결 (1만명)	1.5	2	2.5	3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요건 강화	지정요건 강화	법제화 검토			
· 온라인 판매채널 구축(누계)	300개	600	900	1,200	1,500

	'16	'17	'18	'19	'20
· 모바일 쇼핑몰 개설(누계)	-	300개	600	900	1,500
· 친환경종합물류센터 운영	1개소	2	2	2	2
3.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제고					
· 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	도입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친환경 캐릭터 개발	의견수렴	캐릭터 운영	캐릭터 운영	캐릭터 운영	캐릭터 운영
· 친환경농업 관련 행사 통합	해외사례 벤치마킹	행사통합	통합운영	통합운영	통합운영
· 그린카드 포인트제도 도입	관계기관 협의	포인트 제공	포인트 제공	포인트 제공	포인트 제공
·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설계완료·착공	시설공사	완공	실적 분석	
4.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지원대상 포함	지원 계속	지원 계속	지원 계속	지원 계속
· 산지조직-가공기업 연계	산지조직화	예산지원	가공 연계		
· 연구개발 지원	R&D 지원	R&D 지원	R&D 지원	R&D 지원	R&D 지원
5. 유통정보 제공강화					
·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의견수렴	비용·이윤조사	조사계속	조사계속	조사계속
· 가격조사 대상품목 확대	의견수렴	도매단계 조사	품목 확대	조사계속	조사계속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조사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③ 생산기반 확충					
1. 생산단지·지구 조성 내실화					
· 신규지구 지원체계 개선	사업지침 개편	신규 선정	신규 선정	신규 선정	신규 선정
· 기존단지 내실화	실적 점검	실적 점검	실적 점검	실적 점검	실적 점검
· 인센티브 확대	2개소	2	4	4	7
·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시범사업	본사업 실행	본사업 실행	본사업 실행
· 산지생태축산 농장 조성	시범조성	모델 정립	확산	확산	확산
· 산지초지 조성 및 이용기술 연구개발	연구진행·점검	연구진행·점검	연구진행·점검		
·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	조성	조성(4개소)	단지 운영	단지 운영	단지 운영
2.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 검사비용 절감	결과공유·조정	결과공유·조정	결과공유·조정	결과공유·조정	결과공유·조정
· 친환경에 특화된 재해보험	단가 산정	단가 산정	단가 산정	도입여부 검토	

	'16	'17	'18	'19	'20
· 유기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품목선정	관계부처 협의	관계부처 협의	관계부처 협의	관계부처 협의
· 토양·병해충 정보제공 강화	병해충 정보 제공	품목 확대	품목 확대	품목 확대	품목 확대
3.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	면적 확대	단가·지급 횟수 조정	유기지속직불	지속지원	지속지원
· 친환경농업 직불 지급단가 차등화	소득조사	예산반영	지속지원	지속지원	지속지원
· 지속 직불제 도입	환경보전 효과 검증	예산반영	지속지원	지속지원	지속지원
· 친환경 축산 직불제 개선	연구용역	예산반영	지속지원	지속지원	지속지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직불제 도입	의견수렴	도입	지속지원	지속지원	지속지원
· 직불제 관리업무 농관원 이관	법령 개정	농관원 이관	시행	시행	시행
4. 농가교육 및 기술지원					
·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 운영	기획단 구성	연구진행·점검	연구진행·점검	연구진행·점검	연구진행·점검
· 친환경농업 우수농가 경진대회	실행방안 마련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농정원 공모교육	2,700명	3,000	3,300	3,600	4,000
· 친환경농업 교육과정 다각화	과정 확대	과정 확대	과정 확대	과정 확대	과정 확대
· 친환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누계)	실행방안마련	5개소	10	15	20
④ 유기농자재 안정적 공급					
1. 허용물질·유기농자재 관리제도 정비					
· 공시·품질인증 통합	법률개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행	시행
· 허용물질 안전성 평가(누계)	평가계획수립	15종	35	55	75
· 허용물질 안전사용 지침(누계)	-	10종	20	30	40
· 허용물질 선정절차 및 고시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 통합	법령 개정	통합관리	통합관리	통합관리	통합관리
2. 자재지원사업 개선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개편	일괄구매 시범사업	시범사업	본사업 개편	본사업 개편	본사업 개편
· 비료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운영	운영	운영	운영

	'16	'17	'18	'19	'20
3.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 유기종자 보급 체계 마련	고시 개정	DB구축	농가 지원	농가지원	농가지원
· 유기 육묘장 시설 지원	1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㉔ 농림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확산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기본방향수립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범사업	모델화·확산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산			추가이행 사항 보완	추가이행 사항 보완	단지·지구 재설계
2. 적정 시비체계 구축					
· 비료사용처방 서비스 작물(누적)	125	133			
· 소면적 신소득작물 비료사용기준 설정	기준설정	시스템 반영			
· 재배조건별 비료사용기준 설정			기준설정	기준설정	기준설정
· GAP 취득희망 농업인 교육	교육 진행	교육 진행	교육 진행	교육 진행	교육 진행
· GAP 취득 농가 컨설팅	컨설팅	컨설팅	컨설팅	컨설팅	컨설팅
3. 가축분뇨 자원화					
· 공동자원화시설 비즈니스 모델화	모델화	모델화	모델화	사례 전파	사례 전파
· 악취 기준 및 관리지침 마련	기준 마련	기준 마련	현장적용	현장적용	현장적용
· 광역 악취 개선사업	5개소 선정	사업진행	사업진행	평가·점검	평가·점검
· 악취 중점관리기준개발 및 저감모델 연구	연구진행·점검	연구진행·점검	현장적용	현장적용	현장적용
4.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숲가꾸기 사업 추진	숲가꾸기	숲가꾸기	숲가꾸기	숲가꾸기	숲가꾸기
· 친환경 조림사업 추진	활엽수 조림	활엽수 조림	활엽수 조림	활엽수 조림	활엽수 조림
· 목재펠릿 보일러 확대	21천	23	25	27	29
㉕ 농업환경조사시스템 구축					
· 농경지 농업환경변동조사	실시	조사 개편	시행	시행	시행
· 미생물·생물다양성 관리지표 마련	기초연구	기초연구	지표 마련		
· 대표필지 토양검정	5만점	15	15	15	15
· 토양검정 정도관리	현장평가	숙련도 평가	현장평가	숙련도 평가	현장평가
· 농업용수 수질 평가·활용	하천·지하수	하천·지하수	하천·지하수	하천·지하수	하천·지하수